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 연구

2023. 7.



보건복지부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연구자

김영주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인숙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강사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참여자

김혜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지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전수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5
1.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검토	5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관련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	6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안) 도출	7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문헌조사	10
1. 국내 현황	10
2. 해외 현황	10
제2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0
1. 분석자료 및 내용	10
2. 자료분석방법	11
제3절 설문조사	11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1
2. 자료분석방법	12
제4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2
1. 면접대상 및 방법	12
2. 자료분석방법	14
제5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1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4
2. 자료분석방법	15

제3장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18
1. 교육부	19
2. 보건복지부 · 교육부	20
3. 보건복지부	21
4. 여성가족부	24

5. 소결	25
제2절 해외 현황	27
1. 해외 초등돌봄 사례	27
2. 해외 공간기준 사례	31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44
1. 설치현황	44
2. 공간 특성	47
3. 운영 특성	70
제2절 설문조사	74
1. 일반적 특성	74
2. 공간 특성	79
3. 프로그램 특성	88
4. 공간 평가 및 개선	94
5. 공간 개선 의견	112
6. 공간개선 관련 이슈	115
제3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16
1.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분석결과	116
2. 공무원 FGI 분석결과	128

제5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검토	142
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	142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144
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147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기준	149
5. 아동의 활동 및 학습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151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154
1. 조사목적 및 내용	154
2. 전문가 자문 결과	154
3. 현장방문 결과	164
4. 공간설치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 의견	166
5. 설치기준 개정(안)	166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67
1. 주요 개정 내용	167
2.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168
3.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169

제6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74
1. 국내 · 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174
2.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75
3. 설문조사	176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79
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8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81
1. 정책적 시사점	181
2. 향후과제 제언	183

참고문헌	185
------------	-----

부 록

부록 1.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설문지	188
부록 2.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199
부록 3.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201
부록 4. 전문가 자문 조사지	204

표 목 차

〈표 1-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5
〈표 2-1〉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내용	11
〈표 2-2〉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내용	11
〈표 2-3〉 FGI 참여자 현황	13
〈표 2-4〉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질문영역 및 내용	13
〈표 2-5〉 공무원 FGI 질문영역 및 내용	14
〈표 2-6〉 전문가 자문 대상자	15
〈표 2-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내용	15
〈표 3-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18
〈표 3-2〉 초등돌봄교실 설치·설비 및 운영기준	19
〈표 3-3〉 지역아동센터 설치·설비기준	21
〈표 3-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설비기준	23
〈표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설비기준	24
〈표 3-6〉 초등돌봄서비스 설치·설비기준 비교	25
〈표 3-7〉 호주 교육 및 돌봄서비스 국가규정	36
〈표 3-8〉 호주 5세-8세 아동 시설의 정원별 공간 면적 예시(㎡)	37
〈표 4-1〉 센터 전체 평균 면적 (단위: ㎡)	47
〈표 4-2〉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48
〈표 4-3〉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	48
〈표 4-4〉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49
〈표 4-5〉 지역규모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	50
〈표 4-6〉 지역규모별 1인당 평균 면적	50
〈표 4-7〉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	51
〈표 4-8〉 공간사용 방법별 면적 특성 (단위: ㎡)	51
〈표 4-9〉 공간사용방법별 1인당 평균 면적 (단위: ㎡)	52
〈표 4-10〉 겸용사용 센터의 복합화 시설 종류 (단위: 개(%))	53
〈표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	54
〈표 4-12〉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55
〈표 4-13〉 전체 사용 층수 (단위: 개(%))	56
〈표 4-14〉 실제 사용층 수 (단위: 개(%))	56
〈표 4-15〉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단위: 개(%))	57
〈표 4-16〉 전체 층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	58
〈표 4-17〉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58
〈표 4-18〉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	58
〈표 4-19〉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	59
〈표 4-20〉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단위: 개(%))	59
〈표 4-2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60

〈표 4-22〉 전체 활동실 수 (단위: 개)	61
〈표 4-23〉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 (단위: 개(%))	61
〈표 4-24〉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2
〈표 4-25〉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3
〈표 4-26〉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63
〈표 4-27〉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단위: 개(%))	64
〈표 4-28〉 전용 활동실 평균 설치 개수 (단위: 개)	64
〈표 4-29〉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단위: 개)	65
〈표 4-30〉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5
〈표 4-31〉 전용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6
〈표 4-32〉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단위: 개(%))	66
〈표 4-33〉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단위: 개(%))	67
〈표 4-34〉 공용 활동실 평균 개수 (단위: 개)	67
〈표 4-35〉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단위: 개)	67
〈표 4-36〉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8
〈표 4-37〉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8
〈표 4-38〉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69
〈표 4-39〉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69
〈표 4-40〉 활동실 이외 공간 종류 (단위: 개(%))	69
〈표 4-41〉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 (단위: 개(%))	70
〈표 4-42〉 활동실 이외 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m^2)	70
〈표 4-43〉 평균 정원 (단위: 명)	71
〈표 4-44〉 성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71
〈표 4-45〉 학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71
〈표 4-46〉 평균 돌봄교사 수 (단위: 명)	71
〈표 4-47〉 돌봄교사 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2
〈표 4-48〉 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개(%))	72
〈표 4-49〉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단위: 개(%))	73
〈표 4-50〉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 (단위: 개)	73
〈표 4-51〉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단위: 개소(%))	74
〈표 4-52〉 타 시설과 겸용사용 여부 (단위: 개소(%))	75
〈표 4-53〉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단위: 개소(%))	75
〈표 4-54〉 센터 전체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6
〈표 4-55〉 전체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6
〈표 4-56〉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7
〈표 4-57〉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7
〈표 4-58〉 평균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78
〈표 4-59〉 이용 아동 성별 특성 (단위: 명)	78
〈표 4-60〉 이용 아동 학년 특성 (단위: 명)	79
〈표 4-61〉 평균 종사자 수 (단위: 명)	79

〈표 4-62〉 전체 활동실 수 (단위: 개(%))	80
〈표 4-63〉 전체 활동실 평균 전용면적 (단위: m ²)	80
〈표 4-64〉 전용 활동실 수 (단위: 개소(%))	80
〈표 4-65〉 공용 활동실 수 (단위: 개소(%))	81
〈표 4-66〉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의 공간구성 특성 (단위: 개소(%))	82
〈표 4-67〉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단위: 개(%))	82
〈표 4-68〉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단위: 개(%))	83
〈표 4-69〉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단위: 개(%))	84
〈표 4-70〉 활동실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소(%))	85
〈표 4-7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단위: 개(%))	87
〈표 4-72〉 5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 현황 및 대피시설 설치 유무 (단위: 개소(%))	88
〈표 4-73〉 운영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88
〈표 4-7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	89
〈표 4-75〉 프로그램별 실내 및 실외 공간 사용 유무 (단위: 개소(%))	90
〈표 4-76〉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단위: 개(%))	94
〈표 4-77〉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94
〈표 4-78〉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단위: 개(%))	96
〈표 4-79〉 설치 공간별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100
〈표 4-80〉 개선이 필요한 공간 (단위: 개(%))	104
〈표 4-81〉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단위: 4점 만점)	111
〈표 4-82〉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단위: 개(%))	112
〈표 4-83〉 공간 기준 설정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단위: 점(4점 만점))	113
〈표 4-84〉 공간 개선(안) 의견 (단위: 점(4점 만점))	114
〈표 4-85〉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참여자 현황 (1차, 2차)	116
〈표 4-86〉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116
〈표 4-87〉 공무원 FGI 참여자 현황 (3차)	129
〈표 4-88〉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129
〈표 5-1〉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면적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42
〈표 5-2〉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공간 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45
〈표 5-3〉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152
〈표 5-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153
〈표 5-5〉 공간설치 기준 개선(안)	162
〈표 5-6〉 입지 기준 개선(안)	163
〈표 5-7〉 최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166
〈표 5-8〉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169
〈표 5-9〉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169

그림목차

〈그림 1-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설치현황	2
〈그림 1-2〉 연구목적	4
〈그림 1-3〉 다함께돌봄센터 법적 설치 기준	6
〈그림 1-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진행 과정	7
〈그림 1-5〉 연구수행 체계도	8
〈그림 3-1〉 호주 방과후 돌봄 센터 사례	39
〈그림 4-1〉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44
〈그림 4-2〉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구별 설치 현황	45
〈그림 4-3〉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	46
〈그림 4-4〉 지역규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47
〈그림 4-5〉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49
〈그림 4-6〉 공간사용 방법	51
〈그림 4-7〉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 (단위: 개)	53
〈그림 4-8〉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54
〈그림 4-9〉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55
〈그림 4-10〉 전체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단위: %)	57
〈그림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단위: %)	60
〈그림 4-12〉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	61
〈그림 4-13〉 전체 활동실 개수(단위: %)	62
〈그림 4-14〉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3
〈그림 4-15〉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66
〈그림 4-16〉 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	72
〈그림 4-17〉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단위: %)	73
〈그림 4-18〉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단위: %)	74
〈그림 4-19〉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단위: %)	76
〈그림 4-20〉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7
〈그림 4-21〉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2)	78
〈그림 4-22〉 전체 활동실 개수 (단위: %)	80
〈그림 4-23〉 전용 활동실 수 (단위: %)	81
〈그림 4-24〉 공용 활동실 수 (단위: %)	81
〈그림 4-25〉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단위: %)	82
〈그림 4-26〉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단위: %)	84
〈그림 4-27〉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단위: 개)	85
〈그림 4-28〉 활동실의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	86
〈그림 4-29〉 사용 층수 특성 (단위: %)	86
〈그림 4-30〉 지하층 유무 (단위: %)	87
〈그림 4-3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단위: %)	88

〈그림 4-32〉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단위: %)	90
〈그림 4-33〉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단위: %)	91
〈그림 4-3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문제 (단위: %)	93
〈그림 4-35〉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단위: %)	94
〈그림 4-36〉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4점 만점))	95
〈그림 4-37〉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단위: %)	96
〈그림 4-38〉 입지 및 설비 개선에 대한 키워드 분석	99
〈그림 4-39〉 설치 공간별 평가 (단위: 점 (4점 만점))	100
〈그림 4-40〉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 (단위: %)	103
〈그림 4-41〉 개선이 필요한 공간 (단위: %)	104
〈그림 4-42〉 활동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5
〈그림 4-43〉 사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5
〈그림 4-44〉 화장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6
〈그림 4-45〉 조리·식사·배식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6
〈그림 4-46〉 상담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7
〈그림 4-47〉 회의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7
〈그림 4-48〉 휴식 및 수면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7
〈그림 4-49〉 양호실(보건 및 격리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8
〈그림 4-50〉 도서관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8
〈그림 4-51〉 옥외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8
〈그림 4-52〉 실내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9
〈그림 4-53〉 실내체육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9
〈그림 4-54〉 옥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09
〈그림 4-55〉 대피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10
〈그림 4-56〉 세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10
〈그림 4-57〉 창고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110
〈그림 4-58〉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111
〈그림 4-59〉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112
〈그림 4-60〉 공간 개선(안) 의견 (단위: 점(4점 만점))	114
〈그림 5-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 개선(안)	144
〈그림 5-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개선(안)	147
〈그림 5-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개선(안)	149
〈그림 5-4〉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 개선(안)	151
〈그림 5-5〉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개선(안)	153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있으며,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면적 기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 규모와 필수설비만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면적 기준이 돌봄공간(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과 사무공간 및 부수공간의 구분을 규정하지 않아 충분한 돌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동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발달권과 참여권, 놀이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자면 아동의 놀 권리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면적 및 공간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국내 및 해외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 설치 및 입지조건을 분석하였음.

2)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및 설치기준 관련 현안 도출 및 현장 실무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시 고려 요소 파악을 목적으로, '2022년 돌봄사업종합조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조사 마이크로데이터(6월 말, 전국 760개 센터 기준)'를 분석하였음.
- 분석내용으로는 설치현황(지역별, 지역규모별 등), 공간특성(면적특성, 공간사용 방법, 위치(층) 특성, 공간구성 특성 등), 운영특성(정원, 돌봄교사 수, 운영 프로그램 특성 등)을 분석함.

3) 설문조사

-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공간, 설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지(구글 서베이)를 통해 수행되었음. 총 8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공간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 공간 특성, 프로그램 특성, 급·간식 특성, 공간 평가, 공간개선(안)으로 구성하였음.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실무자(센터장) 8인, 지자체 공무원 5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음.
- 표적집단면접(FGI)은 2023년 5월 24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음. 면접내용은 총 5가지 영역(공간특성, 공간개선(안), 공간 프로그램 특성, 정책욕구, 지역사회 내 타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유무)으로 구성하였음.

5)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및 아동돌봄 관련 학계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총 6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자문을 수행하였음.
-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조사를 통하여 거점형 센터의 역할 및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거점2호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장방문하였음.

3.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1) 국내 현황

- 초등돌봄서비스별 설치 및 설비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내 설치(초등돌봄교실), 수련시설 및 공공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조건을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관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제 1, 2종), 노유자 시설 등 비교적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소 전용면적을 66㎡로 규정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을 3.3㎡(제곱미터)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에 따라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2) 해외 현황

-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와 달리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관된 규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다만, 사례로 제시한 국가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아동수 등에 따라 아동 1명당 필요한 최소한의 실내 공간 크기를 규정하고 있음.
- 실내 공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로, 화장실, 수납/창고 공간, 직원/업무 공간, 주방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아동의 활동을 위한 순수 공간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아동 1명당 최소 2.3㎡(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최대 5㎡(미국, 충무청)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한편, 미국의 ‘아동보육 및 조기교육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자원센터’에서는 집단 크기와 교사/아동비율, 공간사용의 효율성과 교사 지도감독의 용이성, 프로그램 실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 1명당 최소 3.9㎡, 적정 4.5㎡의 실내 공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실외 공간의 경우 특별히 공간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보다는 실외 놀이 공간의 필요성을 권고한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이를 규정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아동 1인당 약 7㎡ 실외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11.48㎡ 이상의 놀이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4. 연구결과

1)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① 설치 현황

- 2022년 6월 기준 전국 760개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울시(222개소), 경기도(188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고, 두 지역이 전체 센터 중 53.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② 공간 특성

- 전체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130.0㎡이며, 1인당 평균 전용면적(정원 기준)은 5.1㎡로 현행기준 전용 66㎡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 겸용사용 시설이 93.0%이며, 겸용사용의 경우 복합된 시설로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가장 많음.
- 센터의 사용 층수 유형은 다층형이 90.8%로 단층형에 비해 많음. 다층형의 경우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20.8%로, 단층형 9.2%에 비해 높음. 지하층을 사용하는 센터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152.8㎡로 지상층만 사용하는 센터 128.5㎡ 보다 크나, 1인당 전용면적은 지상층 사용센터가 5.1㎡로 지하층 사용센터 4.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겸용 사용시 복합화 시설유형별 공간 위치(층수) 특성은 단층형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공행정의료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층형은 마을 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단위주호, 근린생활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많음. 겸용사용시 지하층 사용은 아파트주민공동시설과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많음.
- 전체 활동실 수는 평균 3.1개이며, 전용활동실은 평균 2.2개소, 공용활동실 수는 1.5개로 나타남.

③ 운영특성

- 평균 정원은 25명으로 저학년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돌봄교사수는 2.1명임.
- 98.9%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예체능이 96.3%이 가장 많음. 평균 운영 프로그램 수는 2.4개임.

2) 설문조사

① 일반적 특성

- 응답자수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경기도, 서울 순으로, 수도권 센터에서 다수 응답됨.

- 조사대상 센터는 겸용사용이 단독사용보다 많이 조사됨.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는 아파트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순임.
- 평균 전용면적은 127.9㎡로 1인당 평균 전용면적 5.2㎡임.
- 평균 정원은 25.1명이며, 현원은 23.7명임. 남아가 평균 11.7명으로 여아는 12.0명임.
- 전체 센터 현황자료 분석 결과와 같이 저학년 비율이 높음.

② 공간 특성

- 전체 활동실 수는 평균 2.3개이며, 전용 활동실은 평균 2.1개, 공용 활동실은 평균 0.4개로 조사됨.
- 전체 활동실의 평균 면적은 109.2㎡임.
- 활동실은 경우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72.4%이며, 이 중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가 설치된 센터’가 66.7%임.
- 이로 인하여 개방형 의견에서는 각 공간의 협소와 막힌 공간으로 인한 아동의 관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제기됨.
-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으로는 사무공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장실, 조리공간 순임.
- 공간 사용방식은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식사공간, 배식공간,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실내놀이공간, 양호실, 세탁공간, 창고는 전용사용 비율이 높고, 옥외놀이공간 실내체육공간, 도서관, 대피공간 등은 공용사용 비율이 높음.
- 센터 사용층수는 단층형이 다층형보다 많음, 지하층이 있는 경우 활동실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음. 5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는 3.4%이었으며, 모두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음.

③ 프로그램 특성

-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및 학습외 교육을 모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놀이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독서논술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취미체험프로그램, 자치활동프로그램 순임.
- 미술, 교과목 및 학습, 컴퓨터, 독서논술, 교과 및 학습외 교육, 놀이, 자치활동프로그램은 공간을 전용사용 하는 비율이 높으며, 음악, 체육, 취미체험, 문화예술, 심리정서, 연극 및 뮤지컬프로그램은 공용사용비율이 높음.
- 독서, 교과 및 학습, 놀이, 자치, 연극 및 뮤지컬프로그램은 인원대비 공간협소의 문제, 심리정서프로그램은 인원대비 공간협소와 운영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제시함. 주로 프로그램실의 공간협소의 문제가 제시됨.

④ 공간평가 및 개선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 디자인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디자인은 개선 의견이 빈번히 요구되고 있음.
- 휴식 및 수면 공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휴식 및 수면 공간의 미설치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있음.
-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식사공간, 배식공간, 실내놀이공간, 실내체육공간, 도서관, 창고 등은 공간협소의 문제를 제시함.
- 화장실은 공간구성의 문제를 제시함.
-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옥외놀이공간, 도서관, 양호식, 옥상, 대피공간, 세탁 공간은 공간종류의 부족 문제를 제시함.
- 개선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휴식 및 수면공간이 6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내놀이공간, 사무공간, 활동실, 상담실, 회의실 순임.
- 추가설치 요구가 높은 시설로는 휴식 및 수면 공간, 활동실, 상담실, 양호실, 실내체육공간 순임. 아동권리 관점에서도 휴식 및 수면 공간의 요구가 높음.

3)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원활한 논의를 위해 돌봄공간만의 전용면적(1인당 3.3㎡ 기준 66㎡ 이상) 등의 1차적인 개선(안)을 설정하고 센터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음.
- 표적집단면접 결과, 돌봄공간에 대한 면적기준 설정에 동의하였고, 장기적으로 더 확대된 기준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현재 센터들이 현행 설치기준인 전용면적(66㎡), 또는 개선안에서 제안하는 돌봄공간(놀이공간 및 활동실)만의 전용면적(1인당 3.3㎡, 기준 66㎡)의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기 보다는 최소 돌봄공간 전용면적의 기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공간기준의 확대는 물론, 기본적인 휴식을 위한 분리된 공간과 상담실에 대한 욕구가 일관되게 나타남.
- 장애아동을 위한 설비 (계단, 화장실 등) 및 인력배치에 대한 요구도 나타남.
- 센터의 특성상 아동의 이동이 유동적이므로 작더라도 급배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해진 시간에 급간식을 먹기 힘든 아동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센터 이용의 요구 및 프로그램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공간구성이 지역 요구에 맞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센터 주변 유해시설 및 교통안전, 화재시 대피(2층 이상인 경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방과후에 아동들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이용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높음.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단위 내 거점형 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의 틈새돌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내 교육청, 학교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주민, 도서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방과 후에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하며, 즐겁게 학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돌봄공간(놀이공간 및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일 것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사무공간, 종사자휴게공간, 화장실 (남/여 구분), 조리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각각 갖출 것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 사용 가능).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설치 할 수 있음 (권고사항).
-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고 면적비율을 1:3으로 설치하되 공간구분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권고사항).

2)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개선(안)

- 소음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과 휴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50m(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함.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에 설치하여야 함 (단, 화재 및 재난대비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주).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면 동일하게 간주).

- 일조 및 채광, 통풍, 환기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 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한 경우 동일하게 간주).
-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권고사항).
- 시설물 사용(도서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권고사항).

6.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① 아동권리에 근거한 설치 및 공간기준 마련의 필요성

-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에서 일관되게 아동의 휴식을 위한 공간과 아동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실무자의 요구가 높았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것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방과후 아동의 휴식과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의 우선적 설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일상에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수록 필요에 따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전용면적의 면적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공간구성의 문제로 기본적인 간식 섭취 및 휴식 시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공간 기준과 설비 기준(예: 계단, 아동용 변기)에 있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 및 욕구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 경계성 장애 또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센터 내 장애아동을 위한 설치기준(계단, 화장실 등)과 공간구성의 주의가 요구됨.
- 다함께돌봄센터가 장애아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②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결과 현재 공간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 공간의 확보로 나타남.
- 이러한 동적 공간의 확보는 센터 외부의 놀이터,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별 센터의 입장에서 학교와의 소통 및 연계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틈새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로서는 모든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지역 내 학교 또는 체육시설을 통한 공간확보가 가능하나, 이는 지역교육청이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함.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협의체 구성과 공간 공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③ 거점형 돌봄센터의 확충

- ‘다함께 돌봄센터’의 특성상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형, 거점형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마을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연계하고, 소규모 마을 돌봄시설에 돌봄공간 및 돌봄 자원(ex,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콘텐츠 및 강사 지원)을 지원하며, 지역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과 같은 거점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단위로 거점형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돌봄시설에 공간,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음.

④ 효과적인 공간구성을 위한 지역 내 돌봄수요 가정의 특성 파악

- 연구 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아파트 밀집도, 다문화가정 비율,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용아동의 연령, 정원충족 정도, 대기인원 등 센터 이용 아동의 구성과 수요가 다양하였고, 센터에 기대하는 활동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남.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발굴과정에 해당 지역의 돌봄수요 가정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향후과제 제언

- 향후 과제로 지역 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센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돌봄센터 규모에 대한 고민과 돌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그리고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공

간의 부족과 더불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었음.

-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분리하거나, 2개 이상의 활동실을 갖추도록 공간구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럴 경우 아동의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
- 센터 외부의 놀이터, 도서관, 학교시설 등과의 연계가 추진될 필요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럴 경우 아동을 인솔하여 이동할 추가인력이 필요하므로, 센터의 요구와 현황 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돌봄인력이 공간구분을 위해 가구를 옮기고, 자체적으로 설비를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분히 휴식하거나 편하게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함.
-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나, 급간식 제공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설비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의 부족으로 아동 돌봄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존재함.
- 장기적으로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목표로 정원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의 정원 기준인 20명은 제한된 돌봄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정원에 정비례하여 공간의 기준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공간 관리에 어려움과 함께 인력의 부족으로 아동 안전사고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원기준을 하향조정하여 15명 정도로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적합한 설치 및 공간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틈새돌봄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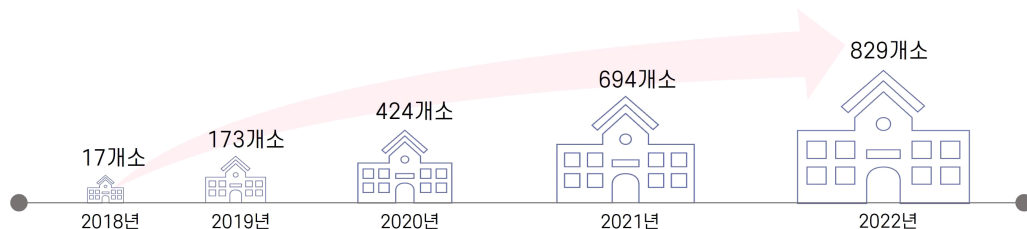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있으며,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하고자 '18년 시범사업 17개소를 시작으로 '22.10월 기준 829개소까지 확대하였음.
- 지역 내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설치현황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면적 기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 규모와 필수설비만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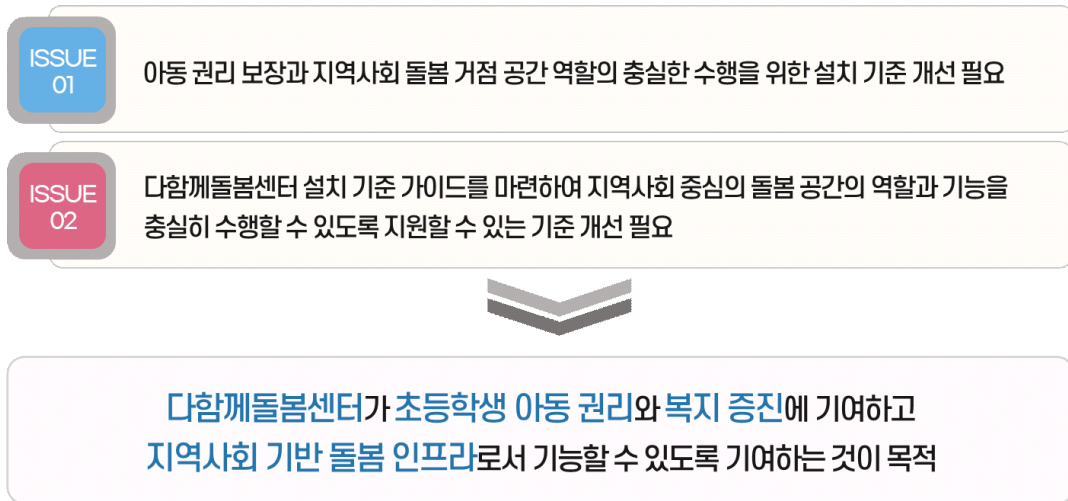
- 다함께돌봄센터는 '1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으며(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사항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1에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면적 기준이 돌봄공간(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과 사무공간 및 부수공간의 구분을 규정하지 않아 충분한 돌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23년부터 학교돌봄터가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법적 사회복지시설로 관리됨에 따라 설치기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아동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발달권과 참여권, 놀이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을 지적하며, 아동을 보호 또는 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라는 점에서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 추진(놀이공간, 시간 확충,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 등)을 제안한 바 있음(관계합동부처, 2019).
 - 유엔아동권리협약(1991)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아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은 바 있음. 또한,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점검표(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 2011)의 경우, 아동의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 확보 여부, 아동의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하자면 아동의 놀 권리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면적 및 공간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중심의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돌봄 공간을 계획·구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에서(아동권리보장원, 2020), 활동면적 및 이외 공간과 관련된 추가적인 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필요성이 도출됨.
- 이에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나아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현실적 제약 등을 반영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안)을 모

색하고자 함.



〈그림 1-2〉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내용

1.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검토

1) 국내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 국내 초등돌봄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설치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의 문제점 파악
 - 이에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시설 설치 기준 분석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구성 및 면적기준, 안전기준 등 시설 기준의 문제점 도출하고자 함.

〈표 1-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주관부처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 2004년 시범운영 시작,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의미 ·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저학년 학생을 우선 수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학교돌봄터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학교돌봄터를 설치 · 운영 ·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8항)하는 시설로 2004년 법제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사각지대 아동 우선 이용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 법제화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005년 시범운영 시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 아동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인프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발달권과 참여권, 놀이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초등돌봄시설 공간특성 관련 문헌, 법령 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 도출하고자 함.

기준 01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기준 02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그림 1-3〉 다함께돌봄센터 법적 설치 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조건에 대한 권고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 이용 대상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이 편리한 곳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바깥 활동(놀이터 등)이 가능하거나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 건축 및 유관 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2) 해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 해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설치 가이드라인 등의 분석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문제 대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미국, 호주, 일본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 가이드라인 검토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관련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

1)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 2022년 돌봄사업종합조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조사 데이터 분석(6월 말, 전국 760개 센터 기준)
 - 설치현황(지역별, 규모별 설치현황 등), 공간특성(면적, 공간사용방법, 위치, 공간구성 등), 운영특성(정원, 돌봄교사 수,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 분석

2)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 공간특성, 프로그램 특성, 정책개선 사항, 지역사회 네트워크 여부 분석
-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발달과 아동권리보장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환경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아동발달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돌봄공간이 되기 위한 공간관련 현안 도출

3)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및 공무원 대상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수행

- 공간특성, 프로그램 특성, 정책개선 사항, 지역사회 네트워크 여부 분석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안) 도출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현실성 있게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

- 사회복지 전문가, 공간전문가, 시설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설치 기준(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림 1-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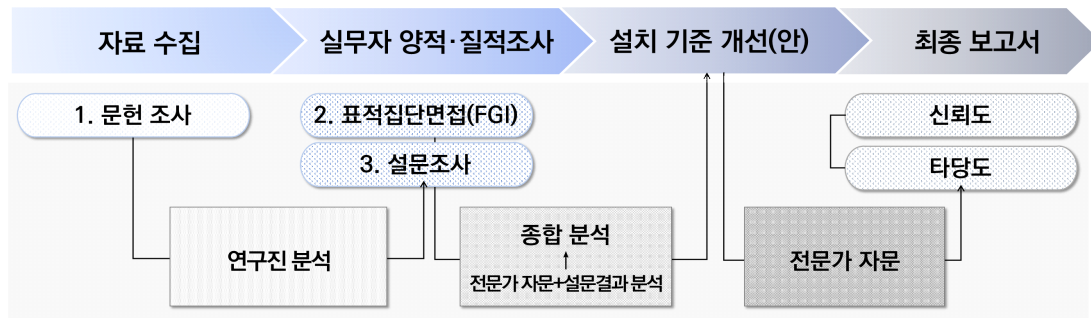
2) 다함께돌봄센터 적정 돌봄 면적(안) 제안

- 현재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그 외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시설 등을 진단, 분석하여 아동 돌봄에 적합한 시설 면적 기준 도출

- 초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1인당 적정 면적, 놀이와 휴식 그 외 활동에 필요한 공간 구성에 필요한 이상적 면적 기준 산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 장소 특성 및 초등학교 교실 활용 등 현실적 제약과 함께 지자체 장소 확보 가능성 등 고려한 현실적 면적 기준 제시하고자 함.

3) 그 외 부수공간 및 설치 기준에 필요한 설비 및 기준(안) 제안

- 전용면적 이외 아동 돌봄 공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등 발굴
 - 현재 사업안내 지침 등에서 권고되는 돌봄 공간 구성 요소 중 법제화 필요사항 포함함.
- 그 외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 요구도 및 수정 필요사항 등 제시



〈그림 1-5〉 연구수행 체계도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문헌조사

제2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제3절 설문조사

제4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제5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문헌조사

1. 국내 현황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국내 및 해외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 설치 및 입지조건을 분석하였음.
- 국내 초등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설치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문제를 도출하였음.

2. 해외 현황

- 해외 초등돌봄 사례(독일, 미국, 스웨덴), 해외 공간기준 사례(미국 미시간 주, 뉴저지 주,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영국)등 해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기준 자료 검토를 통해 공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2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 분석자료 및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및 설치기준 관련 현안 도출 및 현장 실무자,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시 고려 요소 파악을 목적으로, '2022년 돌봄사업종합조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조사 마이크로데이터(6월 말, 전국 760개 센터 기준)'를 분석하였음.
- 분석내용으로는 설치현황(지역별, 지역규모별 등), 공간특성(면적특성, 공간사용 방법, 위치(층) 특성, 공간구성 특성 등), 운영특성(정원, 돌봄교사 수, 운영 프로그램 특성 등)을 분석함.

〈표 2-1〉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내용

구분	분석내용
설치 현황	· 지역설치 현황, 지역규모별 설치 현황 등
공간 특성	· 면적 특성, 공간사용 방법, 위치(층) 특성, 공간구성 특성 등
운영 특성	· 정원, 돌봄교사 수, 운영 프로그램 특성 등

2. 자료분석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통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음.

제3절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공간, 설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참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로 공문 발송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지(구글 서베이)를 통해 수행되었음. 총 8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공간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 공간 특성, 프로그램 특성, 급·간식 특성, 공간 평가, 공간개선(안)으로 구성하였음.
- 설치기준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진에서 1차적인 기준개선(안)을 우선 제시하여, 현장 수용성 여부 및 추가 개선의견을 조사하였음.

가.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돌봄공간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 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다.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등

〈표 2-2〉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공간 현황 · 전체 전용면적 · 타시설과의 겸용 사용 여부 및 겸용 사용 시설 종류
	이용자 현황 · 이용자 정원 현황 (성별, 학년(별)) · 이용자 현원 현황 (성별, 학년(별))

구분		조사내용
	종사자 현황	· 센터장 수 · 돌봄 선생님 수 · 기타 종사자 수
	공간 특성	· 활동실 수(전체, 전용/공용) · 활동실 정적/동적공간 구분 여부 · 활동실 전용면적 · 활동실 이외 공간 현황 · 공간 구조 현황(단층형, 다층형, (반)지하층 포함 여부, 재난 시 설비 및 공간 유무)
	프로그램 특성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운영시 공간사용 방법(전용/공용, 실내/실외) · 프로그램 운영시 공간 문제 및 개선사항
	급·간식 특성	· 급·간식 제공 현황(제공 유무, 방식)
	공간평가	· 공간 평가 및 개선의견(입지 및 설비, 공간구성 및 면적, 사용충수, 설비) ·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공간 평가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공간
	공간 개선(안)	· 공간기준 설정 시 중요도 조사 · 공간개선(안) 평가 · 추가 개선 의견

2. 자료분석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통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개선사항 분석하였으며, R 통계 프로그램의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분석하였음.

제4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 면접대상 및 방법

-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실무자(센터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음.
- 표적집단면접(FGI)은 2023년 5월 24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음. 1차 서울지역 현장 실무자(센터장) 4인, 2차 경기·부산·경북지역 현장 실무자(센터장) 4인, 3차 수도권 담당 공무원 5인이 참여하였음.

〈표 2-3〉 FGI 참여자 현황

번호	구분	대상	지역	직급	성별
1	1차 (현장 실무자)	현장 실무자 A	서울	센터장	남
2		현장 실무자 B	서울	센터장	여
3		현장 실무자 C	서울	센터장	여
4		현장 실무자 D	서울	센터장	여
5	2차 (현장 실무자)	현장 실무자 E	경기	센터장	여
6		현장 실무자 F	경기	센터장	여
7		현장 실무자 G	부산	센터장	여
8		현장 실무자 H	경북	센터장	여
9	3차 (공무원)	공무원 A	서울	공무원 (7급)	여
10		공무원 B	서울	공무원 (6급)	여
11		공무원 C	경기	공무원 (7급)	여
12		공무원 D	경기	공무원 (7급)	여
13		공무원 E	경기	공무원 (6급)	여

- 면접내용은 총 5가지 영역(공간특성, 공간개선(안), 공간 프로그램 특성, 정책육구,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유무)으로 구성하였으며, 면접 시작 시 참여자에게 연구 개요 및 답변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안내하였음. 면접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화 및 녹취 후 전사하였음.
- 설치기준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진에서 1차적인 공간개선(안)을 우선 제시하여, 현장 수용성 여부 및 추가 개선의견을 조사하였음.

가.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돌봄공간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 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다.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등

〈표 2-4〉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질문영역 및 내용

질문영역	세부 내용
1.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특성	· 다함께돌봄센터 활동실 및 활동실 외 공간면적 평가 · 지자체별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권고 기준 유무 · 지자체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공간 설치 매뉴얼, 가이드라인, 사업안 내 지침서 유무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개선(안)	·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및 설비 기준(공간구성, 면적, 사용층수 등) 평가 · 공간개선 관련 의견 회신 유무(이용자, 실무자 등)
3.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특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특성 ·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 및 시설 개선사항
4. 정책육구	· 지자체 지원정책 육구(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학습기기 등) ·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정책 방향 평가
5.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연계 현황 및 제한점

〈표 2-5〉 공무원 FGI 질문영역 및 내용

질문영역	세부 내용
1.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특성	· 다함께돌봄센터 활동실 및 활동실 외 공간면적 평가 · 지자체별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권고 기준 유무 · 지자체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공간 설치 매뉴얼, 가이드라인, 사업안 내 지침서 유무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개선(안)	·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및 설비 기준(공간구성, 면적, 사용층수 등) 평가 ·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 및 설비 기준(공간구성, 면적, 사용층수 등)으로 인한 센터설치 및 선정 시 어려움 · 공간개선 관련 의견 회신 유무(이용자, 실무자 등) ·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및 공간 개선(안) 평가
3.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특성	· 프로그램 관련 의견 회신 유무(이용자, 실무자 등)
4. 정책육구	·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육구 및 지역 및 이용자 특성, 향후 센터 설치 계획 유무 등 · 지자체 지원정책 현황(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학습기기 등) ·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정책 방향 평가
5.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 지역 돌봄 협의체(광역돌봄협의체, 기초돌봄협의체 등) 운영 현황 ·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연계 현황 및 제한점

2. 자료분석방법

- 초점집단의 면접내용은 질문영역을 중심으로 답변 내용을 분류하고 연관성 및 일관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분석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하고자 하였음.

제5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및 아동돌봄 관련 학계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총 6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6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개선(안) 관련 서면자문을 수행하였음.
-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조사를 통하여 거점형 센터의 역할 및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거점2호 다

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였음. 현장조사는 2023년 6월 7일 수행되었으며, 연구자 3인 및 연구보조원 1인이 참여하였음.

〈표 2-6〉 전문가 자문 대상자

구분	대상	소속	직책	분야
1	전문가 A	다함께돌봄센터	부센터장	· 아동돌봄
2	전문가 B	00연구소	소장	· 아동돌봄 정책
3	전문가 C	00대학교	부교수	· 아동돌봄 & 사회복지
4	전문가 D	00대학교	부교수	· 아동돌봄공간 계획 및 실내건축
5	전문가 E	주식회사 00	대표	· 아동돌봄공간 계획 및 실내디자인
6	전문가 F	00건축사	대표	· 아동돌봄공간 계획 및 건축

- 서면 자문서는 총 6가지 영역(면적, 설치, 공간구성, 아동권리 보장, 입지, 개선의견(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서면자문 자료 회신 후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음.

〈표 2-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내용

구분	조사내용
면적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최소 면적 기준(안) - 필수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유도 면적 기준(안) - 권고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의 최소와 유도면적 기준의 이원화
설치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 개선(안)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간에 대한 겸용사용 여부
공간구성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공간을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성 · 다함께돌봄센터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공간의 공간구성 방법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기준	· 아동권리 보장 관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세부 공간 · 다양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설치 기준
입지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기준(안)
추가 개선 의견	·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기준 개선 의견

2. 자료분석방법

- 전문가 자문의견을 개선(안)에 대한 수렴 정도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고 개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받아 최종 개선(안)을 도출함.

제3장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해외 현황

제3장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 방과 후 초등돌봄사업은 재정투입 측면에서 교육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구분되며(한성민, 2019), 아동·청소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이용대상, 설치기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표 3-1〉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 특성

주관부처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 2004년 시범운영 시작,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의미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저학년 학생을 우선 수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학교돌봄터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 ·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8항)하는 시설로 2004년 법제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사각지대 아동 우선 이용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 법제화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005년 시범운영 시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1. 교육부

1)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내 마련된 돌봄시설이자 방과후돌봄서비스로서(이혜숙, 이영주, 2019), 양육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인구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및 방과후·방학 중 돌봄사각지대의 완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음(교육부, 2022). 즉,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의 주된 목적은 학교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방학 중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교육부, 2022), 초등돌봄교실 구축 시 설치·설비 및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음.
 - 초등돌봄교실의 구축에 관한 설치·설비 및 운영기준에는 실내환경, 실외환경, 안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실내환경에는 초등돌봄교실 입지, 출입문 설치, 냉·난방, 전기 및 전자제품, 비품 및 가구, 실외환경에는 CCTV 및 인터폰, 방범 및 순찰, 안전에는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음.

〈표 3-2〉 초등돌봄교실 설치·설비 및 운영기준

영역	세부영역	내용
운영		· (권고) 시·도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부터 17~19시까지 운영 (단,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 및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 시간 조정 가능) ·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 (단,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 당 학생 수, 퇴실 시간, 학생들의 발달 단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
실내환경	입지	· (권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층 설치 · (위치) 가급적 관리실 및 화장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 · (위치) 위기 상황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확보 · (창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안전망/안전바 설치
	출입문 설치	· (출입문) 화재 등의 비상 시, 두 방향 이상의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치(출입문이1개만 있는 경우는 창문 확보) · (출입문) 가급적 나무문을 설치하고,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
	냉·난방	· 바닥난방 권고(예: 보일러, 전기판넬 등) · (실내온도) 학교 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운영(예: 동절기 20~25℃, 하절기 26℃ 이하 권고)

영역	세부영역	내용
	전기 및 전자제품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 부착 · 콘센트는 전기 안전을 위하여 개별 멀티콘센트 사용 · 콘센트 및 전기·전자 제품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설치
	비품 및 가구	· (가구) 학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 · (가구)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경우, 모서리 안전덮개 설치 · (가구) 바닥과 벽에 튼튼하게 고정(예: 가구장 등) · (침구) 이불 등 침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하게 관리
실외환경	CCTV 및 인터폰	· 현관 또는 출입구에 잠금장치, 인터폰을 설치(외부인 출입 관리) · 돌봄교실 주변과 학교 곳곳에 CCTV 설치·관리(돌봄교실 출입구 쪽은 가급적 100만 화소이상 권고)
	방법 및 순찰	· 학교안전인력과 연계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범시스템 작동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학교안전인력 및 지역 경찰서, 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순찰 강화 · 위기 발생 시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비상벨 등) 구축 가능 · 학생 안전을 위한 지역기관,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 및 비치·활용
안전	화재	· (권고) 가열기구는 전기제품 사용(예: 전기레인지, 전기포트 등) · 전기콘센트에 안전덮개 설치 · 소화기(분말 소화기 권고)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교실 입구와 복도, 조리실등)에 최소한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 요령 평소 숙지 · 출입문이 1개만 있는 경우, 교실 창문 확보 ·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 대피에 활용되는 문에는 자물쇠 등의 잠금장치와 닫히는 것을 방해하는 도어홀더 등이 없어야 함(내부에서 별도의 열쇠 등에 의하지 않고 쉽게 열 수 있는 잠금장치는 무방) · 화재가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시가 대피로 상에 있어야 함
	자연재해	· 재난으로 인한 휴업 시에 수요가 있는 경우 돌봄교실 운영(전제조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의 동행. 단, 재해지역 및 학교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미운영)
	감염병	·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시에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돌봄교실 미운영 가능

출처: 17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22 개정판)」. 저자 재구성.

2. 보건복지부·교육부

1) 학교돌봄터

- 학교돌봄터는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는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중 하나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일명 학교돌봄터)’을 2021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음(이혜숙, 이영주, 2022).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여 학교 내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모델로 3만 명의 학교돌봄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음(이혜숙, 이영주, 2022).

- 학교돌봄터의 기본방향은 학교가 활용가능교실 등 돌봄 제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

3. 보건복지부

1)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임(보건복지부, 2023b).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령상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제54조~75조, 그외 아동복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를 따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은 다음 <표 3-3>와 같음(보건복지부, 2023b).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설비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입지에는 설치를 위한 조건, 시설기준에는 전체 면적, 아동 1명당 전용면적,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급·배수, 비상재해대피시설을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음.
 -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입지는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주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 부지(「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를 선정해야하며,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에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시설기준의 경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단,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표 3-3> 지역아동센터 설치·설비기준

영역	세부영역	내용
시설입지		· (필수)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주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 부지(「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 (권고)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타 기관,개인용도

영역	세부영역	내용
		등과 공동사용 불가함. · 지역아동센터 설치가능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임.
시설기준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공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¹⁾ 3.3㎡(제공미터) 이상 이어야 함. 단,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급·배수	· 급수·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함.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어야 함.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 비치 · 비상구 설치 ·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저자 재구성.

2)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이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함(보건복지부, 2023a).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 규모와 필수설비만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세 설치기준 및 입지조건은 다음 <표 3-4>와 같음.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공미터) 이상일 것**
-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 것

1) 전용면적: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 전용면적 산정 시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만 산정하며, 이외의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기준이므로, 아동의 돌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시설입지의 경우,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니어야 하며(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 등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표 3-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설비기준

영역	세부영역	내용
시설입지 (권고)		·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 학교²⁾ 등
		· (권고) 전용면적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기준이므로, 아동의 돌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
시설기준	출입문	·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와 화장실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진입공간) 아동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으로 설치 · 이용 아동의 시설 출입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구 주변에 담장 혹은 데크 설치 · 아동 수에 맞게 신발장, 우산꽂이, 외투걸이 등을 둘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현관 설치 · 출입문 내/외부에 흙이나 먼지 털이가 가능한 매트 등 설치 · 우천 시에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차양 장치를 설치
	활동공간	·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과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2개실 이상 권고)하여 설치
	사무공간	· (사무공간) 종사자 휴게공간 및 학부모 상담공간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행정업무, 돌봄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
	급·간식공간	· 급·간식의 제공 여부 및 형태에 따라 주방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간식 준비 등을 위한 조리대 및 아동위생을 위한 싱크대 등을 설치
	위생공간	· (화장실)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 · (세면대) 아동의 신장을 고려한 높이로 설치
	급·배수 시설	· 상수도로 하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 ·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여 설치
	보완	· CCTV, 출입보안장치(출입카드/지문인식장치, 인터폰, 원격개폐장치 등) 등 설치 권고

출처: 보건복지부(2023a).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69p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체크리스트' 저자 재구성.

4. 여성가족부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기반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로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며,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음(여성가족부, 2023).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가능함. 설치 및 입지요건 내 전용공간(교실), 지도자실, 활동실, 북카페 및 휴게실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3-5>과 같음.
 -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을 기반으로, 연 1회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점검표는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토목부문, 건축부문에 관하여 구성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23).

<표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설비기준

영역	세부영역	내용
시설기준		·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고
	전용공간(교실)	· 전용공간(교실) 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30명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해야함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활동실(프로그램)	·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 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지도자실	·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고

2)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가능(「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건복지부, 2023)

5. 소결

○ 초등돌봄서비스별 설치 및 설비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내 설치(초등돌봄교실), 수련시설 및 공공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조건을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관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제 1,2종), 노유자 시설 등 비교적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의 건축물과 공동사용이 불가한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타 사회복지시설 내 병행설치 시 일부 공동사용이 가능함.
- 입지조건은 층수제한(1층 설치, (반)지하 및 5층 이상 배제),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 교통편의 등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법령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을 동일한 기준인 3.3㎡(제곱미터)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1명당 전용면적(3.3㎡) 및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현황(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인 이상)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 현황(30인, 40인, 60명)에 따라 교실 설치 기준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학급의 정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한 바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의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은 최소 전용면적을 66㎡로 권고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3-6〉 초등돌봄서비스 설치·설비기준 비교

영역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 건축물 및 전용 여부	· 초등학교 내 설치 · 전용교실이 없는 경우, 특별실, 도서실,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활용 가능	· 센터 전용(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 불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센터전용 (단, 타사회복지시설에 병행설치시 일부 공동사용 가능)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학교 등	· 청소년수련시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영역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입지	1층 설치 - 가급적 관리실(사무실) 및 화장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교통편의 고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출입, 고음금지업소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 없는 부지 선정 -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지하층 배제 - 환기 원활한 곳
아동 1명당 전용면적	-	3.3㎡ 이상	3.3㎡ 이상	-
정원(학급)	20명 내외 (학급)	아동1인당 면적 고려 산정하되, 아동 10명, 10~30명, 30명 이상 아동 명수 기준에 따라 종사자 배치	아동1인당 면적 고려 산정	아동 30명, 40명, 60명 등 아동 명수 기준에 따라 활동실 수 산정
시설기준	-	사무실 · 조리실 ·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는 최소 면적 기준이므로, 아동의 돌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	-
활동실	-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2개실 이상 권고)	-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
사무실	-	적당한 설비	- 종사자 휴게공간 및 학부모 상담공간을 포함하여 설치 - 행정업무, 돌봄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춘	-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층 배치 권고
화장실	-	- 수세식 화장실(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 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 비치) - 변기를 1개 이상 설치	- 화장실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 (세면대) 아동의 신장을 고려한 높이로 설치	-
조리실 (급 · 배식)	-	- 채광 및 환기 -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 급 · 간식의 제공 여부 및 형태에 따라 주방 설치 여부를 결정 - 간식 준비 등을 위한 조리대 및 아동위생을 위한 싱크대 등을 설치	-

제2절 해외 현황

1. 해외 초등돌봄 사례

1) 독일

- 독일의 초등돌봄은 주로 전일제 학교(All-day School)와 데이케어 센터(이하 호르트, Hor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상이함.
-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기관인 호르트는 사회법 8권(SGB VIII) § 24 Abs. 4에 따라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전/후에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 호르트는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 보호 및 돌봄을 제공.
- 연방정부 차원에서 호르트의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르트의 운영 시간은 서독과 동독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BMFSEJ, 2019).

- ❖ 동독이 오전 6:00, 서독이 오전 6:30부터 돌봄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서독보다 이른 시간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 ❖ 오후 돌봄은 오후 5-6시까지 운영되며, 종료 시간은 서독과 동독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센터는 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점심에 대한 비용이 청구됨.

- 독일의 학교는 전일제 학교(All-day school)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음.

- 전일제 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3일(하루당 최소 7시간) 전일제로 구성되며, 아동들(초등학교~lower secondary level)에게 전일제 옵션이 주어짐. 이는 세 가지 다른 형태가 있음.

- ❖ 의무형 전일제학교 : 모든 학생들이 제공되는 전일제 서비스를 이용
- ❖ 부분 의무형 전일제학교 : 학생들의 일부만 전일제 서비스를 이용
- ❖ 개방형 전일제학교 : 서비스가 개방되어 있고,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이 유형의 학교가 가장 많음

- 전일제 서비스는 학교장의 감독 및 책임 하에 조직되어야 하며, 활동은 개념적으로 수업과 연계되어야 함.
- 전형적인 방과후 활동에는 학습 및 실습 제공, 숙제 감독, 학습 지원, 레크레이션 활동, 스터디 그룹 등 학급 교사가 수업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간이 포함됨.
- 전일제 학교는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함.

○ 이러한 전일제 학교는 독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21/2022학년도에 모든 공/사립 초등학교의 72.1%가 온종일 학교였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47.7%가 종일 교육에 참여하였음.
- 초등학생 연령 아동의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Ganztagsförderungsgezet - GaFöG)은 2026/2027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연령 아동의 전일제 돌봄에 대한 법적 자격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자격은 처음에는 1학년 수준에 적용될 것이고 매년 한 학년씩 연장될 것임.
- 2029년 8월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명의 아이들은 근무일에 하루 8시간 동안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됨.

2) 미국

- 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과후과정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프로그램이 있음(이희현 외, 2019).
- 미국의 방과후학교정책은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되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재단법인과 민간조직이 함께 추진하고 있어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움.
- 방과후프로그램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며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21세기 지역사회교육센터가 가장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각 주마다 다양한 방식의 주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① 연방정부 - 21세기 지역사회교육센터³⁾, ② 민간조직 - 미국방과후프로그램 연합회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21세기 지역사회교육센터(21st CCLC)는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가 지역의 단체,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정부는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실, 체육관, 교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활용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임.⁵⁾
 - 80% 이상은 공립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서 10% 정도 운영되고 있음.⁶⁾ 그러나 미국의 방과후 돌봄 체제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지역

3) <https://www2.ed.gov/programs/21stcclc/legislation.html>

4) <https://www.afterschoolalliance.org/>

5)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288563#cb

사회의 조직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고 맡고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음(서혜전, 2018).

- 목표 : 빈곤하며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 외 시간의 학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과 같은 핵심 학문 과목에서 주 및 지역의 학문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에게 정규 학문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며, 참여 아동의 가족에게 문해력 및 기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⁷⁾
- 기반 법률 :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의 Title IV, Part B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 2017-2018년까지는 No Child Left Behind Act(NCLB)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음.⁸⁾

○ 방과후프로그램 연합회(Afterschool Alliance)⁹⁾는 정책 입안자, 정부 기관, 부모 및 교육 그룹, 기업 등 광범위한 조직 및 지지자와 협력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 조직임.

- 방과후프로그램 연합회는 2000년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미국 교육부, JCPenney Company, Inc., Open Society Institute/The After-School Corporation, Entertainment Industry를 포함한 소수의 기업 및 재단 자선 단체에 의해 설립됨.
- 목표 : 양질의 저렴한 방과 후 및 여름 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동,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 것 등임.

3)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을 근거로 한 거대한 교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공보육 및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이희현 외, 2019),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서비스와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고등교육 외 모든 공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을 위한 레저타임센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님. 교육법(Education Law)에서는 이와 같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6) 2016-17년 21세기 지역사회센터 프로그램 성과보고 <https://www2.ed.gov/programs/21stcclc/performance.html>

7) <https://oese.ed.gov/offices/office-of-formula-grants/school-support-and-accountability/21st-century-community-learning-centers/>

8) <https://www2.ed.gov/programs/21stcclc/legislation.html>

9)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aboutUsVision.cfm>

- 교육법에 따라 6세에서 16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는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함.
- 이때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은 레저타임 센터(fritidshem), 패밀리 데이케어 홈(familjedaghem) 또는 열린 레저 센터(öppen fritidsverksamhet) 등에서 학령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학령기 아동 돌봄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시간(방과 전/후)에 아동들을 적절한 돌봄 센터에 배치해야 함.

-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즉시 레저타임 센터에 자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치단체는 학부모의 취업·학업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의무학교 또는 예비교실 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으로 가정 사정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는 학생이 13세가 되는 해에 봄 학기까지 레저타임 센터를 제공해야 하며, 시는 학생이 10세가 되는 가을학기부터 레저타임 센터 대신 개방적인 레저 활동(leisure activity)을 할 수 있음.

❖ 신체적, 정신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학생이 여가 센터에서만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의무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하루의 일부 시간 동안 여가센터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레저타임 센터를 제공하는 독립 학교의 교장들도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함.
- 독립적인 레저타임 센터가 존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독립 레저타임 센터는 협회의 형태로 유한 회사, 종교 공동체, 재단 또는 경제 협회에 의해 운영될 수 있음.
- 레저타임 센터의 이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임. 이용료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 며, 최대 요율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족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불편한 시간(예를 들면, 새벽 시간 등)에도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한 지님.

- 교육법(Skollagen SFS 2010:800)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유치원이나 레저타임 센터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아동 돌봄 의무를 돌봐야 함.
- 특히 주말 및/또는 평일 저녁 19:00에서 아침 06:00 사이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데, 스웨덴 국립 교육청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에 4,839명의 아동이 이 시간에 보육 시설에 등록되었음.

- 해당 시간에 센터에 등록한 아동의 대다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센터에 다님.
- 스웨덴의 학령기 아동들은 레크저타임 센터¹⁰⁾와 개방형 레저 활동을 주로 이용하는데, 10세까지의 아동은 레저타임 센터를, 고학년의 경우 개방형 레저활동을 이용함.
- 레저타임 센터(fritidshem)¹¹⁾는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교에 등록된 아동 또는 시설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휴교일 및 연도에 운영되는 교육 단체 시설이며, 일반적으로 여가 센터는 학교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 레저타임 센터는 유치원이나 의무 학교에 다니는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자극하고 지식과 경험을 심화하며 의미 있는 여가 시간과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임.
 - 교육은 학생의 필요, 관심 및 경험을 고려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정되며, 여가 센터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영향력 및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가짐.
 - 지자체는 레저타임 센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레저타임 센터는 일반적으로 7시부터 17시 30분까지 방과 전과 방과 후 개장함.
 - 스웨덴 국립 교육청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스웨덴에는 4,446개의 레저타임 센터가 있었고 3,731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였음.

2. 해외 공간기준 사례

1) 미국

- 미국의 아동보육 및 조기교육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Health and Safety in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에서는 조기교육·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보건, 안전 실행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공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²⁾.
- 국가자원센터(NRC)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활동을 위한 공간은 아동 1명당 최소 42 square feet(3.9㎡)의 마루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기준은 아동 1명당 50 square feet(4.5㎡)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공간 면적은 제외한 것임.

10)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ratt-till-fritidshem>

11)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organisational-variations-and-alternative-structures-ecec>

12) <https://nrckids.org/CFOC/Database/5.1.2>

- ❖ 이동을 위한 동선 (예를 들면, 활동공간 주위의 복도)
- ❖ 학급 지원 공간 (예를 들면, 직원 업무 공간, 활동공간과 인접한 활동 도구 적재함)
- ❖ 가구 (예를 들면, 책장, 소파, 칸막이, 책상과 의자 등)
- ❖ 센터 지원 공간 (예를 들면, 행정실, 세면실 등)

○ 이러한 아동보육시설의 활동공간과 관련된 규정은 여러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진 것임.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기능성과 아동과 교사간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
- 집단 크기와 교사와 아동 비율
- 공간사용의 효율성과 교사 지도감독의 용이성
-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아동 1명당 필요 공간 범주(42에서 54 square feet)

○ 한편, 미국의 총무청(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는 아동 돌봄 센터 디자인 가이드(GSA Federal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를 마련하여 총무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공간에 돌봄 센터를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가이드에 명시된 요구 사항 및 권고 사항은 최적의 설계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아동 1명당 2.2㎡에서 5㎡의 장애물 없는 실제 활동 공간(Actual Floor Area)과 아동 1명당 약 8.4㎡의 전체 임대 공간(Occupable Floor Area)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활동 공간의 경우, 복도, 행정공간, 창고, 화장실, 부엌과 세탁 공간, 건물관리 및 지원 공간 등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함.

○ 학령기 아동을 위해 방과전후나 휴일, 여름방학 등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면적은 취학 전 아동들과 차이(남녀화장실이 구분 등)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함. 20명 정원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간을 기준으로 아동 1명당 5㎡의 활동공간, 라커 0.47㎡, 세면대 0.16㎡, 남자화장실 0.30㎡, 여자화장실 0.32㎡, 창고 0.27㎡ 등을 포함하여 아동 1명당 7.96㎡ 전체 공간(20명인 경우 159.2㎡)을 요구하고 있음.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한 그룹 당 2명의 교사, 20 ~ 24명의 아동을 배치할 수 있음.
- 한 그룹의 교실은 다른 교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이 공간에는 적절한 크기의 가구와 장비가 포함되어야 함.
-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공간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제기될 수 있음.

- ❖ 아이들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공간
- ❖ 교재, 장난감 및 교구용 낮은 선반
- ❖ 식사 및 지저분해지기 쉬운 활동 구역에 충분한 면적의 방수 바닥
- ❖ 보관 공간에 방해되지 않는 코너 영역(활동이나 휴식 등의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음)
- ❖ 구분된 장소에서의 소그룹 모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physical challenges) 다락방

- 돌봄 센터 정원은 일반적으로 74명 이상이어야 하며, 150명을 초과해서는 안됨. 센터가 15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RCCC의 승인이 필요함.
- 센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센터 내부의 경우 채광과 환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아이 돌봄 센터에 자연채광은 필수이며, 돌봄 센터는 충분한 양의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자연광은 교실 공간을 밝히는 주요 수단이어야 하며, 최소한 자연 채광이 전체적으로 비추는 것이 이상적임.
 - 자연광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새로운 돌봄 센터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교실 공간이 남쪽을 향하도록 하여 설계되어야 함.
 - 창문이 없는 경우 전체를 비추는 간접 조명과 다양한 광원이 있어야 함.
 - 저독성 또는 무독성 마감재와 허용 가능한 환기 수준 및 시스템 설계를 사용하여 우수한 실내 공기질을 설계해야 함.
- 센터 외부의 경우 소음 수준, 공기 품질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센터는 주요 고속도로, 교차로, 철로, 공항 비행 경로와 같은 소음원 근처에 완화 조치 없이 위치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RCCC가 부지를 승인하기 위해 음향 조치가 필요함.
 - 센터는 연기나 먼지, 운송 차량, 용광로 및 소각로 배기 가스 등에 노출되면 안되며, 식품 가공, 폐기물 처리 작업, 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 근처에 설립되지 않아야 함.
 - 바람직한 자연 지형이 있는 부지에 센터를 배치, 선택한 위치는 지역 기후 조건에 적합한 야외 놀이터가 이용 가능해야 함.
-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돌봄 센터 설계 지침 외에, 주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방과후 돌봄 센터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미시간 주와 뉴저지 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① 미시간 주

- 미시간 주에서는 미시간 학교 밖 시간(MOST : The Michigan Out of School Time) 품질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학교 및 기타 조직이 K 12학년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고품질의 종합적인 학교 밖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기준으로, 이 기준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
- 미시간 주 아동보육센터 면허규정(Licensing Rules for Child Care Center)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학령기 아동 1인당 최소 3.25㎡의 실내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복도, 화장실, 사무/접수공간, 조리실, 저장공간, 보관소, 휴식/수면/식사 공간은 제외됨. 또한, 하루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1.48㎡ 이상의 실외 놀이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조진일 외, 2015).
- 한편, 앞에 언급한 MOST 품질 표준에 따르면, 아동과 성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룹의 크기와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은 일관되게 유지되며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 K학년에서 3학년까지: 어린이 또는 청소년 10명과 성인 1명
- ❖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동 또는 청소년 15명과 성인 1명까지
- ❖ 연령이 혼합되어 있는 그룹은 그룹의 가장 어린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비율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 아동 및 청소년이 상주하는 시간에는 2명 이상의スタッフが 상시 참여해야 함.
- 특히 실내, 실외 또는 별도의 활동 영역으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을 때 모든 위치에서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제공해야 함.

○ 그 외 실내·외의 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안하고 발달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 ❖ 개인, 소그룹, 전체 그룹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준비 및 제공
- ❖ 물리적 환경은 프로그램 제공자, 아동 및 청소년, 직원의 필요에 맞게 수정 가능해야 함
- ❖ 활동적이고 조용한 활동을 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구별된 공간 마련
- ❖ 장비, 자재 및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 마련
- ❖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에 따라 충분한 재료, 장비 및 자원이 이용 가능해야 함
- ❖ 공유 공간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함
- ❖ 프로그램은 장애물이 없으며 모든 미국 장애인법(A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안전하고 연령/능력에 적합한 영역을 제공하도록 실외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 ❖ 일상적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신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야외 공간 마련
- ❖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활동적이고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 장비와 게임을 제공

② 뉴저지 주

○ 뉴저지 주에서는 교육부, 휴먼 서비스부, NJSACC(New Jersey School-Age Care Coalition)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 돌봄 공간 구성에 대한 매뉴얼인 「Imagine : After-school Space That Works」를 배포함. 해당 매뉴얼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입구 : 아동의 출입 관리가 되어야 하고, 아동의 개인 소지품 보관이 가능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공지사항 게시가 가능해야 하고, 아동과 부모 및 방문자들을 적절한 위치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의 개인 사물함 : 가방, 악기, 스포츠 용품, 겹옷, 책, 도시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아동의 라벨이 부착된 개별 보관 공간과 진행 중인 작업(숙제와 같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함.
- 휴식 및 낮잠 공간 : 휴식 및 낮잠 시간이 있는 경우, 아이들은 라벨이 부착된 담요가 필요하며 개별 보관 가방에 보관해야 함.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거나 책을 읽는 아동을 위해 작은 랜턴을 제공해야 함.
- 아동의 거점 공간(home base) : 많은 수(하루 25명 이상)의 아동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소그룹을 위한 거점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음.

❖ 이 공간은 보다 친밀하고 연령에 맞는 그룹을 형성하고,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를 촉진하며, 아동의 소지품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 회의 및 소그룹 토론을 위한 장소 제공,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 계획 가능, 숙제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제공의 기능이 있음

- 식사 공간 : 학교에서의 식사 시간은 시끄럽고 바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편안하고 덜 제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큰 그룹이 아닌 4~6명의 어린이를 위한 테이블 배치
 ❖ 작은 분필이나 화이트보드에 메뉴 게시
 ❖ 밝은 비닐커버 테이블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수비게 소독이 가능함

- Interest Areas : 관심 영역 개발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동을 다차원적으로 잘 지원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간임. 학령기 아동들은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에서 시간을 보낼 때 기존 관심사를 지원해야 함.

2) 스웨덴¹³⁾

○ 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방과 후 센터의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목적

13)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fritidshem-och-oppen-fritidsverksamhet#h-Arbetsmiljonifritidshemmet>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과 후 센터의 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조용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레저 센터의 학생 그룹이 적절한 구성과 규모를 갖도록 해야 함.

- 방과 후 레저타임 센터에 대한 스웨덴 국립 교육청의 일반적인 조언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학습 및 발달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적절한 구내 및 야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장은 레저타임 센터 내에서 대규모 및 소규모 그룹의 활기찬 활동과 보다 평화로운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
- 학생들은 또한 다양한 활동, 놀이 및 이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야외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학교와 달리 방과 후 보호를 받는 학생에게는 근로환경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학교법의 규칙 외에도 레저타임 센터의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환경법 조항이 있음.

3) 호주

- 호주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 국가규정(Education and Cares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에서는 아동 1인당 최소 3.25㎡의 장애물 없는 실내공간과 최소 7.0㎡의 장애물 없는 실외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조진일 외, 2015).
- 장애물 없는 실내공간이란 통로 또는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 화장실 및 위생설비, 기저귀갈이, 침대 보관 또는 사용을 위한 공간, 수납공간, 돌봄교사 및 직원을 위한 공간, 주방 공간 등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하며, 장애물 없는 실외공간의 경우, 통로 또는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 주차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실내 공간 산정시 포함된 베란다 공간 등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함.

〈표 3-7〉 호주 교육 및 돌봄서비스 국가규정

구분	최소필요면적 (1인당)	면적 산정시 제외 공간
실내	3.25㎡	· 통로 또는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 · 화장실 및 위생설비 · 기저귀갈이 공간 · 침대의 보관 또는 사용을 위한 공간 · 수납공간 · 돌봄교사 및 직원을 위한 공간 · 주방공간(돌봄프로그램의 일부로 주로 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타 공간
실외	7㎡	· 통로 또는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 · 주차공간 · 창고 등 수납공간

구분	최소필요면적 (1인당)	면적 산정시 제외 공간
		· 실내공간 계산에 포함된 베란다 공간 ·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타 공간

출처: Education and Cares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2011), 조진일 외(2015)에서 재인용.

- 한편, 이러한 규정에 기반하여 지방정부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남 호주 정부(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교육 및 아동서비스부는 출생부터 8세까지 초기 아동기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Early Childhood Facilities: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을 제시하고 있음.
- 출생부터 5세까지는 아동 1명당 최소 3.25㎡의 장애물 없는 실내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통로 및 통행에 필요한 공간, 화장실, 식당, 행정 공간 등은 제외하며, 활동 공간은 영아, 유아, 취학전아동 등 연령에 따라 신체/청각적으로 활동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음.
- 5세이상 8세까지 아동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은 주입구/접수 공간, 지역사회 공간, 서비스 제공 및 활동 공간, 직원 및 행정 공간, 외부 활동 공간 등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공간의 면적은 중학교(junior primary school) 시설 기준에 기반하되, 아동 1명당 3.14㎡의 기본 할당, 6.13㎡의 총 건물 할당 면적을 준수토록 하고 있고, 등록 아동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적정 공간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

〈표 3-8〉 호주 5세-8세 아동 시설의 정원별 공간 면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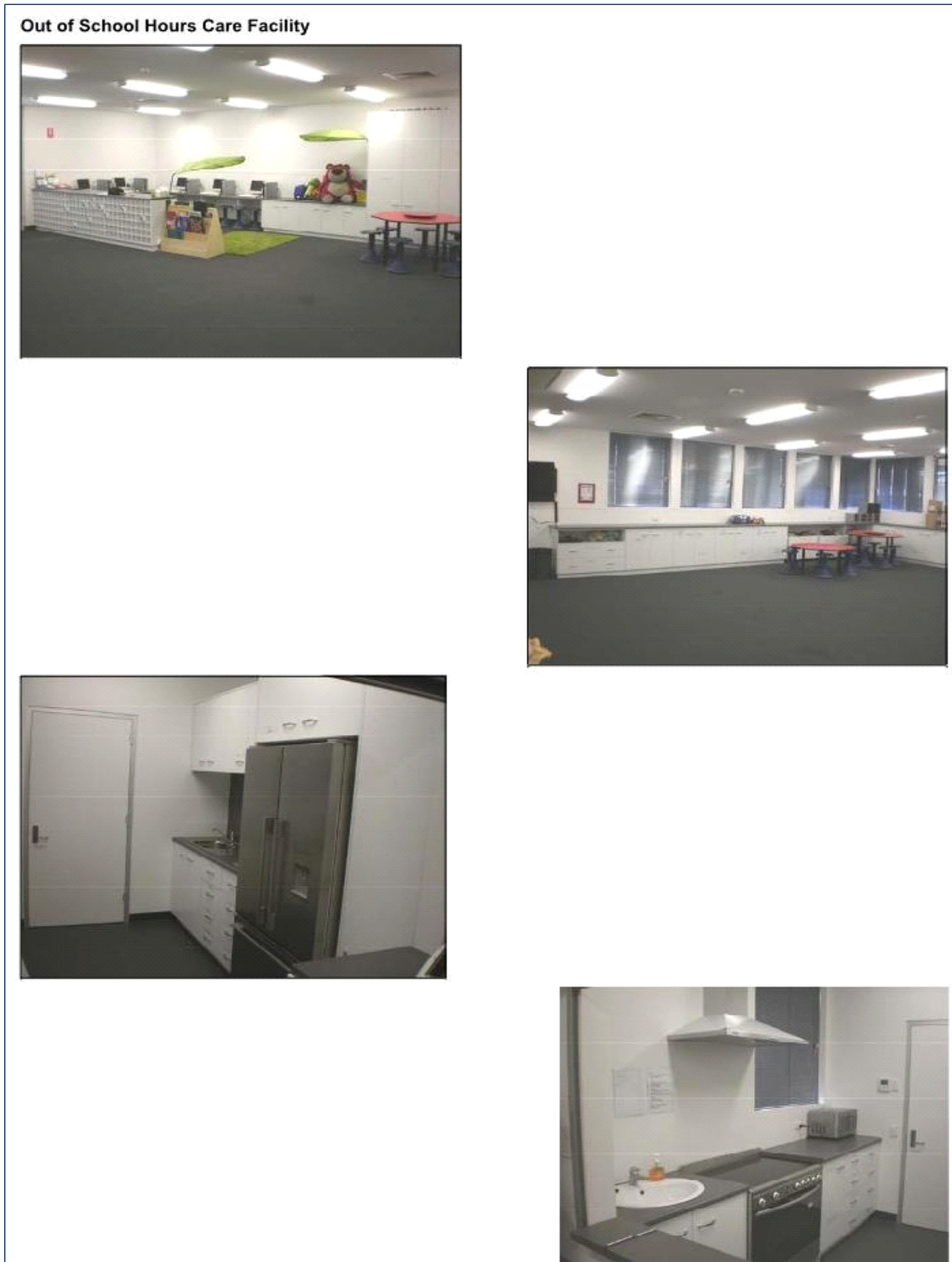
공간(㎡) \ 아동수	120명	150명	180명	210명
학습공간(Learning commons)	224	280	336	392
휴식공간(Withdrawal)	28	35	42	49
직원/행정(Staff preparation)	20	25	30	35
수납공간(Store)	24	30	36	42
실습활동(Practical Activity)	56	70	84	98
화장실(Toilets)	24	30	36	42
합계	376	470	564	658

- 한편, 5-8세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돌봄 시설은 모든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개조되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야 함. 또한 실내와 실외 환경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호기심,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자극이나 흥미, 다양성, 변화 및 도전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하며, 주변의 자연 환경을 반영하여 설계토록 하고 있음.

- 각 어린이에게 최소 3.25㎡의 방해받지 않는 실내 바닥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동이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영역과 더 큰 사회 집단에서의 상호 작용을 위한 영역이 구성되어야 함.
- 시설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조정되어야 함.
-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선반 및 보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식품 안전 표준과 관련된 남호주 및 지방 정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주방 및 음식 준비 구역과 직원 편의 시설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화장실, 손 씻기 및 건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행정 기능, 개인 대화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할당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활동 구역의 아트싱크에 대한 접근성이 마련되어야 함.
- 아동들이 휴식과 조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아동 1인당 최소 12㎡의 야외 사용 가능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다음과 같은 설립 계획 및 센터 설계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주차 구역에서 가깝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 조명이 양호해야 함.
- 유해 물질, 응급 처치 장비, 약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전용 보관 공간이 있어야 함.
-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화장실, 손 씻기 및 건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음식 준비를 위한 주방 시설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이 필요하며, 주방 시설에는 싱크대, 세면대, 냉장고, 현재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남호주 및 지방 정부 요건에 따른 스토브(또는 전자레인지)가 포함되어야 함.
- 어린이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이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어린이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함.
- 전화, 전원 및 데이터 콘센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난방, 냉방 및 환기는 DECD 정책 및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 가방걸이 또는 칸 등은 DECD 정책 및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그림 3-1〉 호주 방과후 돌봄 센터 사례

출처: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Early Childhood Facilities: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4) 싱가포르

- 싱가포르에서는 8세-14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학교 내 돌봄 교실의 경우 전용 또는 겸용 돌봄교실과 학교내에 별도의 돌봄전용 독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조진일 외, 2015).
- 싱가포르 사회가족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에서는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학생돌봄센터 지침서(Guidelines for Student Care Center, 2019)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자들이 센터의 물리적 환경 구성, 안전/보건/위생/영양, 직원, 프로그램, 행정, 지역사회자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물리적 환경 구성과 관련하여 실내·실외 공간, 가구·기자재, 시설관리 및 청소, 학습 환경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실내 공간과 관련해서는 아동들의 연령, 능력, 욕구, 관심 등을 감안한 아동수와 더불어, 방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아동들에게 학습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토록 하고 있음.
 - 가이드에서는 아동 1명당 사용 가능한 마루 공간으로 3㎡로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80㎡의 마루 공간은 최대 약 60명의 아동이 이용가능한 공간이 됨.
 - 이러한 아동 1명당 실내 공간에는 간호실, 직원 공간, 주방, 창고, 화장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실내 공간은 아동들이 개별 활동 또는 소집단/대집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동적/정적, 소음이 있는/조용한, 혼잡스러운/깨끗한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외부활동이 어려운 날씨, 환경을 대비하여, 실내 공간은 동적 운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실내 공간은 가능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권고함. 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분리 또는 결합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파티션이나 공간분리 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가구나 장비 등은 직원이 상시 아동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외 공간의 경우 명확하게 아동 1인당 권고 공간 크기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동들의 운동 활동을 위해 빈 테크나 외부 놀이터, 축구장과 같은 구기(ball) 구장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out-of-school club) 서비스는 부모

의 일가정 균형,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학교 연장 계획(extended school agenda)의 일부로 형성되어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방과후 클럽(After-school club), 휴일클럽(holiday club), 조식클럽(breakfast club) 등이 있음. 방과후 클럽은 주로 학기 도중에 방과후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프로그램이고, 휴일클럽은 학교 휴무일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보육프로그램임(김미숙 외, 2012).

- 일부 학교가 직접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이나 놀이그룹 또는 다른 사적 아동보육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제공하기도 하며, 지역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내 서비스(예를 들면, 아동보호, 학교 근처의 방과후 클럽 등)를 통해 제공되기도 함.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0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 교육부에서 법적인 강제규정(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2021)을 통해 영유아의 학습, 발달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기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에서는 3-5세 아동의 경우 아동 1명당 2.3㎡의 실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보육시설에 요구하고 있음. 다만, 5세 이상 아동이 주 대상인 방과후 돌봄시설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요구되지는 않음.
- 잉글랜드 지역과는 다르게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우, 2016년 ‘스코틀랜드 조기교육 및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2020년 청사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1140시간의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계획을 밝힘.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기학습과 보육서비스’, ‘방과후아동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나, 정책 기획자 또는 건축가들이 이와 관련된 서비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가이드(Space to Grow: Design guidance for early learning and childcare and out of school care settings)를 제시함. 이 가이드에 따르면,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아동 1명당 최소 3.7㎡, 2세 이상 3세의 경우 아동 1명당 최소 2.8㎡, 3세 이상의 경우 아동 1명당 최소 2.3㎡의 놀이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음. 여기에는 화장실, 창고, 부엌, 직원이나 부모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등은 제외한 것임.
- 한편, 아동들이 가능한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모든 ‘조기 학습 및 아동보육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제공 시설은 가깝고, 안전하고, 적절한 실외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외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인 대 아동 비율로 2세 미만은 1:3, 2세~3세는 1:5, 3세 이상은 1:8, 모든 아동이 8세 이상인 경우는 1:10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The Scottish government, 2009), 한 시점에 2명 이상의 성인이 존재해야 하며,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이 있을 시 추가적인 지원 직원을 요구하고 있음.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제4장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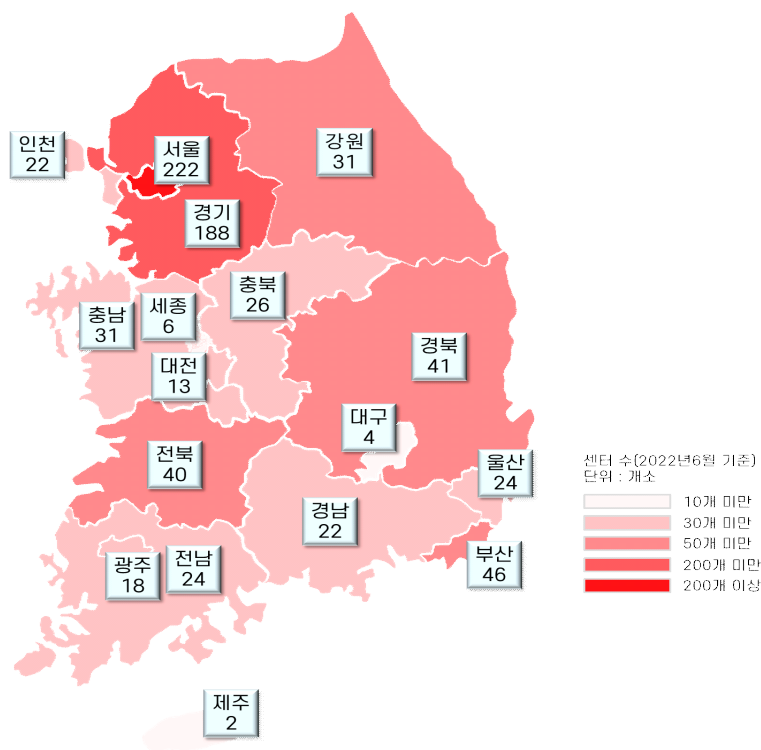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 설치현황

1) 시도별 설치현황

① 전국 760개 다함께돌봄센터의 시도별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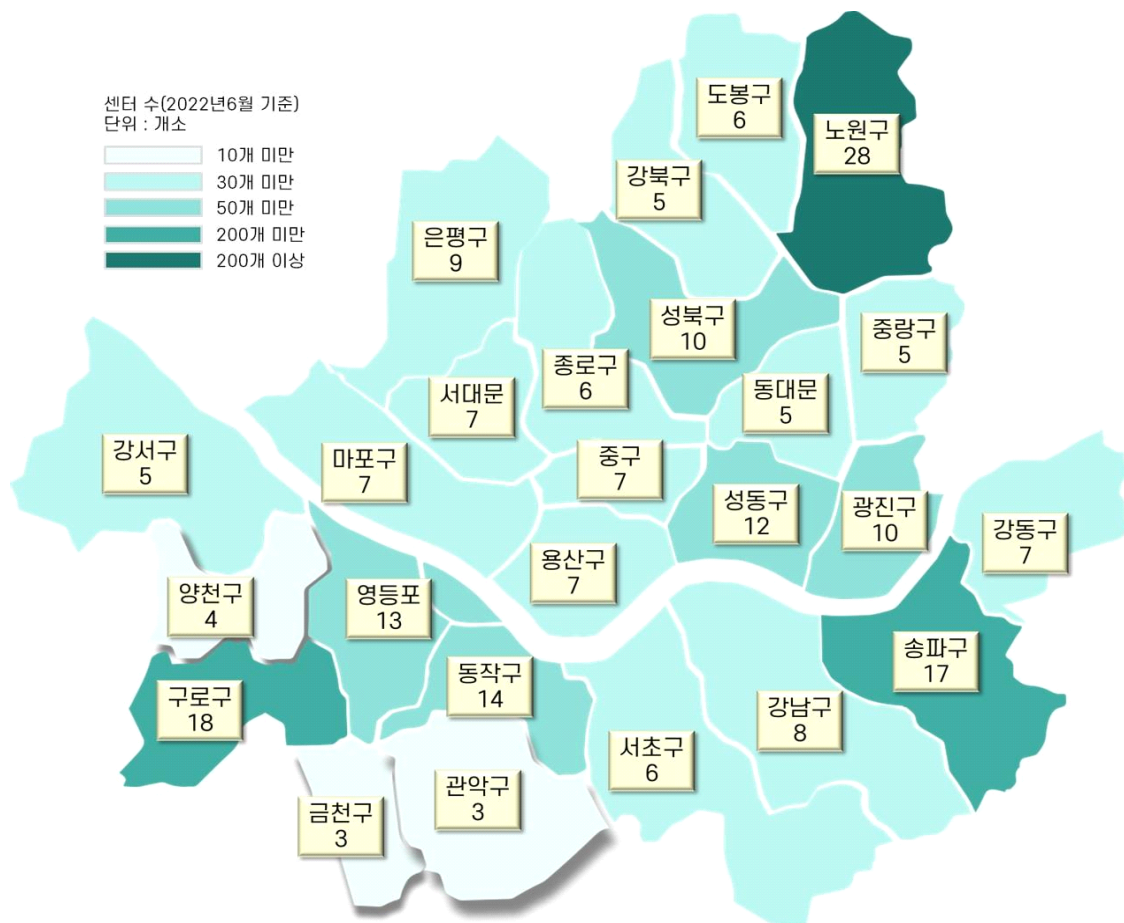
- 서울시가 222개소(29.2%)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다음으로 경기도 188개소(24.7%), 부산광역시 46개소(6.1%), 경상북도 41개소(5.4%), 전라북도 40개소(5.3%), 충청남도 31개소(4.1%), 강원도 31개소(4.1%), 충청북도 26개소(3.4%), 울산광역시 24개소(3.2%), 전라남도 24개소(3.2%), 인천광역시 22개소(2.9%), 경상남도 22개소(2.9%), 광주광역시 18개소(2.4%), 대전광역시 13개소(1.7%), 세종특별자치시 6개소(0.8%), 대구광역시 4개소(0.5%), 제주특별자치도 2개소(0.3%) 순임.



〈그림 4-1〉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②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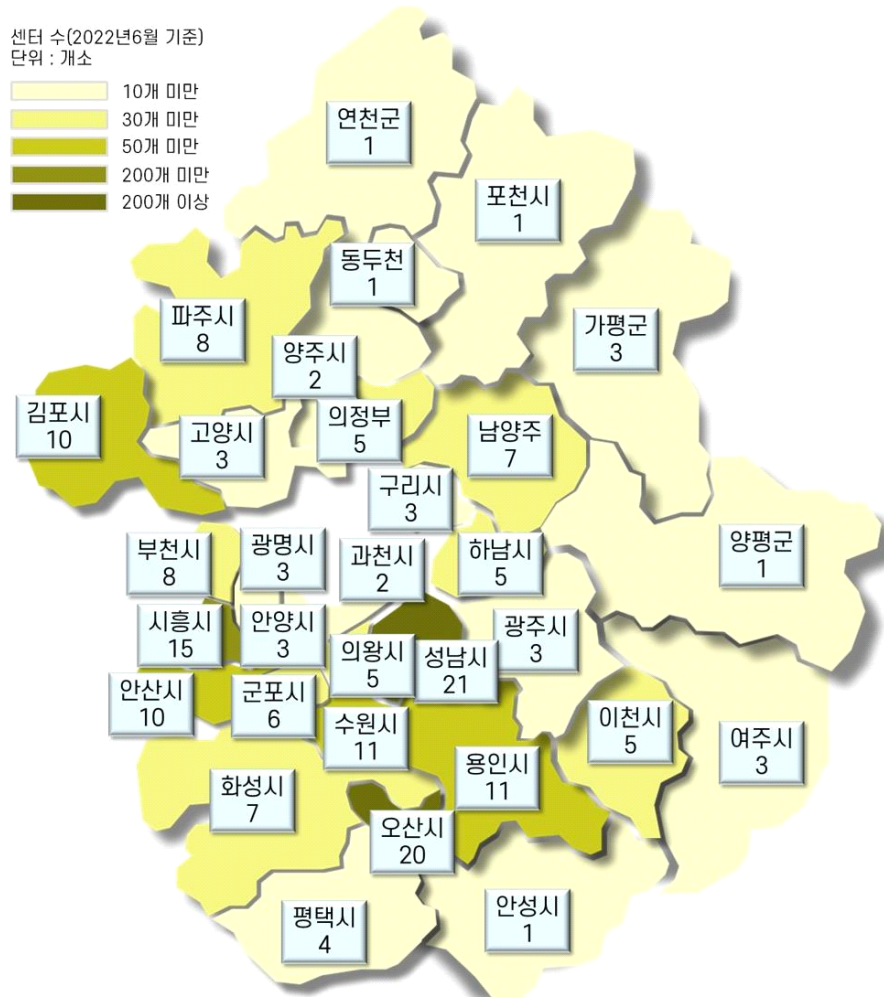
- 서울시 전체 222개소 중 노원구가 28개소(12.6%)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 다음으로 구로구 18개소(8.1%), 송파구 17개소(7.7%), 동작구 14개소(6.3%), 영등포구 13개소(5.9%), 성동구 12개소(5.4%), 성북구 10개소(4.5%), 광진구 10개소(4.5%), 은평구 9개소(4.1%), 강남구 8개소(3.6%), 강동구 7개소(3.2%), 서대문 7개소(3.2%), 중구 7개소(3.2%), 마포구 7개소(3.2%), 용산구 7개소(3.2%), 도봉구 6개소(2.7%), 서초구 6개소(2.7%), 종로구 6개소(2.7%), 강북구 5개소(2.3%), 강서구 5개소(2.3%), 동대문구 5개소(2.3%), 중랑구 5개소(2.3%), 양천구 4개소(1.8%), 관악구 3개소(1.4%), 금천구 3개소(1.4%) 순임.



〈그림 4-2〉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구별 설치 현황

- 경기도는 성남시가 21개소(11.2%)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다음으로 오산시 20개소(10.6%), 시흥시 15개소(8.0%), 수원시 11개소(5.9%), 용인시 11개소(5.9%), 김포시 10개소(5.3%), 안산시 10개소(5.3%), 부천시 8개소(4.3%), 파주시 8개소(4.3%), 남양주시 7개소(3.7%), 화성시 7개소(3.7%), 군포시 6개소(3.2%), 이천시 5개소(2.7%), 의정부시

5개소(2.7%), 의왕시 5개소(2.7%), 하남시 5개소(2.7%), 평택시 4개소(2.1%), 가평군 3개소(1.6%), 구리시 3개소(1.6%), 광명시 3개소(1.6%), 광주시 3개소(1.6%), 여주시 3개소(1.6%), 고양시 3개소(1.6%), 안양시 3개소(1.6%), 과천시 2개소(1.1%), 양주시 2개소(1.1%), 연천군 1개소(0.5%), 동두천시 1개소(0.5%), 안성시 1개소(0.5%), 양평군 1개소(0.5%), 포천시 1개소(0.5%) 순임.



〈그림 4-3〉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

2) 지역규모별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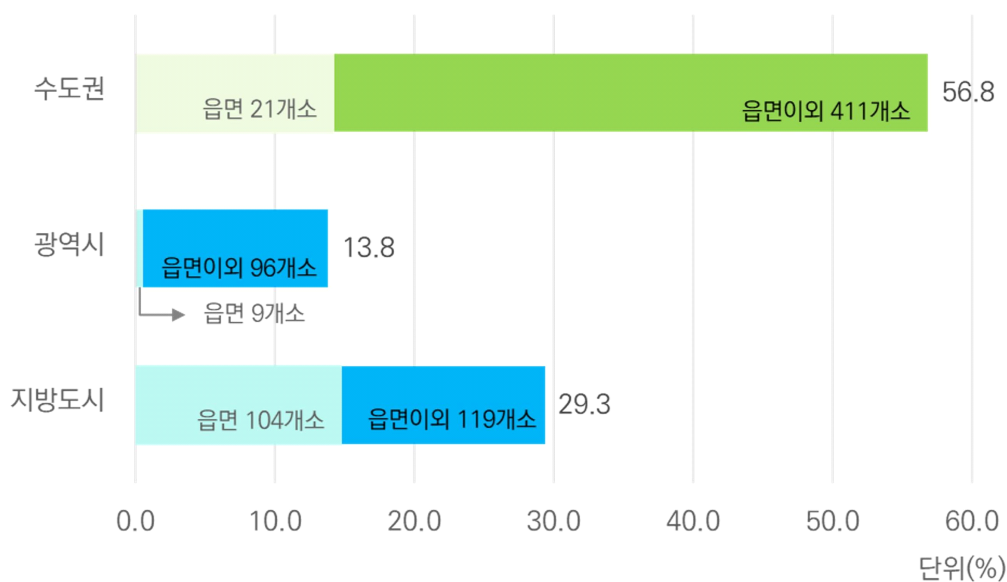
① 지역규모¹⁴⁾를 수도권, 5대 광역시, 지방도시로 구분한 설치현황

○ 수도권이 432개소(56.8%)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도시 105개소

14)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5대 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도시 :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28.3%), 5대 광역시 105개소(13.8%)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 수도권의 총 432개소 중 읍면에 설치된 센터는 21개소이고, 5대 광역시 총 105개 중 읍면에 설치된 센터는 9개소이며, 지방도시는 총 223개소 중 읍면에 10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그림 4-4〉 지역규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2. 공간 특성

1) 센터 전체 면적 특성

① 평균 면적

-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평균 130.0㎡로 최소 66.0㎡에서 최대 1,926.0㎡로 나타남.

〈표 4-1〉 센터 전체 평균 면적 (단위: ㎡)

	센터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면적	760	66.0	1926.0	130.0	113.0

② 1인당 평균 전용면적(정원기준)

- 센터의 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을 산출하면, 5.1㎡임. 현재 1인당 3.3㎡ 기준을 상회하여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표 4-2〉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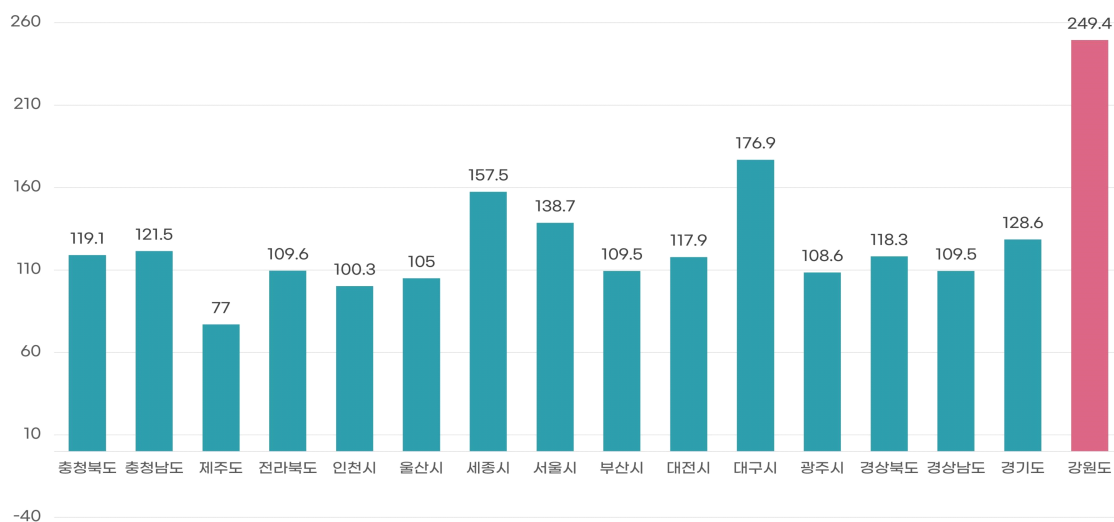
	센터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인당 면적	760	0.9	25.3	5.1	2.0

③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 지역별로 평균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249.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구시 176.9㎡, 세종시 158.7㎡, 서울시 138.7㎡, 경기도가 128.6㎡, 충청남도 121.5㎡, 충청북도 119.1㎡, 경상북도 118.3㎡, 대전시 117.9㎡, 전라북도, 109.6㎡, 경상남도 109.5㎡, 부산시 109.5㎡, 전라남도 107.1㎡, 울산시 105.0㎡, 인천시 100.3㎡, 제주시 7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

지역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	31	249.4	387.2
경기도	188	128.6	52.9
경상남도	22	109.5	34.3
경상북도	41	118.3	50.5
광주시	18	108.6	27.4
대구시	4	176.9	112.7
대전시	13	117.9	33.1
부산시	46	109.5	40.0
서울시	222	138.7	124.6
세종시	6	157.5	39.5
울산시	24	105.0	35.4
인천시	22	100.3	31.8
전라남도	24	107.1	32.1
전라북도	40	109.6	37.6
제주도	2	77.0	8.5
충청남도	31	121.5	77.1
충청북도	26	119.1	51.9
합계	760	130.0	113.0



〈그림 4-5〉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④ 지역별 1인당 평균 면적¹⁵⁾

- 지역별 1인당 평균 면적은 강원도가 7.3m²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와 세종시가 각각 6.8m², 충청북도가 5.7m², 울산시와 경상남도가 5.4m², 경상북도, 부산시가 5.2m², 서울시가 각각 5.1m², 전라북도가 5.0m², 광주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4.8m², 경기도 4.7m², 대전시 4.5m², 전라남도 4.3m², 인천시가 4.2m², 제주도가 3.9m² 순으로 나타났음.

〈표 4-4〉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지역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	31	7.3	4.7
경기도	188	4.7	1.6
경상남도	22	5.4	1.4
경상북도	41	5.1	1.9
광주시	18	4.8	0.9
대구시	4	6.8	2.3
대전시	13	4.5	0.9
부산시	46	5.2	1.9
서울시	222	5.1	1.9
세종시	6	6.8	1.8
울산시	24	5.4	2.2
인천시	22	4.2	1.0

15) 1인당 평균 면적은 정원 기준으로 산출함.

지역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	24	4.3	1.1
전라북도	40	5.0	1.6
제주도	2	3.9	0.4
충청남도	31	4.8	1.4
충청북도	26	5.7	2.2
합계	760	5.1	2.0

⑤ 지역규모별 평균 전용면적

- 지역규모별로 평균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지방도시가 134.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132.3㎡, 5대 광역시가 111.9㎡ 순으로 나타남.

〈표 4-5〉 지역규모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

지역규모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	432	132.3	96.4
5대 광역시	105	111.9	42.0
지방도시	223	134.1	156.8
합계	760	130.0	113.0

⑥ 지역규모별 1인당 평균 면적

- 지역규모별로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도시가 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대광역시가 5.2㎡, 수도권이 4.9㎡ 순으로 나타남. 지방도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6〉 지역규모별 1인당 평균 면적

지역규모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	432	4.9	1.8
5대 광역시	105	5.2	1.8
지방도시	223	5.4	2.5
합계	760	5.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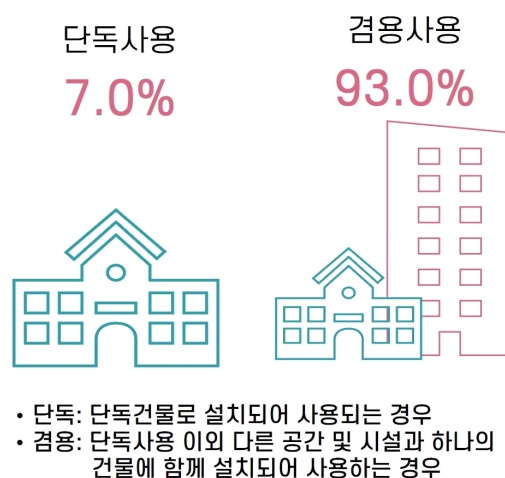
2) 공간사용 방법

① 단독사용 및 겸용사용 현황¹⁶⁾

- 겸용사용은 93.0%로, 단독 사용은 7.0%로 대부분 센터가 다른 공간 및 시설과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

	센터 수	비율(%)
단독사용	53	7.0
겸용사용	707	93.0
합계	760	100.0



〈그림 4-6〉 공간사용 방법

② 공간사용 방법별 평균 전용면적

- 공간사용 방법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은 단독사용이 144.6㎡로 겸용사용 128.9㎡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8〉 공간사용 방법별 면적 특성 (단위: ㎡)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단독사용	53	144.6	78.7
겸용사용	707	128.9	115.1

16) 단독: 단독건물로 설치되어 사용하는 경우

겸용: 단독 사용 이외 다른 공간 및 시설과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어 사용하는 경우

③ 공간사용 방법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 공간사용 방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단독사용이 5.6㎡로 겸용사용 5.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9〉 공간사용방법별 1인당 평균 면적 (단위: ㎡)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단독사용	53	5.6	2.0
겸용사용	707	5.1	2.0

④ 겸용사용 센터의 복합화된 시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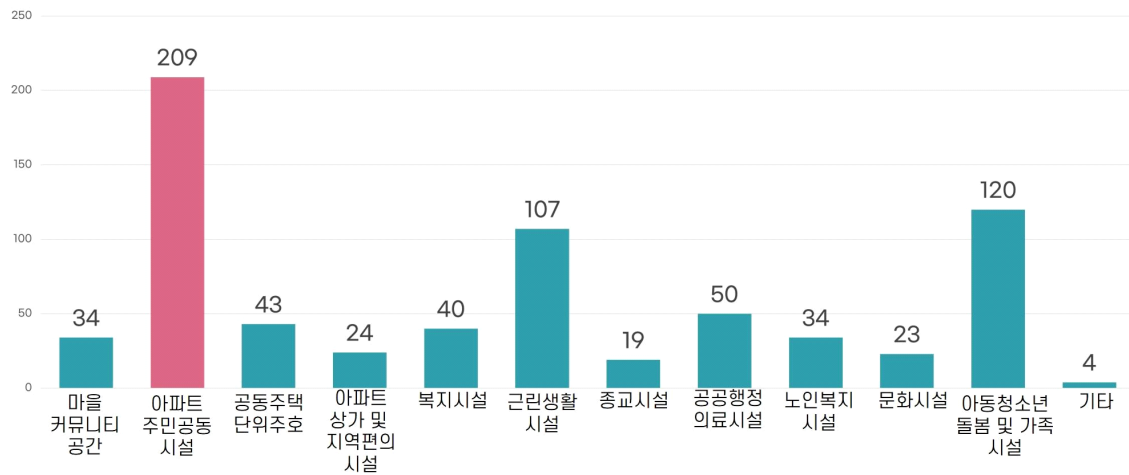
- 대부분의 센터가 겸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겸용사용 센터의 경우 어떤 시설과 복합화¹⁷⁾되어 센터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겸용사용 센터의 경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유형이 209개소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17.0%, 근린생활시설이 15.1%, 공공행정의료시설이 7.1%,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단위주호가 6.1%, 복지시설 5.7%, 노인복지시설과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각각 4.8%,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3.4%, 문화시설 3.3%, 종교시설 2.7%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센터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유형임.

17)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부분 하나의 건물에 다른 시설 및 공간과 복합화되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어떤 시설과 복합화되어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네이버지도 데이터와 현황데이터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였고, 네이버지도 정보와 로드뷰를 통해 어떤 용도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시설로 유형화함.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음.

시설 유형	내용
마을커뮤니티 공간	마을카페,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생활SOC 등 주민커뮤니티공간 내 설치된 유형
아파트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설치된 유형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설치된 유형(예: 101동 101호)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내 설치된 유형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회관,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시설 내 설치된 유형
근린생활시설	상가, 오피스 등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된 유형(1종, 2종 포함)
종교시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내 설치된 유형
공공행정의료시설	주민자치센터,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 공공행정의료시설 내 설치된 유형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내 설치된 유형
문화시설	문화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내 설치된 유형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센터,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돌봄 및 가족시설 내 설치된 유형
기타	주차장, 농업지원시설, 청년시설, 교육시설 등

〈표 4-10〉 겸용사용 센터의 복합화 시설 종류 (단위: 개(%))

복합화 시설 종류	센터 수	비율(%)
마을커뮤니티 공간	34	4.8
아파트주민공동시설	209	29.6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43	6.1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24	3.4
복지시설	40	5.7
근린생활시설	107	15.1
종교시설	19	2.7
공공행정의료시설	50	7.1
노인복지시설	34	4.8
문화시설	23	3.3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120	17.0
기타	4	0.6
합계	7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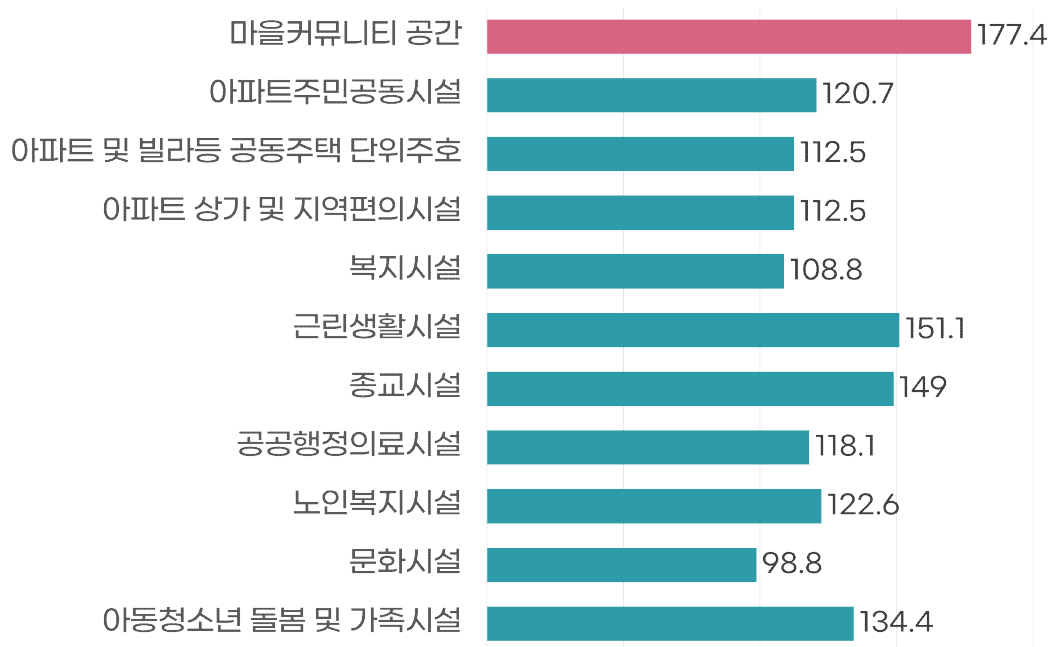
〈그림 4-7〉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 (단위: 개)

⑤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면적 특성

-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을 살펴보면,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설치된 유형이 평균 177.4㎡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이 151.1㎡, 종교시설이 149.0㎡,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134.4㎡, 노인복지시설이 122.6㎡,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120.7㎡, 공공행정의료시설 118.1㎡,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와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이 각각 112.5㎡, 복지시설 108.8㎡, 문화시설이 98.8㎡ 순으로 나타남.

〈표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복합화 시설 종류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마을커뮤니티 공간	34	177.4	311.4
아파트주민공동시설	209	120.7	53.3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43	112.5	100.7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24	112.5	36.5
복지시설	40	108.8	46.9
근린생활시설	107	151.1	163.4
종교시설	19	149.0	67.1
공공행정의료시설	50	118.1	41.2
노인복지시설	34	122.6	57.9
문화시설	23	98.8	40.2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120	134.4	117.9

〈그림 4-8〉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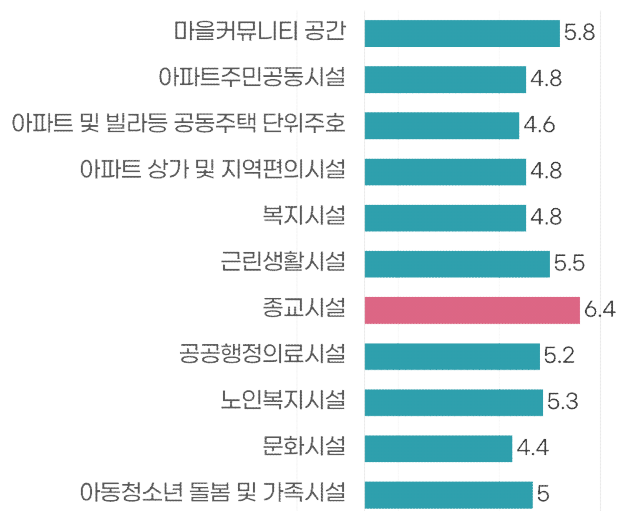
⑥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면적

-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이 6.4m²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유형이 5.8m², 근린생활시설이 5.5m², 노인복지시설이 5.3m², 공공행정의료시설이 5.2m²,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5.0m²,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복지시설이 각각 4.8m², 공동주택 단위주호가 4.6m², 문화시설이 4.4m² 순으로 나타남.

○ 모든 겸용사용 복합화 유형에서 1인당 면적은 3.3㎡를 상회하여 설치함.

〈표 4-12〉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복합화 시설 종류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마을커뮤니티 공간	34	5.8	3.7
아파트주민공동시설	209	4.8	1.7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43	4.6	2.4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24	4.8	1.4
복지시설	40	4.8	1.2
근린생활시설	107	5.5	1.7
종교시설	19	6.4	3.6
공공행정의료시설	50	5.2	1.8
노인복지시설	34	5.3	1.8
문화시설	23	4.4	1.1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120	5.0	2.1
전체	703	5.0	2.0



〈그림 4-9〉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종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3) 층수

① 센터 사용 층수

○ 센터에서 사용하는 층수의 유형은 1개층 사용 유형이 9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층 사용 유형이 7.4%, 3개층 이상 사용유형이 1.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센터는 1개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전체 사용 층수 (단위: 개(%))

	센터 수	비율(%)
1개층 사용 유형	690	90.8
2개층 사용 유형	56	7.4
3개층 이상 사용 유형	14	1.8
합계	760	100.0

② 실 사용 층수

- 실제 센터의 층수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 사용층부터 다섯 번째 사용층까지 각 사용 층을 지하층, 1층, 2층, 3층 이상의 층수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사용층수는 대부분 1층을 사용하는 센터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층 30.4%, 3층 이상 13.8%, 지하층 6.3% 순으로 나타남. 첫 번째 사용층수에는 지하층을 사용하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두 번째 사용층수는 2층이 65.7%, 3층 이상이 20.0%, 1층이 14.3%로 나타남. 세 번째 사용층수는 3층 이상이 78.6%, 2층이 21.4%, 네 번째 사용층수는 4층이 66.7%, 5층이 33.3%이며, 5번째 사용층수는 6층이 100.0%로 나타남.

〈표 4-14〉 실제 사용층 수 (단위: 개(%))

실제 사용층 수		센터 수	비율(%)
첫 번째 사용층 수	지하층	48	6.3
	1층	376	49.5
	2층	231	30.4
	3층이상	105	13.8
	합계	760	100.0
두 번째 사용층 수	1층	10	14.3
	2층	46	65.7
	3층이상	14	20.0
	합계	70	100.0
세 번째 사용층 수	2층	3	21.4
	3층이상	11	78.6
	합계	14	100.0
네 번째 사용층 수	4층	2	66.7
	5층	1	33.3
	합계	3	100.0

실제 사용층 수		센터 수	비율(%)
다섯 번째 사용층 수	6층	1	100.0
	합계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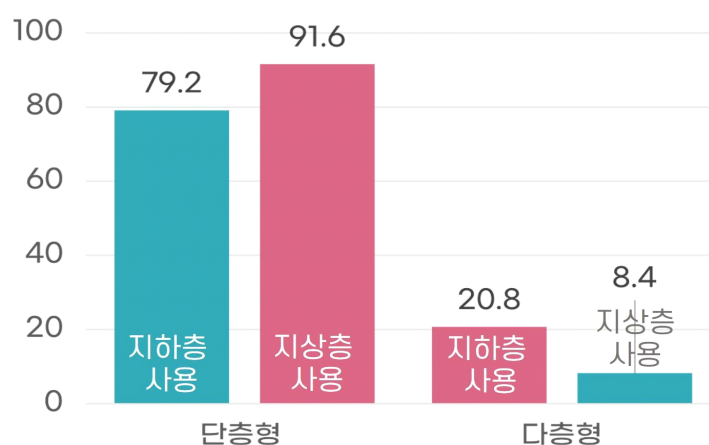
③ 전체 사용층 수 특성

- 전체 사용층 수를 단층형과 다층형으로 구분하여 센터의 위치적 특성을 분석함. 실제 사용층의 위치적 특성은 첫 번째 사용층을 기준으로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구분하여 전체 사용층 수 특성에 따른 실제 사용층의 위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함. 전체 사용층 수 특성에 따른 실제 사용층의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층형의 경우에는 지상층을 사용하는 경우(91.6%)가 지하층을 사용하는 경우(79.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층형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사용하는 경우(20.8%)가 지상층을 사용하는 경우(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층형의 경우 지하공간을 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5〉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단위: 개(%))

		사용층 수 특성						χ^2
		지하		지상		합계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전체 사용층수	단층형	38	79.2	652	91.6	690	90.8	8.28**
	다층형	10	20.8	60	8.4	70	9.2	
	합계	48	100.0	712	100.0	760	100.0	

** $p < .001$



〈그림 4-10〉 전체 사용층 수 유형별 지상, 지하 사용 비율 (단위: %)

○ ④ 전체 사용 층수 특성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전체 사용 층수 특성을 1개 층만 사용하는 경우 단층형, 2개 층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다층형으로 구분하여, 평균 전용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층형의 평균 전용면적이 203.6㎡로 단층형 122.6㎡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전체 층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

전체 층수 유형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단층형	690	122.6	90.7
다층형	70	203.6	228.3

⑤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 전체 사용 층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살펴본 결과, 다층형의 평균 전용면적이 6.0㎡로 단층형 5.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사용층 수 유형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단층형	690	5.0	1.9
다층형	70	6.0	2.8

⑥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사용층 위치를 지하형과 지상형으로 구분하여 평균 전용면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하형이 평균 152.8㎡로 지상형 128.5㎡보다 다소 크게 나타남.

〈표 4-18〉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지하형	48	152.8	215.0
지상형	712	128.5	102.6

⑦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실제 사용층 위치를 지하형과 지상형으로 구분하여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상형이 5.1㎡로 지하형 4.9㎡보다 다소 크게 나타남. 실제 사용층 위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은 지하형이 컸지만 1인당 평균 전용면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면 지상형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사용층 수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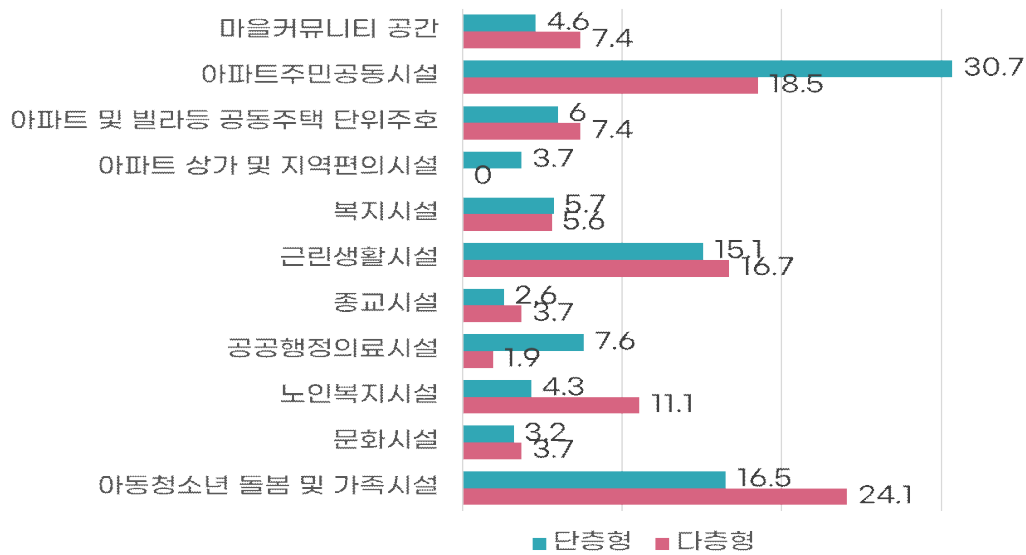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지하형	48	4.9	1.7
지상형	712	5.1	2.0

⑧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 겸용사용 복합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공행정의료시설 등은 단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마을커뮤니티 공간, 공동주택단위주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은 다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4-20〉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단위: 개(%))

복합화 시설 종류	단층형		다층형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마을커뮤니티 공간	30	4.6	4	7.4	34	4.8
아파트주민공동시설	199	30.7	10	18.5	209	29.7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39	6.0	4	7.4	43	6.1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24	3.7	0	0.0	24	3.4
복지시설	37	5.7	3	5.6	40	5.7
근린생활시설	98	15.1	9	16.7	107	15.2
종교시설	17	2.6	2	3.7	19	2.7
공공행정의료시설	49	7.6	1	1.9	50	7.1
노인복지시설	28	4.3	6	11.1	34	4.8
문화시설	21	3.2	2	3.7	23	3.3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107	16.5	13	24.1	120	17.1
전체	649	100.0	54	100.0	7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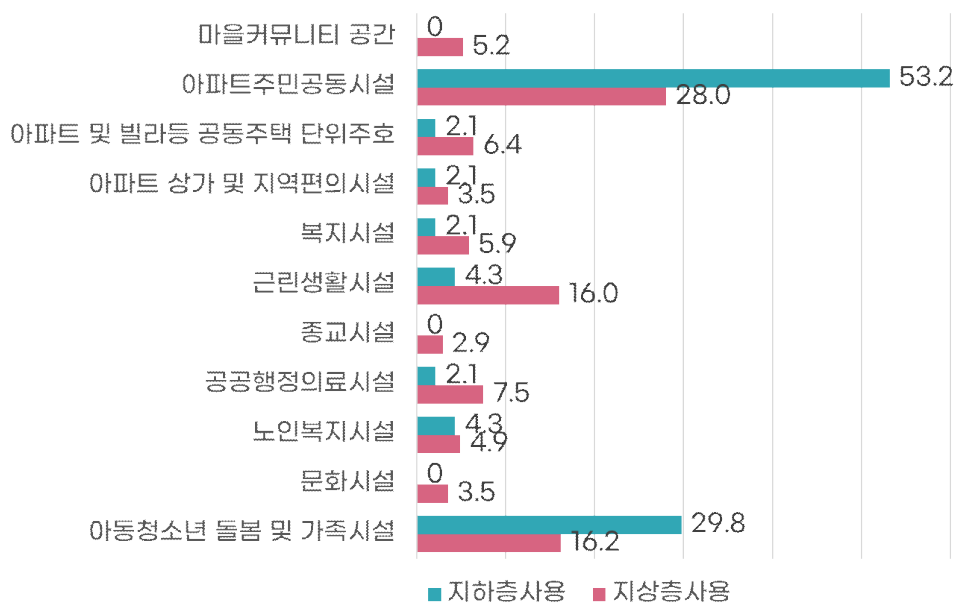
〈그림 4-1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단위: %)

⑨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유형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 겸용사용 복합시설 유형에 따른 실제 사용층 위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복합화 유형 센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층에 설치된 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1〉 겸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복합화 시설 종류	지하		지상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마을커뮤니티 공간	0	0.0	34	5.2	34	4.8
아파트주민공동시설	25	53.2	184	28.0	209	29.7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 단위주호	1	2.1	42	6.4	43	6.1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1	2.1	23	3.5	24	3.4
복지시설	1	2.1	39	5.9	40	5.7
근린생활시설	2	4.3	105	16.0	107	15.2
종교시설	0	0.0	19	2.9	19	2.7
공공행정의료시설	1	2.1	49	7.5	50	7.1
노인복지시설	2	4.3	32	4.9	34	4.8
문화시설	0	0.0	23	3.5	23	3.3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	14	29.8	106	16.2	120	17.1
전체	47	100.0	656	100.0	703	100.0



〈그림 4-12〉 검용사용 복합화 시설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

4) 공간구성 특성

① 전체 활동실 수

- 전체 활동실 수는 평균 3.1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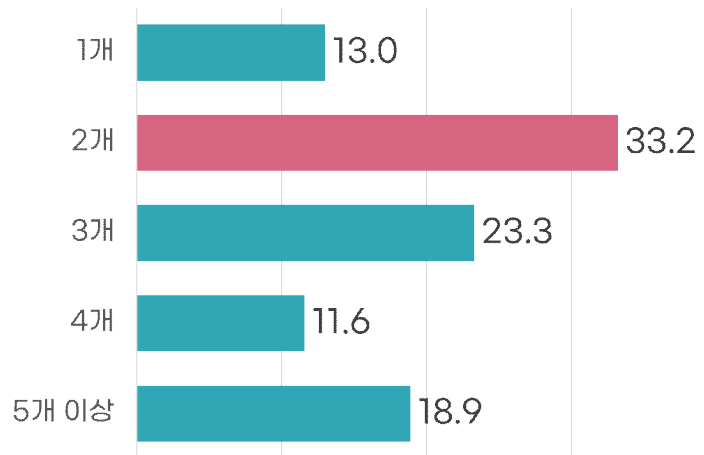
〈표 4-22〉 전체 활동실 수 (단위: 개)

	센터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활동실 수	760	1	15	3.1	1.8

-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는 2개가 33.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개가 23.3%, 5개 이상이 18.9%, 1개가 13.0%, 4개가 11.6%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 센터의 전체 활동실 수는 2개와 3개가 많음.

〈표 4-23〉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 (단위: 개(%))

	센터 수	비율(%)
1개	99	13.0
2개	252	33.2
3개	177	23.3
4개	88	11.6
5개 이상	144	18.9
합계	760	100.0



〈그림 4-13〉 전체 활동실 개수(단위: %)

②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5개 이상의 활동실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이 179.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개가 143.5㎡, 2개가 119.6㎡, 3개가 113.1㎡, 1개가 102.9㎡ 순으로 나타남. 5개 이상 활동실의 평균 전용면적이 1개와 3개 활동실의 평균 전용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4-24〉 전체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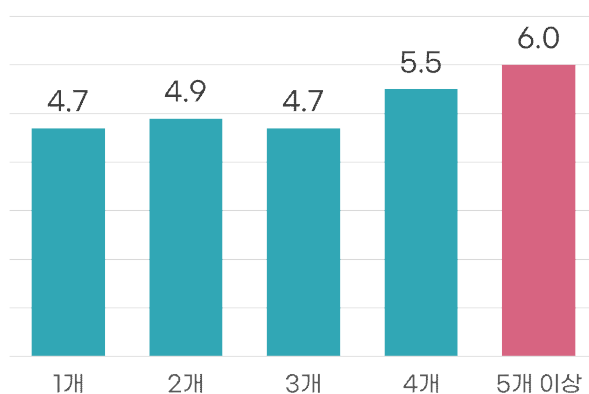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99	102.9	35.8
2개	252	119.6	125.2
3개	177	113.1	39.2
4개	88	143.5	86.0
5개 이상	144	179.4	171.3
합계	760	130.0	113.0

③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5개 이상의 활동실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이 6.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개가 5.5㎡, 2개가 4.9㎡, 1개와 3개가 각각 4.7㎡ 순으로 나타남.
- 4개와 5개 이상의 활동실이 설치된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이 1개, 2개, 3개의 활동실이 설치된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99	4.7	0.2
2개	252	4.9	0.1
3개	177	4.7	0.1
4개	88	5.5	0.2
5개 이상	144	6.0	0.2
합계	760	5.1	0.1

〈그림 4-14〉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④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특성

-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활동실이 1개, 2개가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단층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체 활동실이 3개, 4개, 5개 이상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다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4-26〉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단층형		다층형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95	13.8	4	5.7	99	13.0
2개	243	35.2	9	12.9	252	33.2
3개	160	23.2	17	24.3	177	23.3
4개	75	10.9	13	18.6	88	11.6
5개 이상	117	17.0	27	38.6	144	18.9
합계	690	100.0	70	100.0	760	100.0

⑤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활동실이 1개, 2개가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단층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체 활동실이 3개, 4개, 5개 이상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다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전체 활동실이 1개, 4개, 5개 이상 설치된 센터는 지상형이 많고, 2개가 설치된 센터는 지하 위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27〉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단위: 개(%))

	지하		지상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6	12.5	93	13.1	99	13.0
2개	21	43.8	231	32.4	252	3.2
3개	11	22.9	166	23.3	177	23.3
4개	2	4.2	86	12.0	88	11.6
5개 이상	8	16.7	136	19.1	144	18.9
합계	48	100.0	712	100.0	760	100.0

⑥ 전용 활동실¹⁸⁾ 평균 설치 개수

- 전용 활동실의 평균 설치 개수는 평균 2.2개임.

〈표 4-28〉 전용 활동실 평균 설치 개수 (단위: 개)

	센터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용 활동실 수	759	1	11	2.2	1.43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을 살펴보면, 1개가 42.3%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2개가 27.5% 3개가 15.8%, 4개가 7.6%, 5개 이상이 6.7% 순으로 나타남. 60% 이상의 센터가 1개 또는 2개의 전용 활동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 전용 활동실은 다함께돌봄센터만의 활동실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 4-29〉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단위: 개)

	센터 수	비율(%)
1개	321	42.3
2개	209	27.5
3개	120	15.8
4개	58	7.6
5개 이상	51	6.7
합계	759	100.0

⑦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용면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용 활동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센터가 평균 전용면적이 2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개가 157.0㎡, 3개가 137.5㎡, 2개가 131.8㎡, 1개가 105.4㎡ 순으로 나타남.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가 클수록 전용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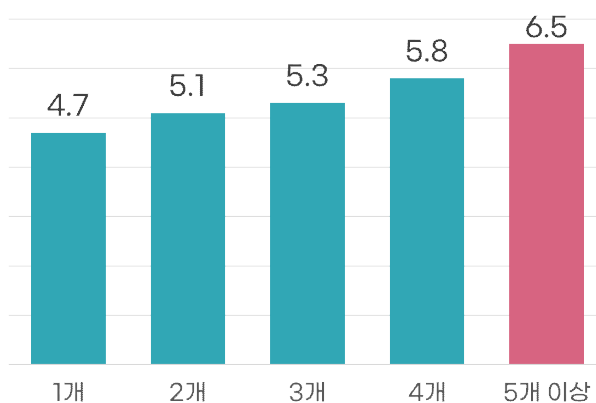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321	105.4	36.1
2개	209	131.8	137.5
3개	120	137.5	63.9
4개	58	157.0	101.7
5개 이상	51	231.3	264.3
합계	759	130.1	113.0

⑧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이상 설치된 센터가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이 6.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개가 5.8㎡, 3개가 5.3㎡, 2개가 5.1㎡, 1개가 4.7㎡ 순으로 나타남.
- 전용 활동실이 1개만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도 1인당 면적 기준이 3.3㎡를 상회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 전용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321	4.7	1.5
2개	209	5.1	2.2
3개	120	5.3	1.7
4개	58	5.8	2.5
5개 이상	51	6.5	3.3
합계	759	5.1	2.0



〈그림 4-15〉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⑨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 층수 유형 특성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 층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1개인 경우는 단층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이상인 경우는 다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2〉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단위: 개(%))

	단층형		다층형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305	44.3	16	22.9	321	42.3
2개	193	28.0	16	22.9	209	27.5
3개	105	15.2	15	21.4	120	15.8
4개	48	7.0	10	14.3	58	7.6
5개 이상	38	5.5	13	18.6	51	6.7
합계	689	100.0	70	100.0	759	100.0

⑩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 전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위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1개, 2개, 5개 이상인 경우는 지하층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3개와 4개인 경우에는 지상층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3〉 전체 활동실 수에 따른 지하, 지상 사용 층수 유형 (단위: 개(%))

	지하		지상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21	43.8	300	42.2	321	42.3
2개	16	33.3	193	27.1	209	27.5
3개	3	6.3	117	16.5	120	15.8
4개	4	8.3	54	7.6	58	7.6
5개 이상	4	8.3	47	6.6	51	6.7
합계	48	100.0	711	100.0	759	100.0

⑪ 공용 활동실¹⁹⁾ 평균 개수

- 공용 활동실은 평균 1.5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표 4-34〉 공용 활동실 평균 개수 (단위: 개)

	공간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공용 활동실 수	489	1	10	1.5	1.0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을 살펴보면, 1개의 공용실이 설치된 경우가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개가 17.2%, 3개가 5.9%, 4개 이상이 5.5% 순으로 나타남.

〈표 4-35〉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 특성 (단위: 개)

	공간 수	비율(%)
1개	349	71.4
2개	84	17.2
3개	29	5.9
4개 이상	27	5.5
합계	489	100.0

19) 공용활동실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른 시설과 함께 활동실을 사용하는 경우

⑫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용 활동실이 4개 이상 설치된 센터가 평균 전용면적이 2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개가 153.7㎡, 2개가 132.7㎡, 1개가 117.9㎡ 순으로 나타남.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가 클수록 전용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6〉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

	공간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349	117.9	57.8
2개	84	132.7	65.6
3개	29	153.7	66.2
4개 이상	27	201.1	221.8

⑬ 공용 활동실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특성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 이상 설치된 센터가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이 6.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개가 5.9㎡, 2개가 5.0㎡, 1개가 4.9㎡ 순으로 나타남.

〈표 4-37〉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공간 수	평균	표준편차
1개	349	4.9	1.6
2개	84	5.0	1.8
3개	29	5.9	2.0
4개 이상	27	6.4	2.9

⑭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 층수 특성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 층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1개와 3개인 경우는 단층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공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2개, 4개 이상인 경우는 다층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8〉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전체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단층형		다층형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325	73.7	24	50.0	349	71.4
2개	68	15.4	16	33.3	84	17.2
3개	27	6.1	2	4.2	29	5.9
4개 이상	21	4.8	6	12.5	27	5.5

⑮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1개는 지하층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용 활동실의 설치 개수가 2개, 3개와 4개 이상에는 지상층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9〉 공용 활동실 설치 개수에 따른 실제 사용층 수 유형 특성 (단위: 개(%))

	지하		지상		전체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1개	24	82.8	325	70.7	349	71.4
2개	5	17.2	79	17.2	84	17.2
3개	0	0.0	29	6.3	29	5.9
4개 이상	0	0.0	27	5.9	27	5.5

⑯ 활동실 이외 공간 종류

-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 종류로는 화장실이 95.3%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공간이 90.5%, 조리공간 72.9%, 기타 4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0〉 활동실 이외 공간 종류 (단위: 개(%))

	있음		없음		합계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사무공간	688	90.5	72	9.5	760	100.0
화장실	724	95.3	36	4.7	760	100.0
조리공간	554	72.9	206	27.1	760	100.0
기타공간	376	49.5	384	50.5	760	100.0

⑰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

-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활동실 이외 공간의 전용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리공간의 전용사용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공간의 전용사용 비율이 83.0%, 기타공간의 전용사용 비율이 66.5%, 화장실의 전용사용 비율이 57.5% 순으로 나타남. 화장실의 전용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1〉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 (단위: 개(%))

	전용		공용		합계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사무공간	571	83.0	117	17.0	688	100.0
화장실	416	57.5	308	42.5	724	100.0
조리공간	463	83.6	91	16.4	554	100.0
기타공간	250	66.5	126	33.5	376	100.0

⑱ 활동실 이외 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 활동실 이외 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타공간이 설치된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활동실 이외 공간이 설치된 센터의 면적이 활동실 이외 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센터의 면적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42〉 활동실 이외 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 (단위: m²)

	있음		없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무공간	131.5	110.3	115.7	136.1
화장실	131.6	115.4	98.4	25.8
조리공간	133.6	115.8	120.6	104.7
기타공간	140.2	120.5	120.0	104.3

3. 운영 특성

1) 이용자 특성

① 평균 정원

- 평균 정원은 25.0명으로 나타남.

〈표 4-43〉 평균 정원 (단위: 명)

	응답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정원	760	12	150	25.0	9.6

② 이용 아동 성별 특성

○ 이용 아동의 성별 특성을 보면 남아가 평균 12.7명, 여아가 13.3명으로 나타남.

〈표 4-44〉 성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남아	760	12.7	37.9
여아	760	13.3	40.2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의 아동 수

③ 이용 아동 학년 특성

○ 이용 아동의 학년 특성을 보면 1학년이 평균 8.1명, 2학년이 7.9명, 3학년이 4.8명, 4학년이 2.8명, 5학년이 1.4명, 6학년이 0.6명으로 나타남. 1학년이 가장 많고 주로 저학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5〉 학년에 따른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1학년	760	8.1	31.7
2학년	760	7.9	34.5
3학년	760	4.8	6.6
4학년	760	2.8	4.5
5학년	760	1.4	2.6
6학년	760	0.6	1.8

④ 평균 돌봄교사 수

○ 센터의 평균 돌봄교사의 수는 2.1명으로 나타남.

〈표 4-46〉 평균 돌봄교사 수 (단위: 명)

	응답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돌봄 교사 수	760	0	10	2.1	1.0

⑤ 돌봄교사 수에 따른 전용면적

- 돌봄교사 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특성은 돌봄교사가 3명이 상인 센터가 평균 162.6㎡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돌봄교사 2명 센터가 118.0㎡, 돌봄교사 1명 센터가 109.3㎡ 순으로 나타남.

〈표 4-47〉 돌봄교사 수에 따른 평균 전용면적 (단위: ㎡)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1명	194	109.3	32.7
2명	328	118.0	45.7
3명 이상	234	162.6	189.7
합계	756	129.6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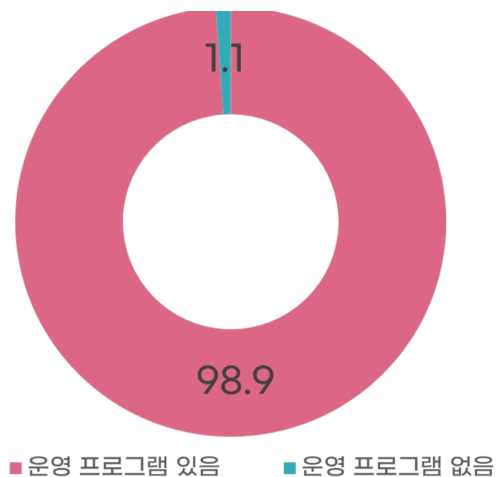
2) 프로그램 특성

①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98.9%로 대부분 센터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4-48〉 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개(%))

	센터 수	비율(%)
운영프로그램 있음	752	98.9
운영프로그램 없음	8	1.1
합계	7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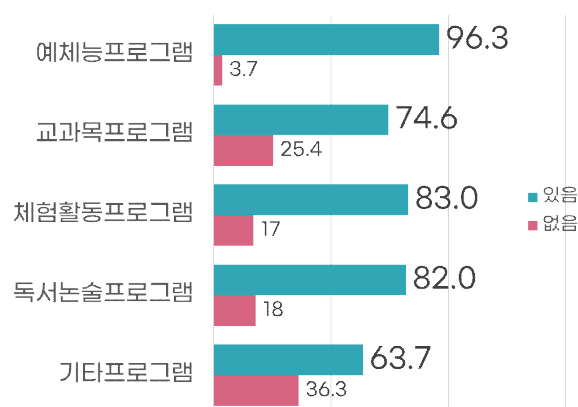
〈그림 4-16〉 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

② 운영 프로그램 종류

- 운영 프로그램은 예체능이 96.3%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체험활동 83.0%, 독서논술 82.0%, 교과목 74.6%, 기타 63.7% 순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49〉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단위: 개(%))

	있음		없음	
	프로그램 수	비율(%)	프로그램 수	비율(%)
예체능	732	96.3	28	3.7
교과목	567	74.6	193	25.4
체험활동	631	83.0	129	17.0
독서논술	623	82.0	137	18.0
기타	484	63.7	276	36.3



〈그림 4-17〉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 (단위: %)

③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

- 예체능 프로그램은 평균 2.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은 2.2개, 기타는 2.0개, 교과목은 1.8개, 독서논술은 1.3개 순으로 나타남.

〈표 4-50〉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 (단위: 개)

	프로그램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체능	732	1	15	2.4	1.3
교과목	567	1	6	1.8	0.9
체험활동	631	1	16	2.2	1.6
독서논술	623	1	24	1.3	1.1
기타	484	1	26	2.0	2.0

제2절 설문조사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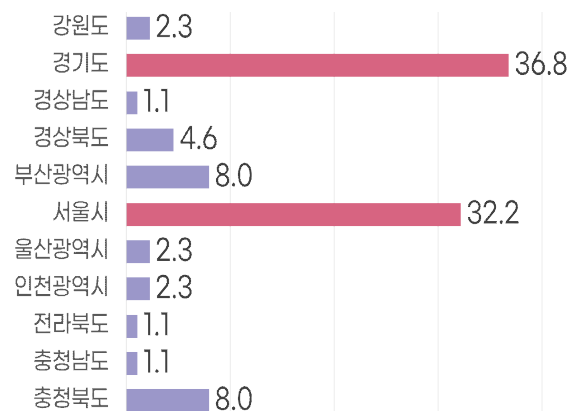
1) 센터 공간 현황

① 지역

- 경기도가 36.8%, 서울 32.2%,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8.0%, 경상북도 4.6%, 강원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각각 2.3%,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각각 1.1% 순으로 응답함.

〈표 4-51〉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단위: 개소(%))

	센터 수	%
강원도	2	2.3
경기도	32	36.8
경상남도	1	1.1
경상북도	4	4.6
부산광역시	7	8.0
서울시	28	32.2
울산광역시	2	2.3
인천광역시	2	2.3
전라북도	1	1.1
충청남도	1	1.1
충청북도	7	8.0
전체	87	100



〈그림 4-18〉 응답한 센터의 지역 현황 (단위: %)

③ 타 시설과 겸용사용 여부

○ 겸용사용 센터가 67.8%, 단독사용 센터가 32.2% 응답함.

〈표 4-52〉 타 시설과 겸용사용 여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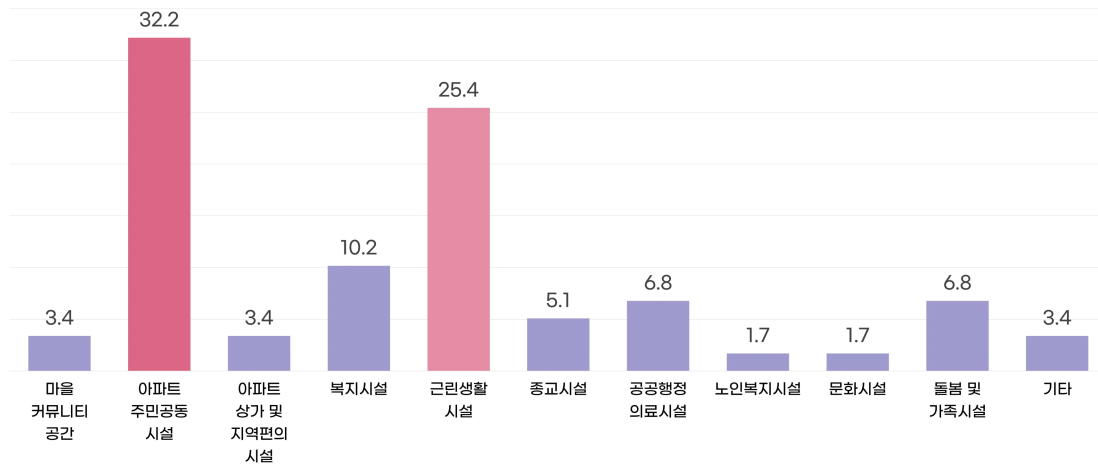
	센터 수	%
단독사용	28	32.2
겸용사용	59	67.8
합계	87	100.0

④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 응답한 센터 중 겸용사용하는 센터가 복합화된 시설로는 아파트주민공동시설이 32.2%, 근린생활시설이 25.4%, 복지시설이 10.2%, 공공행정시설과 돌봄 및 가족시설이 각각 6.8% 순임.

〈표 4-53〉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단위: 개소(%))

	센터 수	%
마을커뮤니티공간	2	3.4
아파트주민공동시설	19	32.2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2	3.4
복지시설	6	10.2
근린생활시설	15	25.4
종교시설	3	5.1
공공행정의료시설	4	6.8
노인복지시설	1	1.7
문화시설	1	1.7
돌봄 및 가족시설	4	6.8
기타	2	3.4
전체	59	100.0



〈그림 4-19〉 겸용사용시 복합화된 시설의 종류 (단위: %)

2) 면적 현황

① 평균 전용면적

- 응답한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127.9㎡로 최소 66㎡에서 최대 283㎡로 조사됨.

〈표 4-54〉 센터 전체 평균 전용면적 (단위: ㎡)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센터 전체 전용면적	87	66.0	283.0	127.9	52.2

② 1인당 평균 전용면적

- 응답한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5.2㎡로 최소 2.5㎡에서 최대 11.8㎡로 조사됨.

〈표 4-55〉 전체 센터의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전용면적	87	2.5	11.8	5.2	1.9

③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 응답한 센터 중 전체 전용면적은 충청남도가 236.0㎡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168.5㎡, 강원도 159.8㎡ 순으로 조사됨.

〈표 4-56〉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	2	159.8	83.4
경기도	32	121.9	43.2
경상남도	1	81.8	-
경상북도	4	102.0	13.9
부산광역시	7	107.1	35.4
서울시	28	131.5	61.6
울산광역시	2	153.1	72.3
인천광역시	2	168.5	0.7
전라북도	1	109.0	-
충청남도	1	236.0	-
충청북도	7	142.2	63.5
전체	87	127.9	52.2

〈그림 4-20〉 지역별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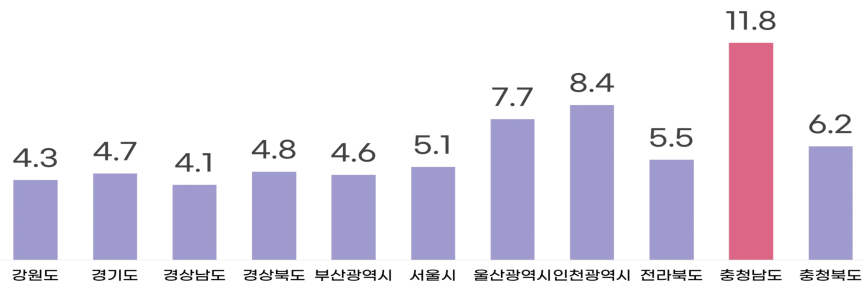
④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 응답한 센터 중 1인당 전용면적은 충청남도가 11.8m²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8.4m², 울산광역시 7.7m² 순으로 조사됨.

〈표 4-57〉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	2	4.3	1.4
경기도	32	4.7	1.5
경상남도	1	4.1	-
경상북도	4	4.8	0.4
부산광역시	7	4.6	1.0
서울시	28	5.1	1.5

	센터 수	평균	표준편차
울산광역시	2	7.7	3.6
인천광역시	2	8.4	0.0
전라북도	1	5.5	-
충청남도	1	11.8	-
충청북도	7	6.2	2.9
전체	87	5.2	1.9



〈그림 4-21〉 지역별 1인당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3) 이용자 현황

① 평균 정원 및 현원

○ 정기돌봄을 기준으로 응답한 센터의 평균 정원은 25.1명이며, 현원은 23.7명으로 조사됨. 현재 정원보다 많은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8〉 평균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아동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원	87	16	49	25.0	6.8
현원	87	8	49	23.7	7.6

② 이용 아동의 성별 특성

○ 남아가 평균 11.7명, 여아가 평균 12.0명으로 조사됨.

〈표 4-59〉 이용 아동 성별 특성 (단위: 명)

	아동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남아	87	3	36	11.7	5.0
여아	87	3	25	12.0	4.9

③ 이용 아동 학년 특성

- 1학년 평균 6.8명, 2학년 평균 7.5명, 3학년 5.3명, 4학년 2.2명, 5학년 1.4명, 6학년 0.5명 순으로 저학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60〉 이용 아동 학년 특성 (단위: 명)

	아동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학년	87	0	23	6.8	4.6
2학년	87	0	26	7.5	4.9
3학년	87	0	15	5.3	3.5
4학년	87	0	13	2.2	2.3
5학년	87	0	11	1.4	2.4
6학년	87	0	6	0.4	1.1

④ 평균 종사자 수

- 응답한 센터의 평균 종사자수는 4.3명임. 센터장은 평균 1명이며, 돌봄교사는 평균 2.1명, 기타 종사자는 평균 1.2명으로 조사됨.

〈표 4-61〉 평균 종사자 수 (단위: 명)

	종사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종사자 평균 (명)	87	2.0	11.0	4.3	1.9
센터장 수 (명)	87	1	1	1.0	0.0
돌봄교사 수 (명)	87	1	4	2.1	0.9
기타 종사자 수 (명)	87	0	9	1.2	1.6

2. 공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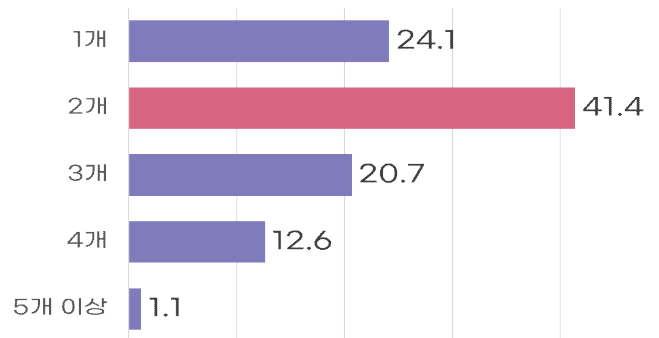
1) 활동실 현황

① 전체 활동실 수

- 응답한 센터의 평균 활동실 수는 2.3개로 조사되었으며, 최소 1개에서 최대 8개로 조사됨. 응답한 센터의 활동실은 2개가 41.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개 24.1%, 3개 20.7%, 4개 12.6%, 5개 이상 1.1% 순으로 조사됨.

〈표 4-62〉 전체 활동실 수 (단위: 개(%))

	공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활동실 수	87	1	8	2.3	1.1



〈그림 4-22〉 전체 활동실 개수 (단위: %)

② 전체 활동실 평균 면적

- 응답한 센터의 전체 활동실 평균 면적은 109.2㎡로 조사되었으며, 최소 11.0㎡에서 최대 243.0㎡로 조사됨.

〈표 4-63〉 전체 활동실 평균 전용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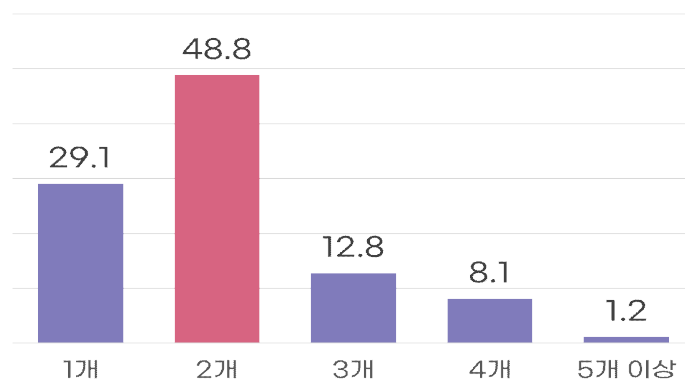
	공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활동실 면적	38	11.0	243.0	109.2	49.2

③ 전용 활동실 수

- 응답한 센터의 전용 활동실 수는 평균 2.1개로 최소 0개에서 최대 8개로 조사됨. 전용 활동실은 2개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 29.1%, 3개 12.8%, 4개 8.1%, 5개 이상 1.2% 순으로 조사됨.

〈표 4-64〉 전용 활동실 수 (단위: 개(%))

	공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용 활동실 수	87	0	8	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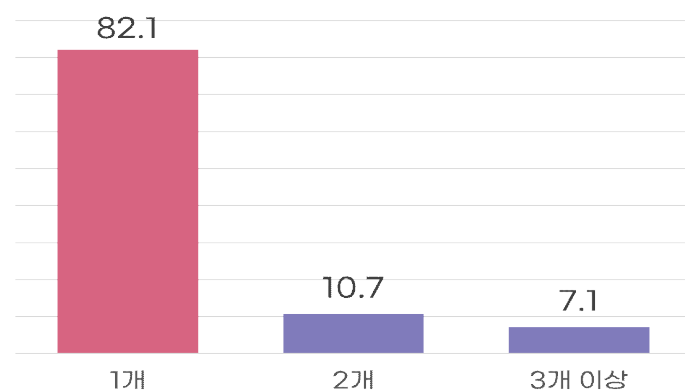
〈그림 4-23〉 전용 활동실 수 (단위: %)

④ 공용 활동실 수

- 응답한 센터의 공용 활동실 수는 평균 0.4개로 최소 0개에서 최대 3개로 조사됨. 공용 활동실은 1개가 8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개 10.7%, 3개 이상 7.1% 순으로 조사됨.

〈표 4-65〉 공용 활동실 수 (단위: 개소(%))

	공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용 활동실 수	87	0	3	0.4	0.7



〈그림 4-24〉 공용 활동실 수 (단위: %)

2) 활동실 공간구성

① 정적·동적 공간구성 특성

- 응답한 센터의 활동실이 정적·동적으로 공간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분되어 있음이 72.4%, 구분되어 있지 않음 27.6%로 대부분의 센터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활동실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6〉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의 공간구성 특성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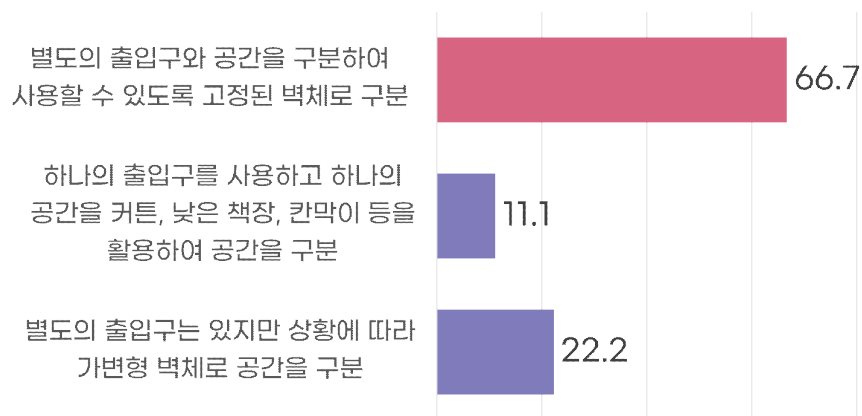
	응답 수	비율(%)	유효비율(%)
구분되어 있음	63	72.4	72.4
구분되어 있지 않음.	24	27.6	27.6
전체	87	100.0	100.0

② 정적·동적 공간구성 방법

- 정적·동적 공간구성 방법으로는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하나의 공간을 커튼·낮은 책장·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이 22.2%, 별도의 출입구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형 벽체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이 11.1% 순으로 조사됨.

〈표 4-67〉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단위: 개(%))

공간구성 방법	응답 수	비율(%)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	42	66.7
별도의 출입구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벽체를 활용하여(가변형 벽체) 공간을 구분	7	11.1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하나의 공간을 커튼, 낮은 책장,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	14	22.2
전체	63	100.0



〈그림 4-25〉 활동실의 정적 및 동적공간 공간구성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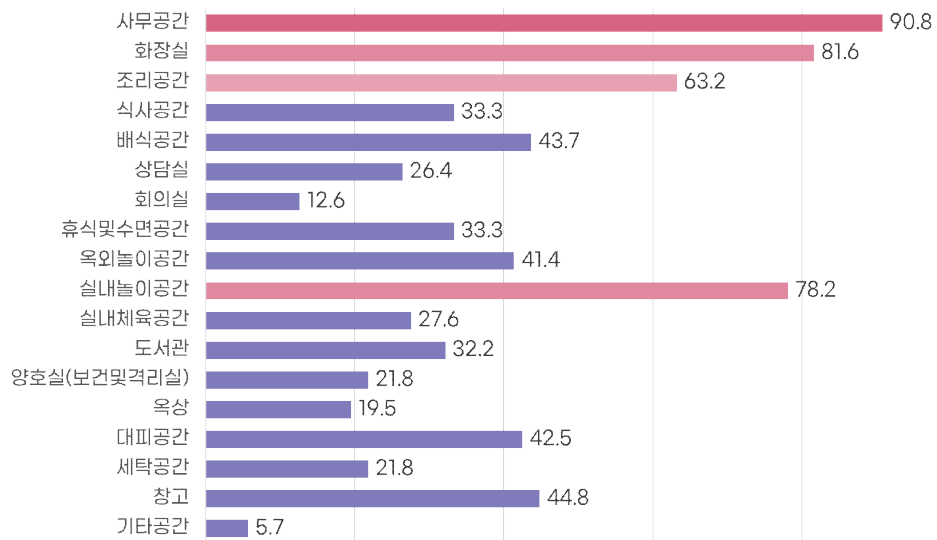
3) 활동실 이외 공간구성 특성

① 활동실 이외 공간의 종류

- 응답한 센터의 활동실 이외 가장 많이 설치된 공간은 90.8%를 차지한 사무공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실 81.6%, 실내놀이공간 78.2%, 조리공간 63.2%, 창고 44.8%, 배식공간 43.7%, 대피공간 42.5%, 옥외놀이공간 41.4%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표 4-68〉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단위: 개(%))

공간종류	공간 수	비율(%)
사무공간	79	90.8
화장실	71	81.6
조리공간	55	63.2
식사공간	29	33.3
배식공간	38	43.7
상담실	23	26.4
회의실	11	12.6
휴식및수면공간	29	33.3
옥외놀이공간	36	41.4
실내놀이공간	68	78.2
실내체육공간	24	27.6
도서관	28	32.2
양호실	19	21.8
욕상	17	19.5
대피공간	37	42.5
세탁공간	19	21.8
창고	39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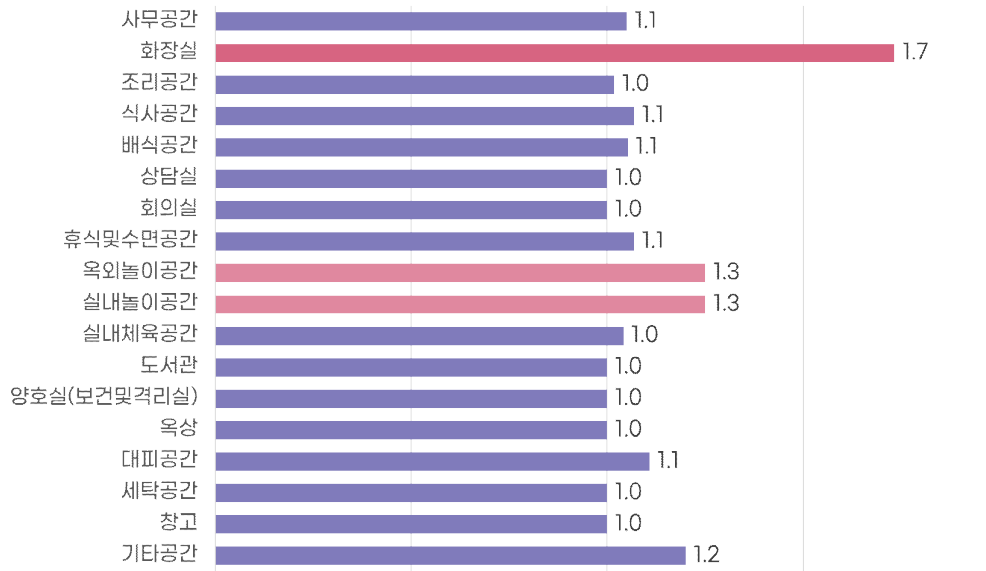
〈그림 4-26〉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의 종류 (단위: %)

② 활동실 이외 공간별 설치 개수

- 응답한 센터에 활동실 이외 공간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공간은 화장실로 1.7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옥외놀이공간과 실내놀이공간 1.3개 순으로 조사됨.

〈표 4-69〉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단위: 개(%))

	공간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무공간	79	1.0	2.0	1.1	0.2
화장실	71	1.0	3.0	1.7	0.7
조리공간	55	1.0	2.0	1.0	0.1
식사공간	29	1.0	2.0	1.1	0.3
배식공간	38	1.0	2.0	1.1	0.2
상담실	23	1.0	1.0	1.0	0.0
회의실	11	1.0	1.0	1.0	0.0
휴식및수면공간	29	1.0	3.0	1.1	0.4
옥외놀이공간	36	1.0	3.0	1.2	0.6
실내놀이공간	68	1.0	3.0	1.3	0.5
실내체육공간	24	1.0	2.0	1.0	0.2
도서관	28	1.0	1.0	1.0	0.0
양호실	19	1.0	1.0	1.0	0.0
옥상	17	1.0	1.0	1.0	0.0
대피공간	37	1.0	3.0	1.1	0.4
세탁공간	19	1.0	1.0	1.0	0.0
창고	39	1.0	1.0	1.0	0.0
기타	5	1.0	2.0	1.2	0.4



〈그림 4-27〉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별 설치 개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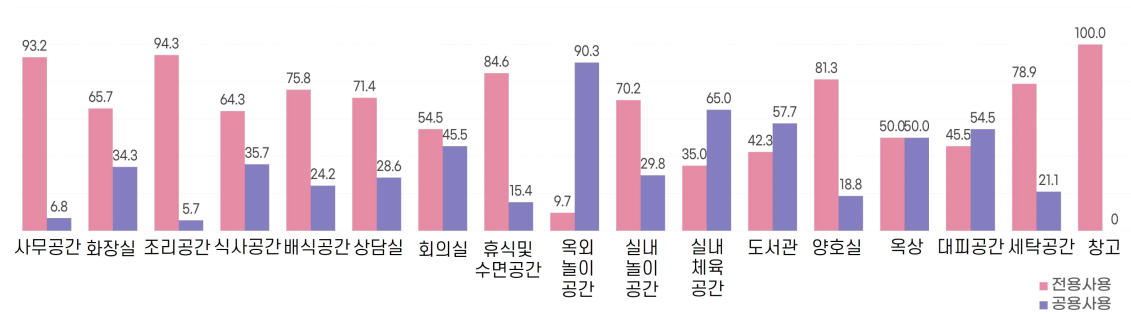
③ 활동실 이외 공간 사용방법

- 활동실 이외 공간의 사용방법에 대해 전용사용과 공용사용 여부를 각 공간별로 조사한 결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식사공간, 배식공간,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실내놀이공간, 양호실, 세탁공간, 창고는 전용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옥외놀이공간, 실내체육공간, 도서관, 대피공간 등은 공용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0〉 활동실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소(%))

공간종류	전용사용		공용사용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사무공간	68	93.2	5	6.8
화장실	46	65.7	24	34.3
조리공간	50	94.3	3	5.7
식사공간	18	64.3	10	35.7
배식공간	25	75.8	8	24.2
상담실	15	71.4	6	28.6
회의실	6	54.5	5	45.5
휴식및수면공간	22	84.6	4	15.4
옥외놀이공간	3	9.7	28	90.3
실내놀이공간	40	70.2	17	29.8
실내체육공간	7	35.0	13	65.0

공간종류	전용사용		공용사용	
	공간 수	비율(%)	공간 수	비율(%)
도서관	11	42.3	15	57.7
양호실	13	81.3	3	18.8
옥상	8	50.0	8	50.0
대피공간	15	45.5	18	54.5
세탁공간	15	78.9	4	21.1
창고	36	10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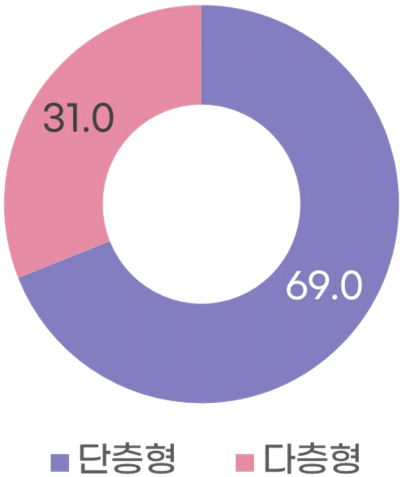


〈그림 4-28〉 활동실의 이외 공간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

4) 사용 층수 특성

① 센터 층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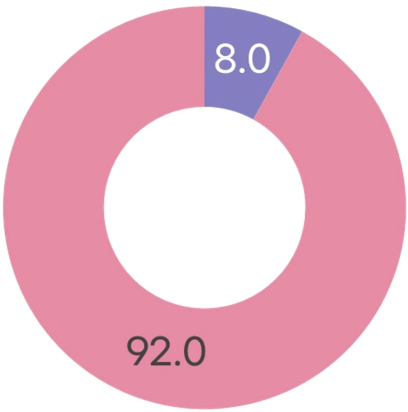
○ 응답한 센터는 단층형이 69.0%로 다층형 31.0%보다 많음.



〈그림 4-29〉 사용 층수 특성 (단위: %)

② 지하층 유무

○ 응답한 센터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 8.0%, 지하층이 없는 경우 92.0%로 대부분의 센터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하층있음 ■ 지하층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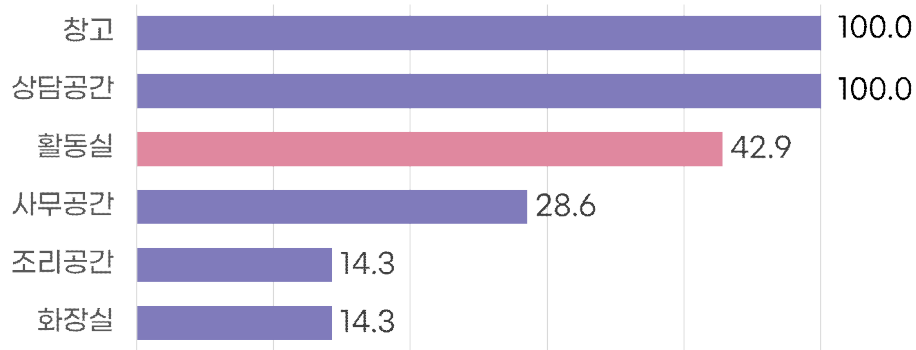
〈그림 4-30〉 지하층 유무 (단위: %)

③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 응답한 센터 중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이 설치된 공간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하층이 있는 모든 센터에서 상담공간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활동실 42.9%, 사무공간 28.6%, 조리공간과 화장실로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14.3% 순으로 나타남.

〈표 4-7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단위: 개(%))

	공간 수	비율(%)
활동실	4	42.9
사무공간	3	28.6
조리공간	1	14.3
상담공간	7	100.0
창고	7	100.0
화장실	1	14.3



〈그림 4-31〉 지하층 사용 공간 유형 (단위: %)

④ 5층 이상 위치한 센터 현황

- 응답한 센터 중 5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는 3곳으로 3.4%였으며, 모두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2〉 5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 현황 및 대피시설 설치 유무 (단위: 개소(%))

	센터 수	%
5층 이상 위치한 센터	3	3.4
대피시설 설치 유무	3	100.0

3. 프로그램 특성

1) 프로그램 운영 특성

① 운영 프로그램 현황

-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및 학습 외 교육(인권, 안전, 경제, 영양 등)이 모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놀이프로그램 98.9%, 미술프로그램 97.7%, 독서논술프로그램 96.6%, 체육프로그램 94.3%, 취미체험프로그램 92.0%, 자치활동 프로그램 90.8% 순임.

〈표 4-73〉 운영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수	비율(%)
음악	78	89.7
미술	85	97.7
체육	82	94.3
교과목 및 학습	78	89.7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수	비율(%)
컴퓨터	47	54.0
취미체험	80	92.0
문화예술체험	78	89.7
독서논술	84	96.6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87	100.0
놀이	86	98.9
심리정서활동	72	82.8
연극, 뮤지컬 등	52	59.8
자치활동	79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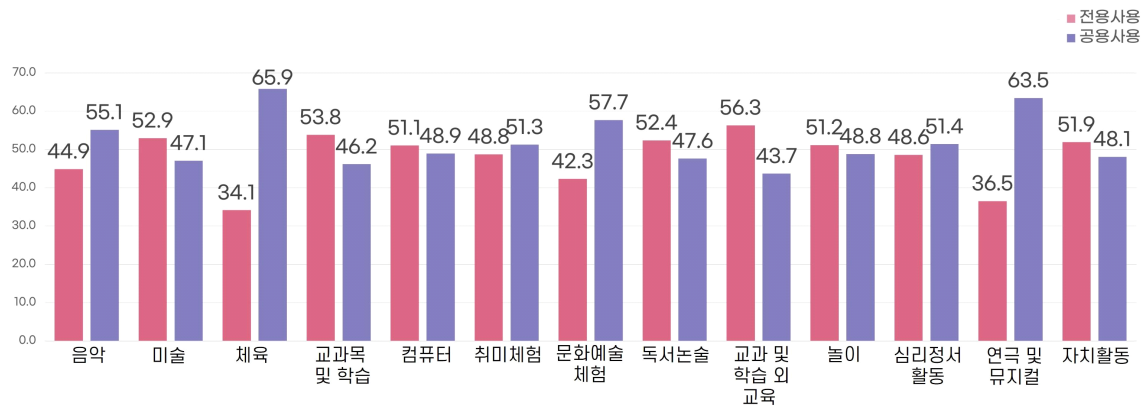
2) 프로그램 공간 사용 특성 및 문제

② 운영 프로그램별 공간 사용 방법

- 미술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습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독서논술 프로그램,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자치활동 프로그램은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높음.
- 음악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취미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심리정서활동 프로그램,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은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

〈표 4-7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사용 방법 (단위: 개(%))

프로그램 종류	전용사용		공용사용	
	프로그램 수	비율(%)	프로그램 수	비율(%)
음악	35	44.9	43	55.1
미술	45	52.9	40	47.1
체육	28	34.1	54	65.9
교과목 및 학습	42	53.8	36	46.2
컴퓨터	24	51.1	23	48.9
취미체험	39	48.8	41	51.3
문화예술체험	33	42.3	45	57.7
독서논술	44	52.4	40	47.6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49	56.3	38	43.7
놀이	44	51.2	42	48.8
심리정서활동	35	48.6	37	51.4
연극, 뮤지컬 등	19	36.5	33	63.5
자치활동	41	51.9	38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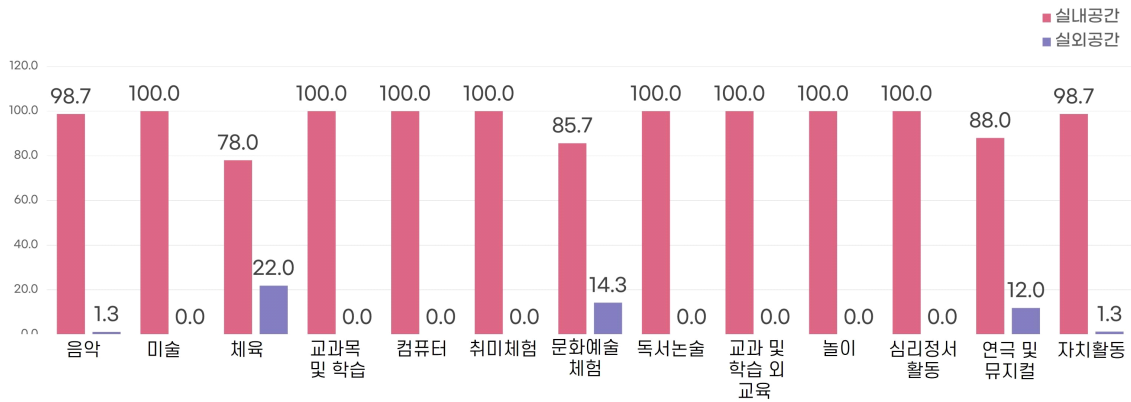
〈그림 4-32〉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단위: %)

③ 운영 프로그램별 실내외 공간 사용 유무

-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은 실내 공간에서 운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육 프로그램, 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 등 신체활동과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실외 공간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나타남.

〈표 4-75〉 프로그램별 실내 및 실외 공간 사용 유무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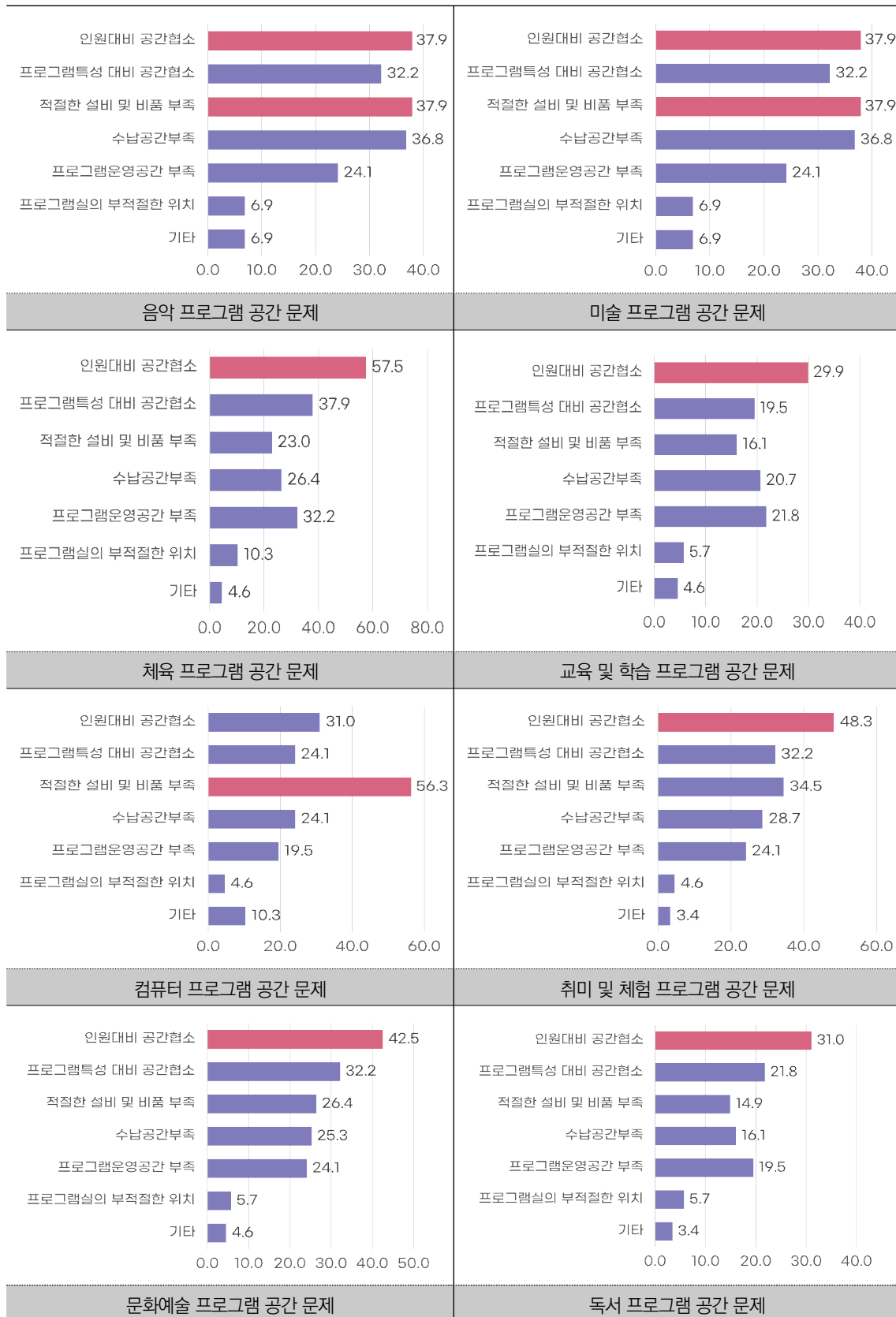
프로그램 종류	실내공간		실외공간	
	프로그램 수	비율(%)	프로그램 수	비율(%)
음악	77	98.7	1	1.3
미술	85	100.0	0	0.0
체육	64	78.0	18	22.0
교과목 및 학습	76	100.0	0	0.0
컴퓨터	45	100.0	0	0.0
취미체험	80	100.0	0	0.0
문화예술체험	66	85.7	11	14.3
독서논술	84	100.0	0	0.0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87	100.0	0	0.0
놀이	86	100.0	0	0.0
심리정서활동	71	100.0	0	0.0
연극, 뮤지컬 등	44	88.0	6	12.0
자치활동	76	98.7	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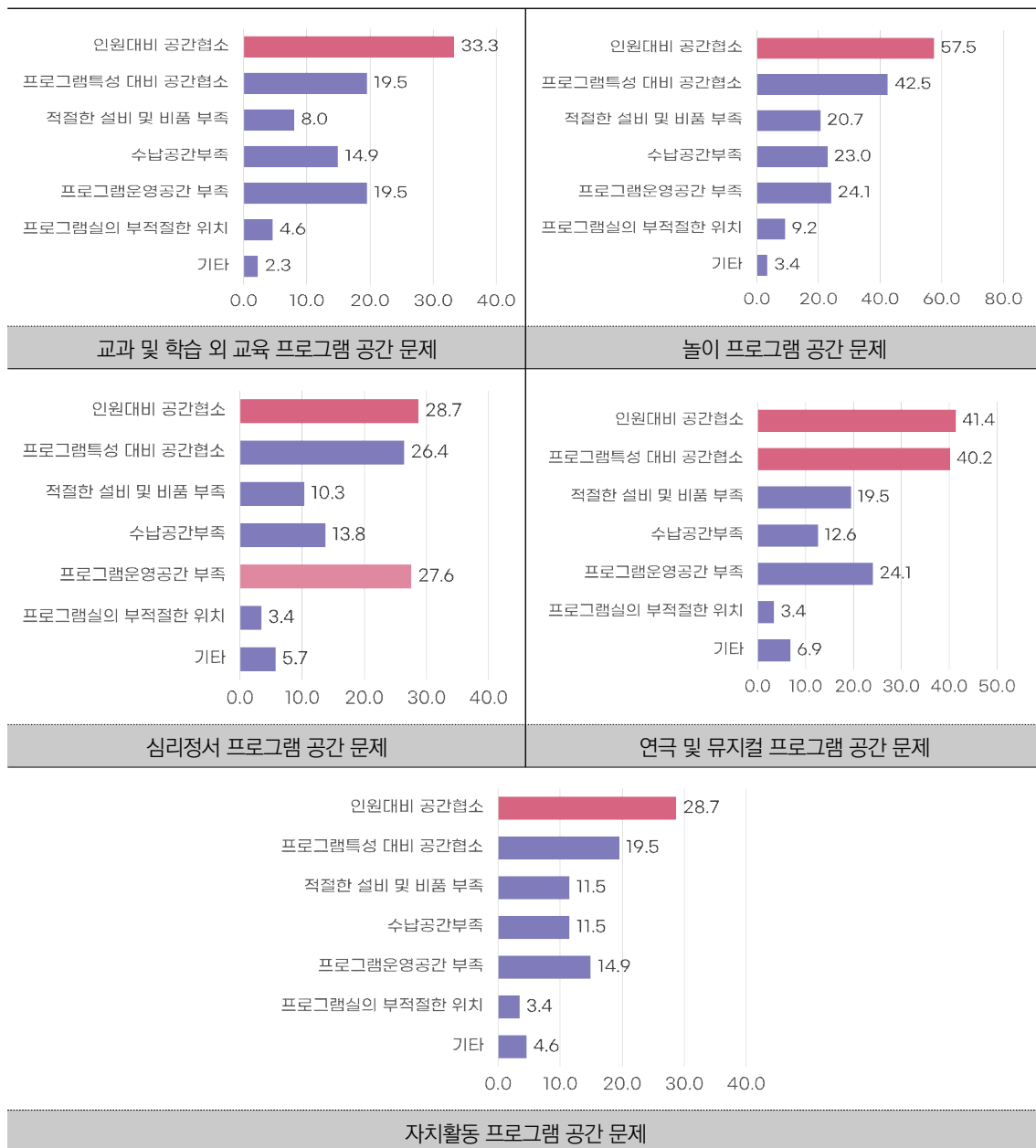


〈그림 4-33〉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사용 방법 (단위: %)

④ 프로그램별 공간 문제

- 음악프로그램의 공간문제로는 인원대비 공간 협소와 적절한 설비 및 비품 부족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술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취미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의 공간문제로는 인원대비 공간 협소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프로그램의 공간문제로는 적절한 설비 및 비품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독서논술프로그램, 교과 및 학습 외 교육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자치활동프로그램의 공간문제로는 인원대비 공간 협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의 공간문제로는 인원대비 공간협소와 프로그램 운영공간의 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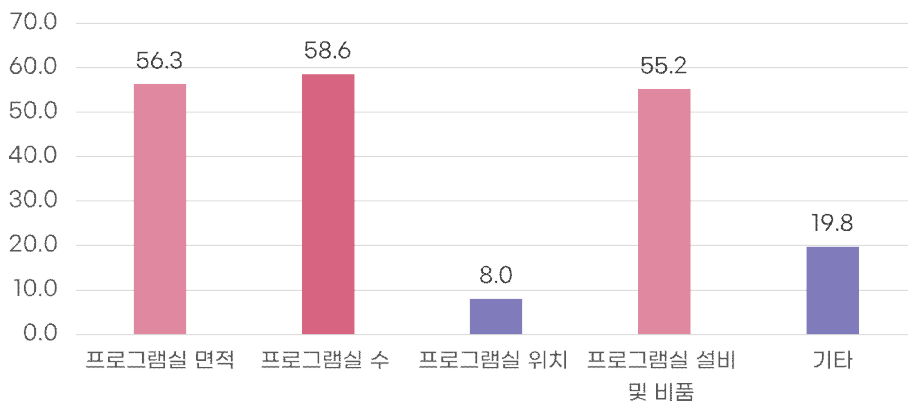
〈그림 4-34〉 프로그램 종류별 공간 문제 (단위: %)

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공간개선 의견으로는 가장 높은 것은 프로그램실 수가 58.6%로 나타남. 다음으로 프로그램실의 면적이 56.3%, 프로그램실 설비 및 비품이 55.2% 순으로 나타남.

〈표 4-76〉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단위: 개(%))

	응답 수	비율(%)
프로그램실 면적	49	56.3
프로그램실 수	51	58.6
프로그램실 위치	7	8.0
프로그램 설비 및 비품	48	55.2
기타	17	19.8



〈그림 4-35〉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간개선 의견 (단위: %)

4. 공간 평가 및 개선

1) 입지 및 설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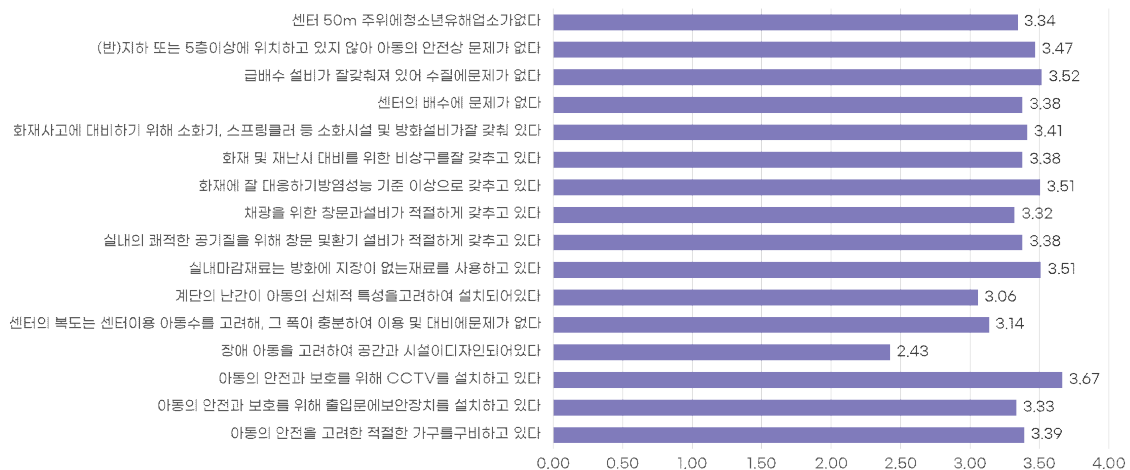
①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결과,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 디자인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입지 및 설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장애 아동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 디자인에 대해서는 2.43점(4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공간적 측면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7〉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입지 및 설비 항목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센터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다	87	3.34	0.87
(반)지하 또는 5층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아동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	87	3.47	0.76
급배수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수질에 문제가 없다	87	3.52	0.70
센터의 배수에 문제가 없다	87	3.38	0.80

입지 및 설비 항목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및 방화설비가 잘 갖춰 있다	87	3.41	0.76
화재 및 재난시 대비를 위한 비상구를 잘 갖추고 있다	87	3.38	0.77
화재에 잘 대응하기 위해 방염성능 기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87	3.51	0.63
채광을 위한 창문과 설비가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87	3.32	0.83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창문 및 환기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87	3.38	0.80
실내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87	3.51	0.68
계단의 난간이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	87	3.06	0.89
센터의 복도는 센터이용 아동수를 고려해, 그 폭이 충분하여 이용 및 대비에 문제가 없다	87	3.14	0.81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공간과 시설이 디자인되어 있다(문턱제거, 슬라이딩도어,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87	2.43	1.09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87	3.67	0.56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도어락 사용, 초인종 사용 등으로 센터 출입의 사람을 통제)	87	3.33	0.87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가구를 구비하고 있다	87	3.39	0.64



〈그림 4-36〉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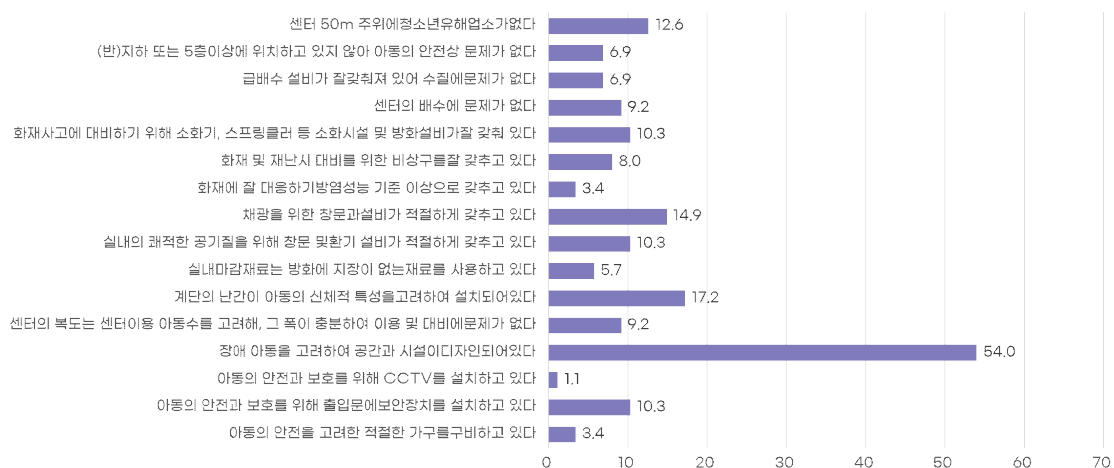
2) 입지 및 설비 개선 의견

① 입지 및 설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

-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장애 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 디자인이 54.0%로 개선 의견이 가장 높게 제시됨. 다른 항목은 모두 20.0% 이하로 낮은 개선 의견이 나타남.

〈표 4-78〉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단위: 개(%))

입지 및 설비 항목	응답 수	비율(%)
센터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다	11	12.6
(반)지하 또는 5층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아동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	6	6.9
급배수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수질에 문제가 없다	6	6.9
센터의 배수에 문제가 없다	8	9.2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및 방화설비를 잘 갖추고 있다	9	10.3
화재 및 재난시 대비를 위한 비상구를 잘 갖추고 있다	7	8.0
화재에 잘 대응하기 위해 방염성능 기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3	3.4
채광을 위한 창문과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13	14.9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창문 및 환기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9	10.3
실내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5	5.7
계단의 난간이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	15	17.2
센터의 복도는 센터이용 아동수를 고려해, 그 폭이 충분하여 이용 및 대비에 문제가 없다	8	9.2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공간과 시설이 디자인되어 있다(문턱제거, 슬라이딩 도어,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47	54.0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1	1.1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도어락 사용, 초인종 사용 등으로 센터에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	9	10.3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가구를 구비하고 있다	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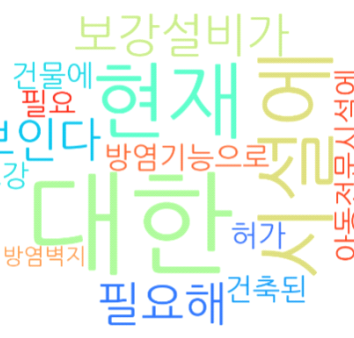
〈그림 4-37〉 입지 및 설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단위: %)

② 입지 및 설비에 대한 개선 의견

- 현재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wordcloud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센터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주변에 없는 것에 대한 개방

형 의견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흡연에 대한 문제, 인근 건물과의 인동간격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음.

- 지하 및 5층 이상에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계단의 사용의 문제(난간, 높이 등)가 제기됨.
- 급배수와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배수 하수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소방 및 방화설비와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설비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노후화된 건물에 센터가 위치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방염성능 기준 준수에 대해서는 방염기능 설비에 대한 추가 설치 및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광에 대해서는 창문이 있지만 해가 잘 들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지하에 위치한 센터에서도 채광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 환기에 대해서는 창문이 있어도 개폐를 할 수 없게 되어 자연환기가 되지 않고 있어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방화 방지 실내마감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있으며 특히 책상, 의자 등의 방화 방지 마감재료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음.
-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계단 난간에 대해서는 계단이 너무 많고 높아서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난간의 경우에도 아동의 신체적 특성의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복도의 경우에는 좁아서 이동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고려한 설비 및 공간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사로, 장애아동 화장실 등에 대한 설비가 없어 장애아동의 사용성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출입보안 장치에 대해서는 센터 전용의 출입보안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안장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을 고려한 가구 구비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가구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설비를 보완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유해업소	지하 및 5층 이상 위치에 따른 안전문제
	
급배수 설비 문제	배수문제
	
소방 및 방화 설비	화재 및 재난시 대비시설
	
방염성능 기준 준수	채광



〈그림 4-38〉 입지 및 설비 개선에 대한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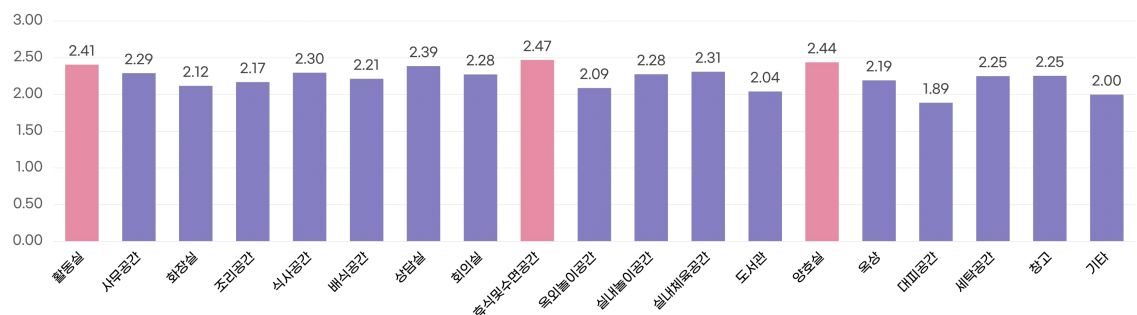
3) 설치 공간별 평가 및 개선

① 설치 공간별 평가

- 휴식 및 수면공간이 2.47점으로 가장 높게 문제가 있는 공간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호실(보건실 및 격리실) 2.44점, 활동실 2.41점, 상담실 2.39점, 실내체육공간 2.31점, 식사공간 2.30점, 사무공간 2.29점, 실내놀이공간 2.28점 순으로 나타남.

〈표 4-79〉 설치 공간별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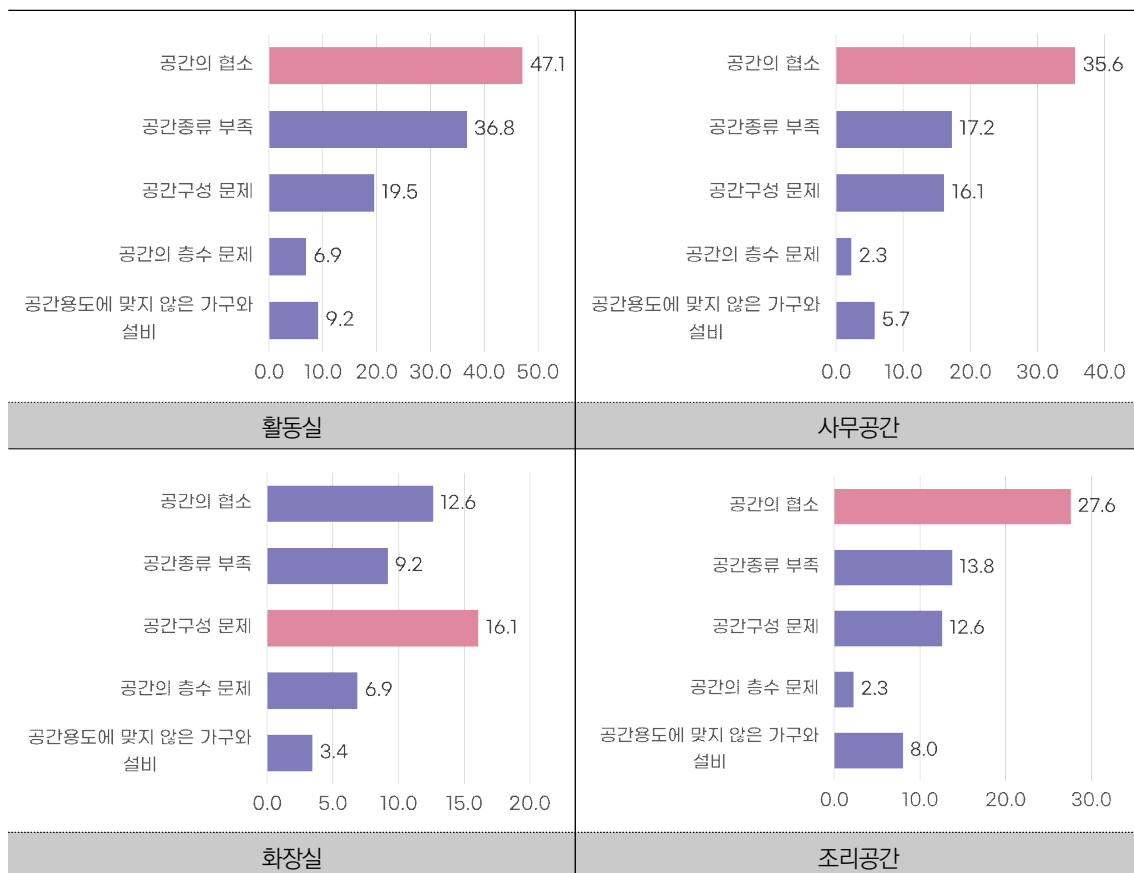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활동실	86	2.41	0.95
사무공간	86	2.29	0.91
화장실	84	2.12	0.81
조리공간	65	2.17	0.80
식사공간	57	2.30	0.78
배식공간	56	2.21	0.85
상담실	49	2.39	0.95
회의실	40	2.28	0.91
휴식 및 수면공간	49	2.47	0.94
옥외 놀이공간	56	2.09	0.82
실내 놀이공간	76	2.28	0.78
실내 체육공간	45	2.31	0.82
도서관	47	2.04	0.75
양호실	41	2.44	1.00
욕상	31	2.19	0.87
대피공간	54	1.89	0.74
세탁공간	32	2.25	0.80
창고	51	2.25	0.89
기타	11	2.0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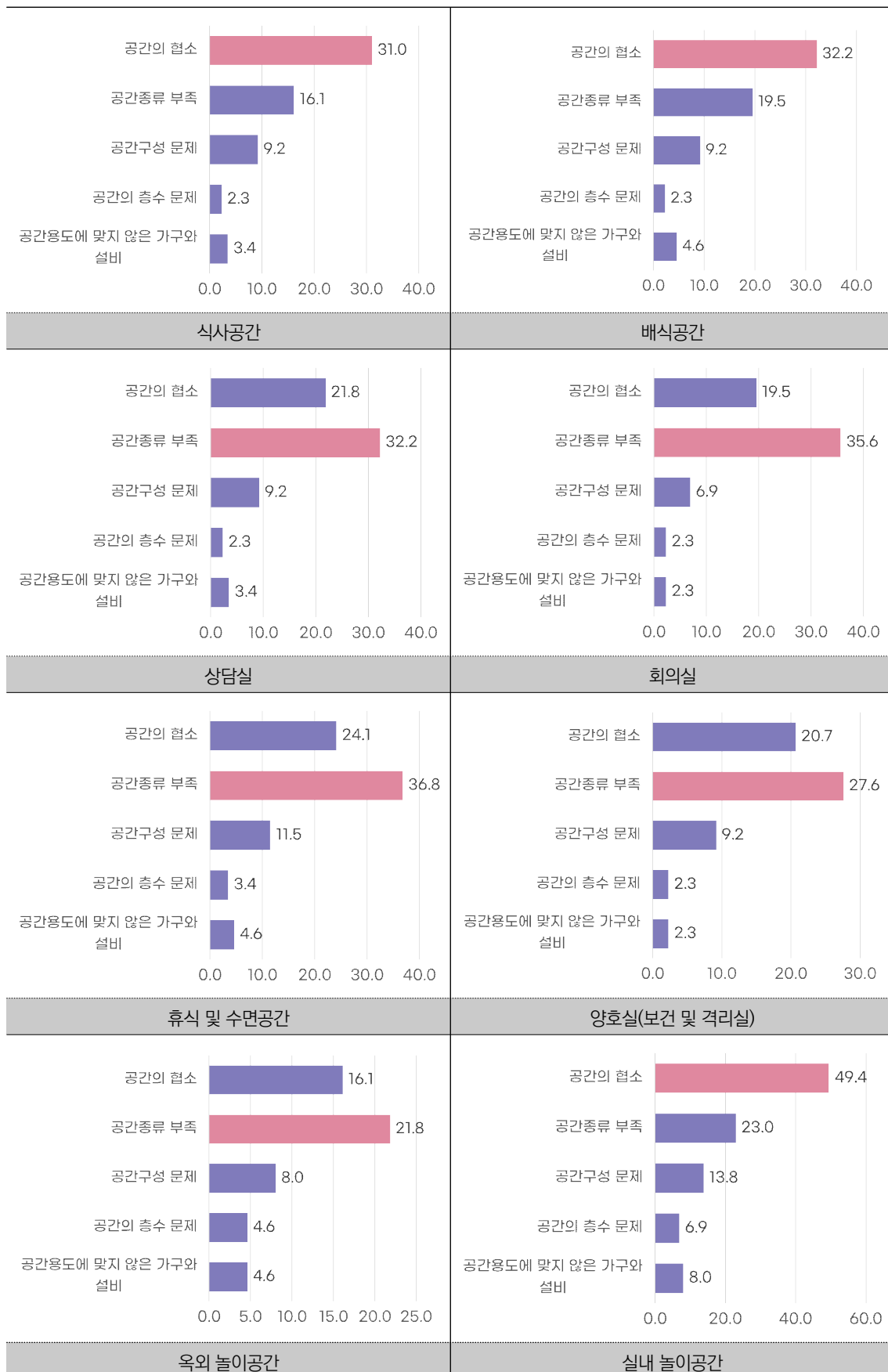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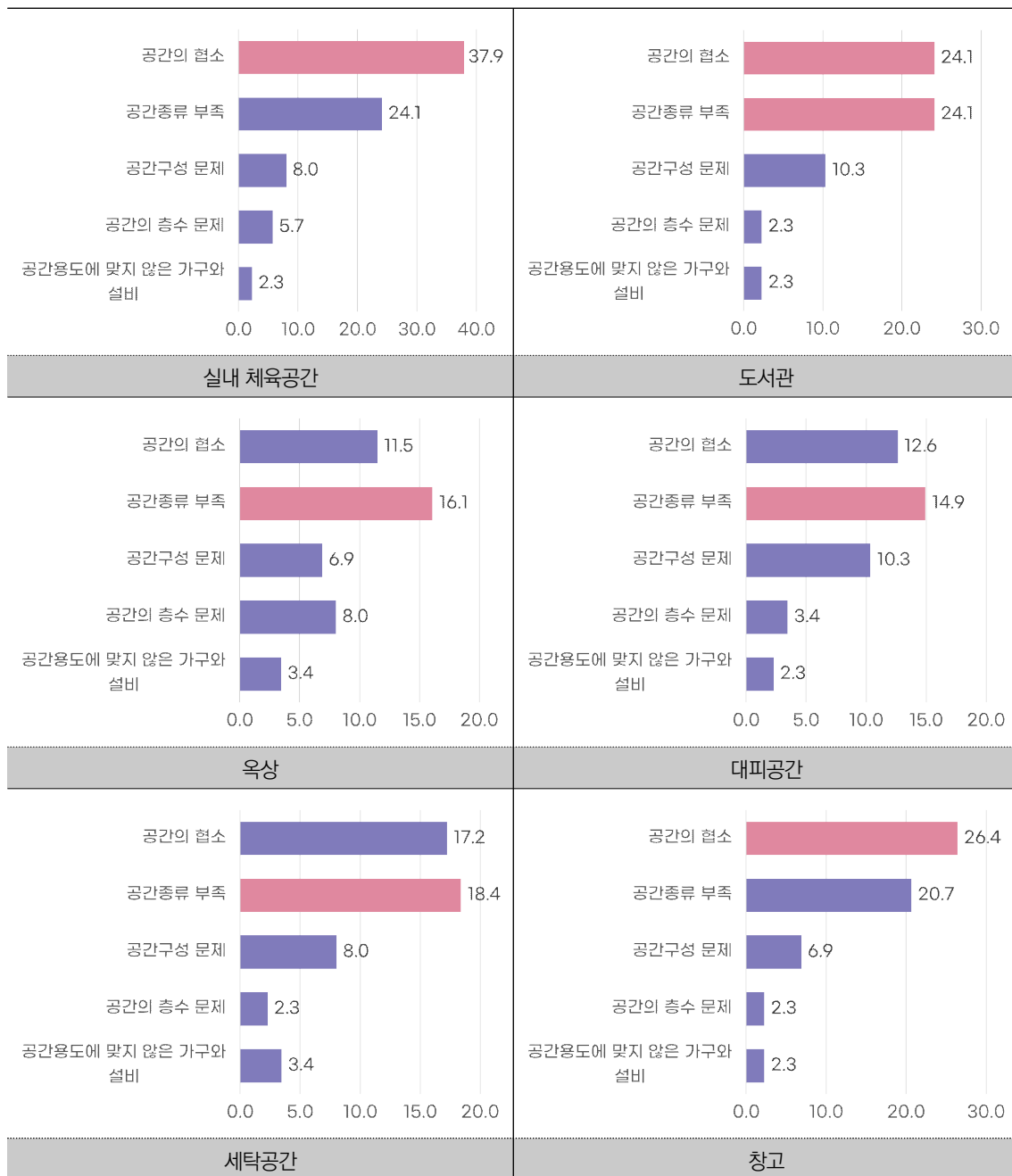
〈그림 4-39〉 설치 공간별 평가 (단위: 점 (4점 만점))

②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

-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식사공간, 배식공간 등은 공간이 협소함을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공간구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고 있었음. 화장실의 경우 센터 내에 설치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구성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한 것으로 보임.
-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 공간, 양호실(보건 및 격리실), 옥외놀이공간은 공간 종류의 부족 문제를 가장 높게 선택함.
- 대부분의 센터에서 이와 같은 공간이 부족함을 시사함. 실내놀이공간과 체육공간은 공간 협소의 문제를 가장 높게 응답함.
- 도서관은 공간의 협소와 공간종류 부족의 이유를 가장 높게 응답함.
- 옥상(옥상텃밭 등), 대피공간, 세탁공간은 공간종류 부족의 이유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창고는 공간의 협소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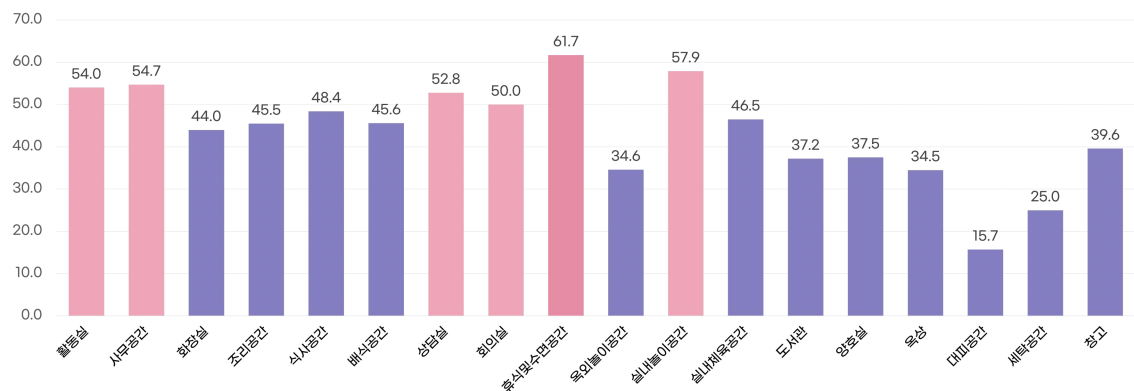
〈그림 4-40〉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 (단위: %)

③ 개선이 필요한 공간

- 현재 개선이 필요한 공간으로 휴식 및 수면 공간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실내놀이공간이 57.9%, 사무공간이 54.7%, 활동실이 54.0%, 상담실이 52.8%, 회의실이 50.0% 순으로 나타남.

〈표 4-80〉 개선이 필요한 공간 (단위: 개(%))

공간종류	공간 수	비율(%)
활동실	61	72.6
사무공간	47	54.7
화장실	37	44.0
조리공간	30	45.5
식사공간	30	48.4
배식공간	26	45.6
상담실	28	52.8
회의실	20	50.0
휴식및수면공간	29	61.7
옥외놀이공간	18	34.6
실내놀이공간	44	57.9
실내체육공간	20	46.5
도서관	16	37.2
양호실	12	37.5
옥상	10	34.5
대피공간	8	15.7
세탁공간	7	25.0
창고	19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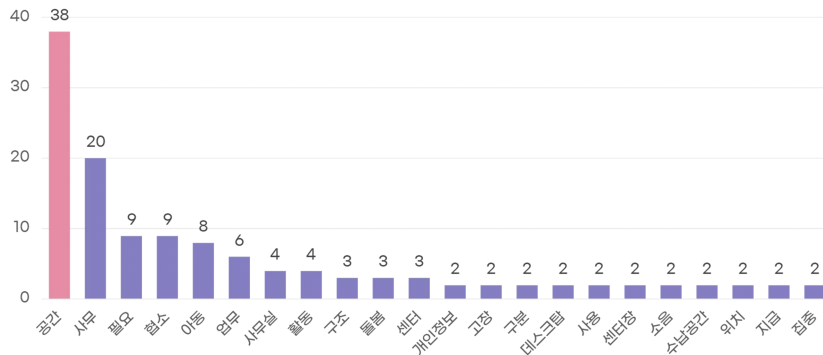


〈그림 4-41〉 개선이 필요한 공간 (단위: %)

④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에 대한 개방형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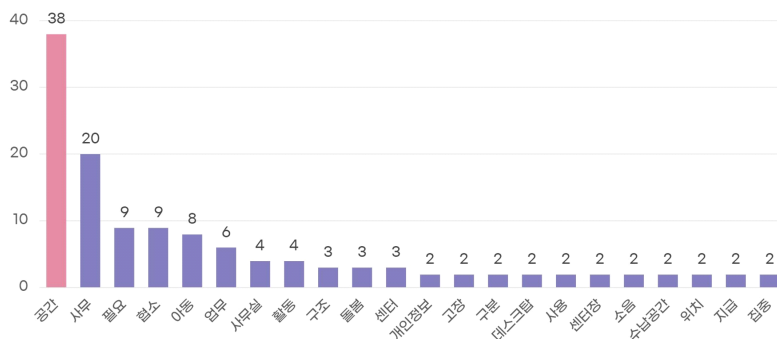
- 설치 공간별 공간 문제에 개방형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빈도, 워드클라우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
- 활동실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4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25회), 아동(23회), 협소(11회), 필요(9회), 부족(7회), 대비(7회), 정원(6회), 돌봄(6회), 면적(5회), 사용

(5회), 구분(4회), 분리(4회), 다양(4회)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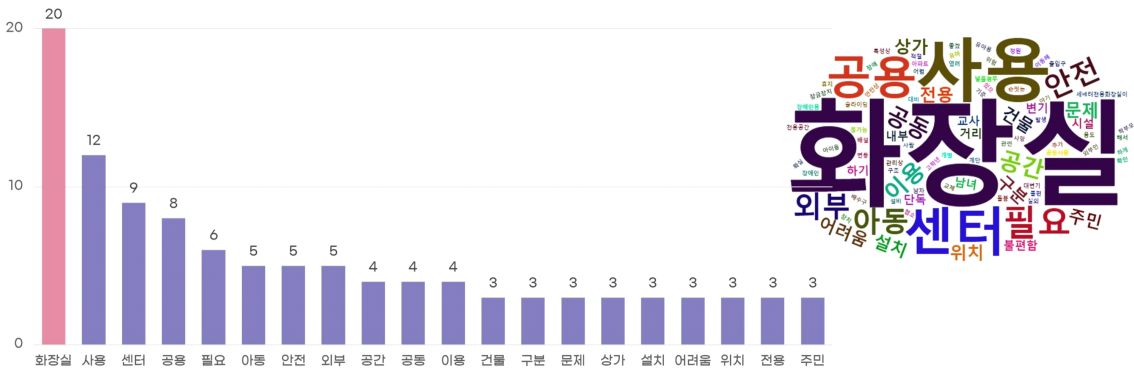
〈그림 4-42〉 활동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사무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38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20회), 필요(9회), 협소(9회), 아동(8회), 업무(6회), 사무실(4회), 활동(4회), 구조(3회), 돌봄(3회), 센터(3회), 개인정보(2회), 고장(2회), 구분(2회)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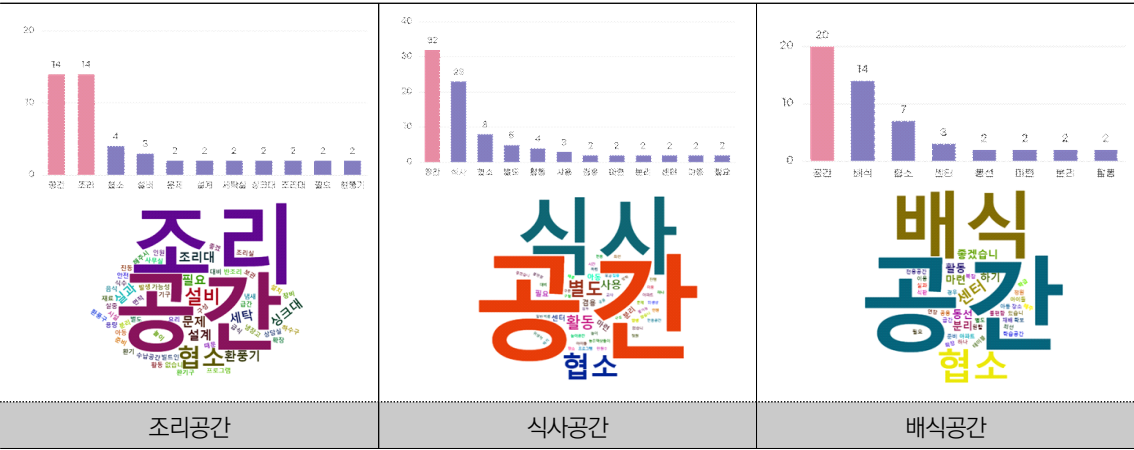
〈그림 4-43〉 사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화장실 공간 문제에서 화장실이 2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용(12회), 센터(9회), 공용(8회), 필요(6회), 아동(5회), 안전(5회), 외부(5회), 공간(4회), 공동(4회), 이용(4회), 건물(3회), 구분(3회), 문제(3회), 상가(3회), 설치(3회), 어려움(3회), 위치(3회), 전용(3회) 주민(3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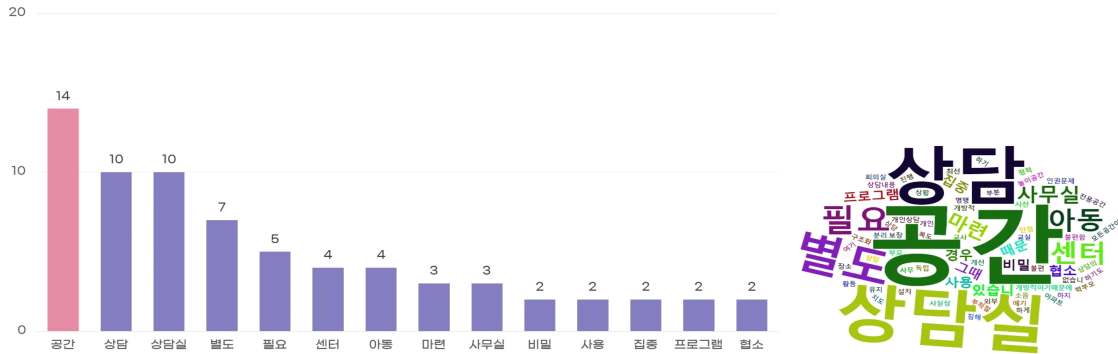
〈그림 4-44〉 화장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조리공간 문제에서 공간과 조리가 1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소(4회), 설비(3회), 문제(2회), 설계(2회), 세탁실(2회), 싱크대(2회), 조리대(2회), 필요(2회), 환풍기(2회) 순임.
- 식사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32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23회), 협소(8회), 별도(5회), 활동(4회), 사용(3회) 순임.
- 배식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20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식(14회), 협소, 센터(3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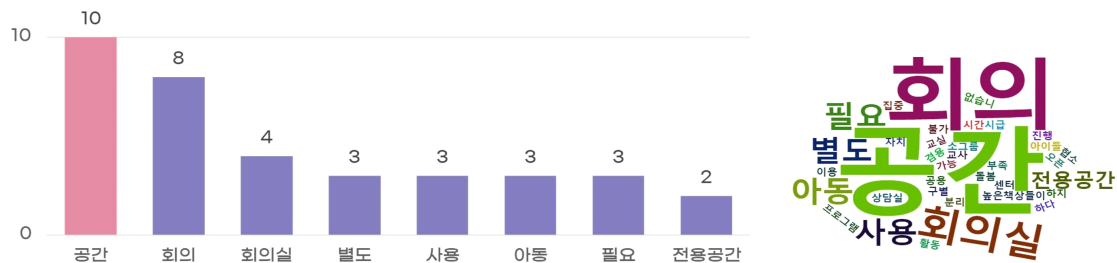
〈그림 4-45〉 조리·식사·배식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상담실 문제에서 공간이 1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담(10회), 상담실(10회), 별도(7회), 필요(5회) 센터(4회), 아동(4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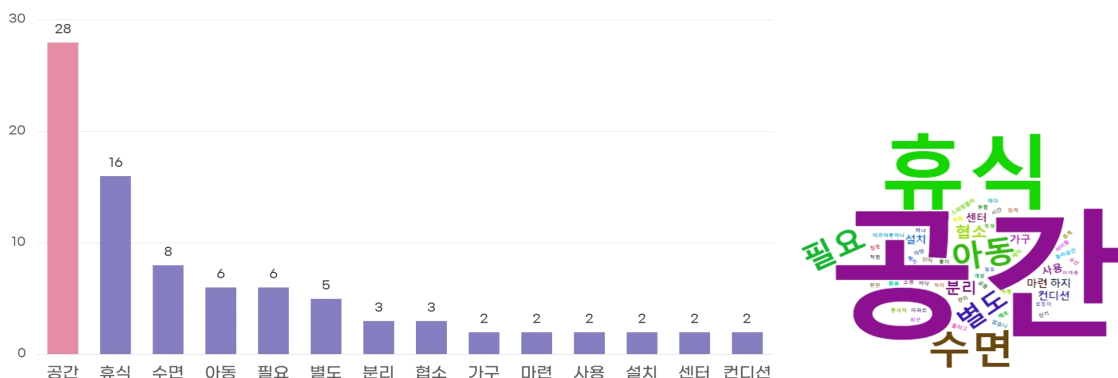
〈그림 4-46〉 상담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회의실 문제에서 공간이 10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회의(8회), 회의실(4회), 별도(3회), 사용(3회), 아동(3회), 필요(3회), 전용공간(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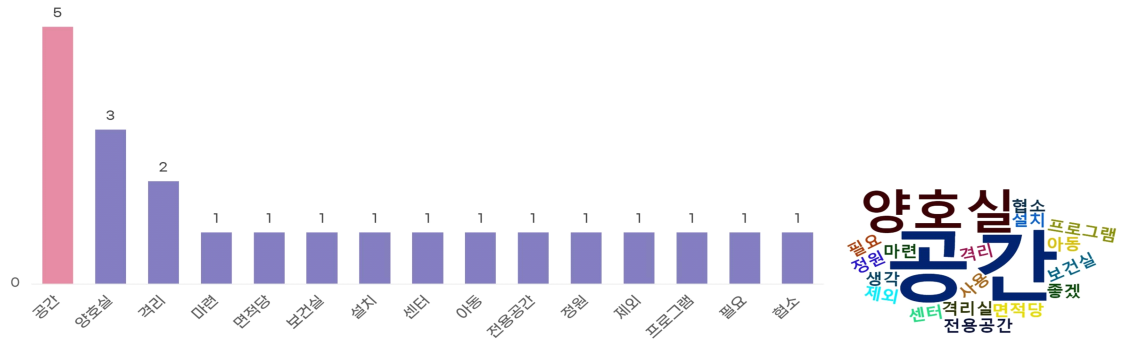
〈그림 4-47〉 회의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휴게 및 수면 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28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식(16회), 수면(8회), 아동(6회), 필요(6회), 별도(5회), 분리(3회), 협소(3회) 순임.



〈그림 4-48〉 휴식 및 수면 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양호실 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5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호실(3회), 격리(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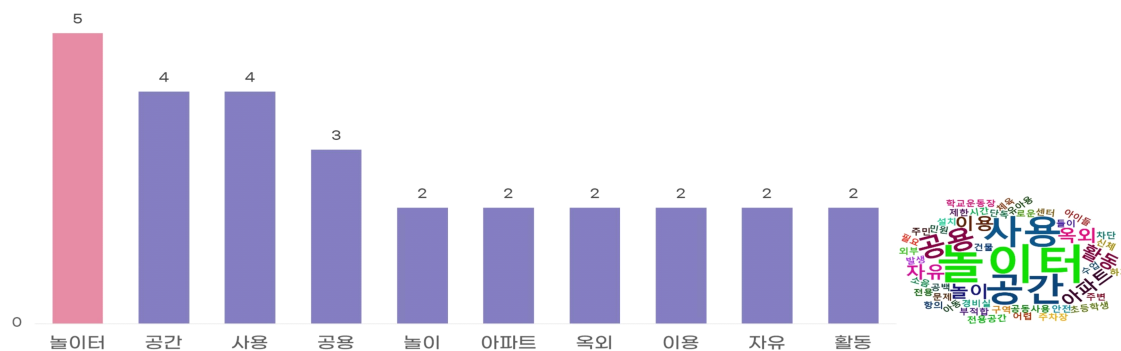
〈그림 4-49〉 양호실(보건 및 격리실)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도서관 문제에서 도서관이 7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간(6회), 센터(5회), 독서(2회), 사용(2회), 자유(2회), 활동(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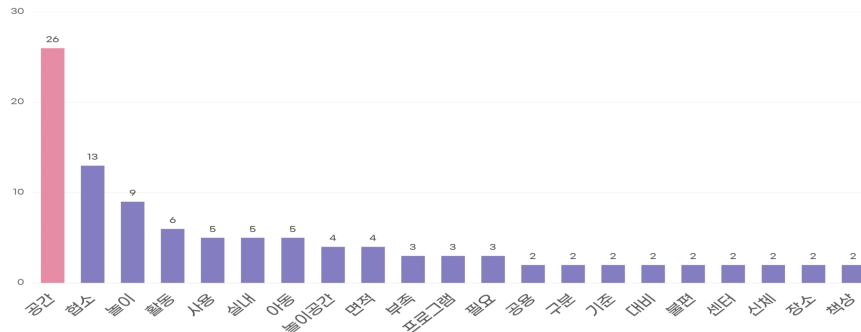
〈그림 4-50〉 도서관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옥외놀이공간 문제에서 놀이터가 5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간(4회), 사용(4회), 공용(3회), 놀이(2회), 아파트(2회), 옥외(2회), 이용(2회), 자유(2회), 활동(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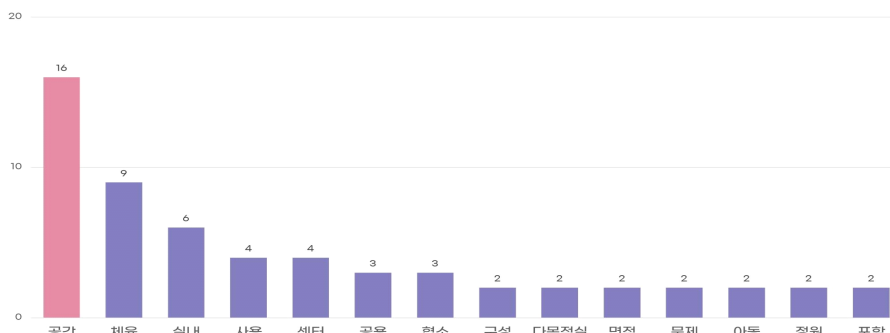
〈그림 4-51〉 옥외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실내놀이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26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소(13회), 놀이(9회), 활동(6회), 사용(5회), 실내(5회), 아동(5회), 놀이공간(4회), 면적(4회), 부족(3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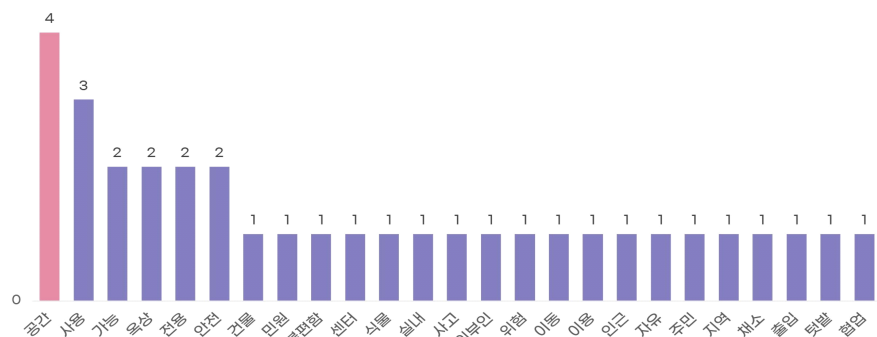
〈그림 4-52〉 실내놀이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실내체육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16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9회), 실내(6회), 사용(4회), 센터(4회), 공용(3회), 협소(3회), 구성(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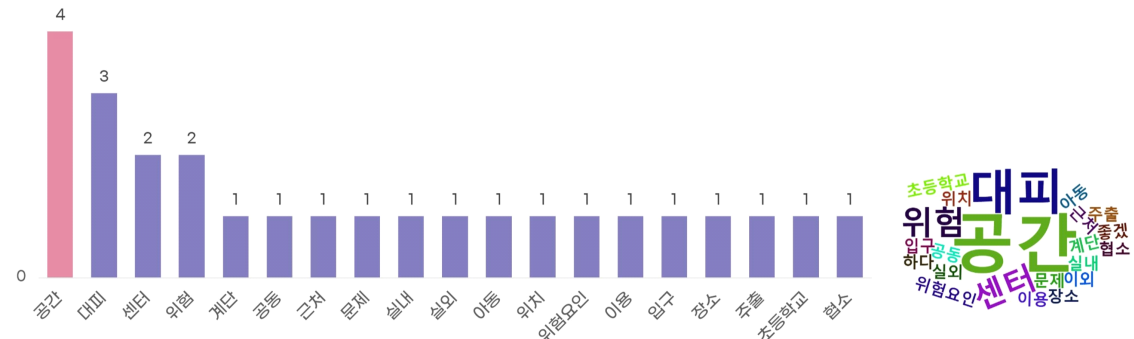
〈그림 4-53〉 실내체육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옥상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용(3회), 가능(2회), 옥상(2회), 전용(2회), 안전(2회) 순임.



〈그림 4-54〉 옥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대피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피(3회), 센터(2회), 위험(2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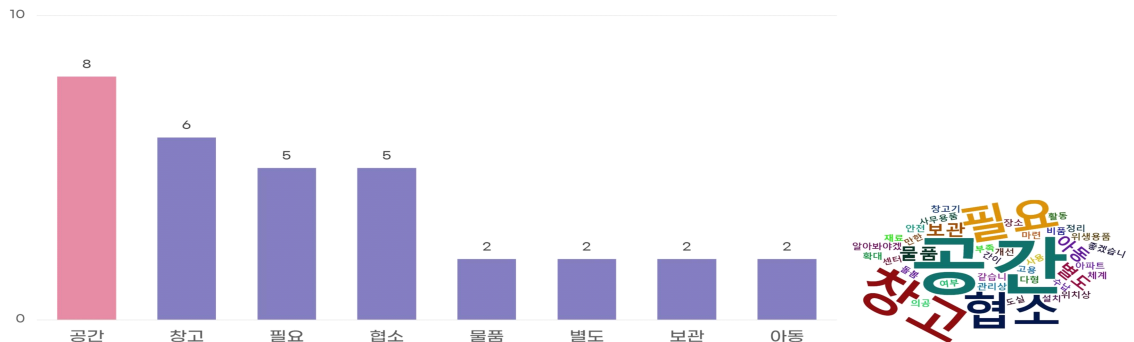
〈그림 4-55〉 대피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세탁공간 문제에서 세탁이 4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간(2회), 센터(2회), 조리대(2회) 순임.



〈그림 4-56〉 세탁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 창고공간 문제에서 공간이 8회 출현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창고(6회), 필요(5회), 협소(5회), 물품(2회), 별도(2회), 보관(2회), 아동(2회) 순임.



〈그림 4-57〉 창고공간에 대한 개선 의견 분석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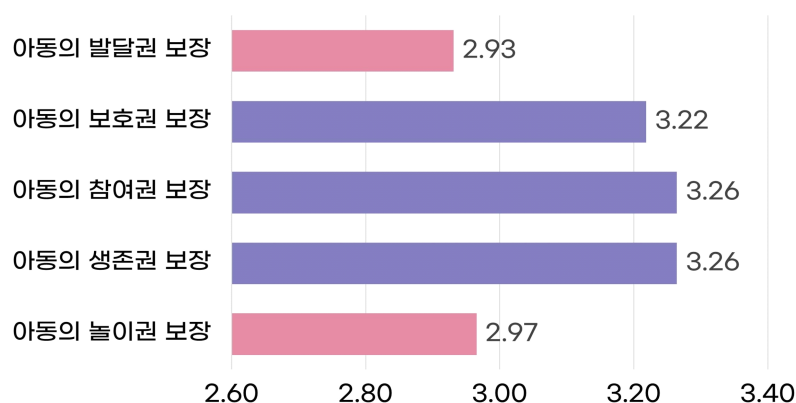
4)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공간 평가 및 개선

①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공간 평가

- 아동 권리 관점에서 현 센터 공간에 대한 평가 중 ‘아동의 발달권보장(아동의 연령 및 발달 정도를 고려한 공간구성 및 디자인, 다양한 공간 제공)’과 ‘아동의 놀이권보장(다양한 놀이공간 마련)’이 3.0점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
- 그에 비해 아동의 보호권보장(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 마련), 아동의 참여권(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프로그램 참여 보장과 공간사용 보장), 아동의 생존권(쾌적한 실내환경 마련, 건강한 식사제공 등) 관점에서는 3.0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표 4-81〉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단위: 4점 만점)

아동권리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의 발달권 보장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다양한 공간제공)	87	2.93	0.76
아동의 보호권 보장(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 마련)	87	3.22	0.64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프로그램참여 보장 및 공간사용 보장)	87	3.26	0.67
아동의 생존권 보장(아동의 생존을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마련, 건강한 식사제공 등)	87	3.26	0.67
아동의 놀이권 보장(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 마련)	87	2.97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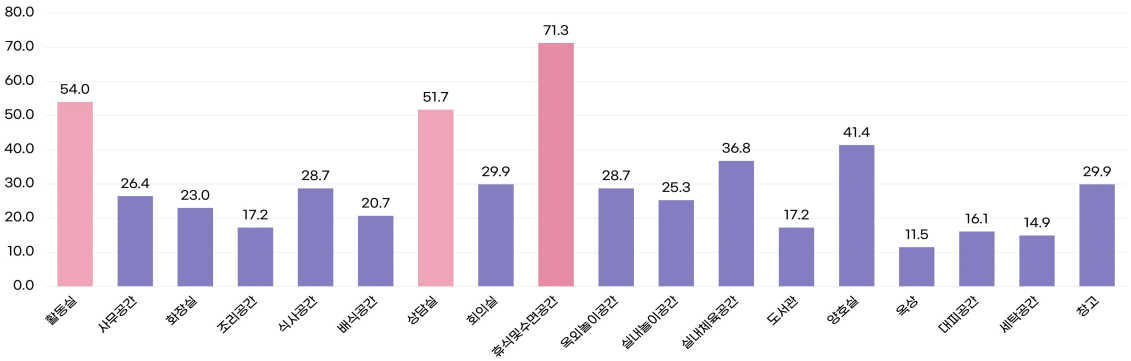
〈그림 4-58〉 아동권리 관점에서 현재 센터 공간 평가 (단위: 점(4점 만점))

②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추가 설치 공간 요구

- 아동권리 보장 관점에서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공간으로는 휴식 및 수면 공간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실 54.0%, 상담실 51.4%, 양호실 41.4%, 실내체육공간 36.8% 순임.

〈표 4-82〉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단위: 개(%))

공간종류	공간 수	비율(%)
활동실	47	54.0
사무공간	23	26.4
화장실	20	23.0
조리공간	15	17.2
식사공간	25	28.7
배식공간	18	20.7
상담실	45	51.7
회의실	26	29.9
휴식및수면공간	62	71.3
옥외놀이공간	25	28.7
실내놀이공간	22	25.3
실내체육공간	32	36.8
도서관	15	17.2
양호실	36	41.4
옥상	10	11.5
대피공간	14	16.1
세탁공간	13	14.9
창고	26	29.9



〈그림 4-59〉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 설치 공간 요구

5. 공간 개선 의견

1) 공간 기준 설정시 고려요인

① 공간 기준 설정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 센터의 안전성 확보가 3.85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결 및

쾌적한 환경 마련(3.79점), 센터로의 접근성(3.77점), 아동의 놀이권보장(3.77점), 아동의 보호권증대(3.76점), 아동의 생존권 보장(3.75점)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표 4-83〉 공간 기준 설정시 고려요인별 중요도 (단위: 점(4점 만점))

고려요인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유해시설 등이 없는 환경 등)	87	3.71	0.46
센터의 안전성 확보(센터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화재, 범죄 관련 설치 확보)	87	3.85	0.36
센터로의 접근성(이동거리, 등하원지도 등)	87	3.77	0.42
센터의 전체 면적기준 확대	87	3.64	0.55
센터 활동실 면적기준 확대	87	3.68	0.52
아동의 발달 상태고려(연령 및 발달 정도 등)	87	3.61	0.5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87	3.55	0.52
청결 및 쾌적한 환경 마련	87	3.79	0.41
편리한 환경 구성	87	3.71	0.48
종사자를 위한 공간마련	87	3.72	0.45
옥외공간 마련	87	3.18	0.79
휴게공간 마련	87	3.47	0.55
아동을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구성	87	3.71	0.46
아동의 보호권 증대	87	3.76	0.43
아동의 참여권 보장	87	3.72	0.45
아동의 생존권 보장(건강 지원, 안전지원 등)	87	3.75	0.44
아동의 놀이권 보장	87	3.77	0.42
아동의 자율권 보장	87	3.74	0.44

2) 공간 개선(안)에 대한 의견

① 돌봄공간 면적 기준

- 돌봄공간전용면적이 최소 66㎡이상 일 것에 대한 동의 정도: 3.29점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 87명 중 11명이 미동의 하였음. 미동의 이유는 모두 제시된 개선(안)보다 상회하는 면적을 요구함.

② 돌봄공간 이외 공간 및 설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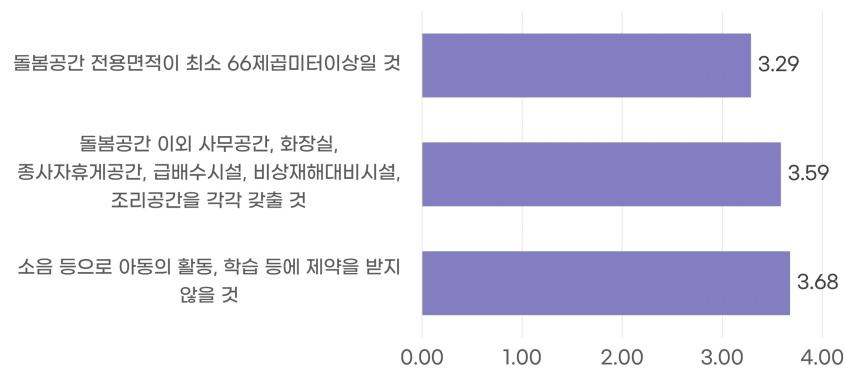
- 돌봄공간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에 대한 동의 정도: 3.59점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입지조건

-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및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 정도:3.68점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4〉 공간 개선(안) 의견 (단위: 점(4점 만점))

공간 개선(안)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돌봄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87	3.29	0.93
돌봄공간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상재해대비시설,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87	3.59	0.50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87	3.68	0.47



〈그림 4-60〉 공간 개선(안) 의견 (단위: 점(4점 만점))

6. 공간개선 관련 이슈

ISSUE 01

활동실 면적 기준 확대

개선안) 돌봄 및 활동실 전용 면적이 최소 66㎡ 이상 확보

최소기준과 유도기준 마련 - 최소기준: 66㎡ 유도기준: 66㎡ + α

ISSUE 02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반영한 공간기준 개선

음악, 미술, 체육, 교육 및 학습, 취미체험, 문화예술, 독서논술,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놀이, 자치활동, 심리정서, 연극 및 뮤지컬

» 면적확대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 적절한 설비 및 비품 마련

심리정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정적프로그램 전용공간, 동적프로그램 공용공간 이용

» 프로그램실 특성별 정적, 동적 공간으로 구분 제공

ISSUE 03

입지 및 설비 개선

장애아동을 고려하지 못한 센터 계획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개선 기준 마련 필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ISSUE 04

아동의 신체 특성과 범죄예방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기준 개선

아동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못한 계획으로 인한 위험 노출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가구 설치로 위험 노출

외부인 통제 등 출입 및 보안 장치 미확보로 인한 위험 노출

좁은 복도의 통행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노출

» 아동 신체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아동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ISSUE 05

아동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공간개선

발달권, 놀이권 보장을 위한 면적확대와 다양한 공간 제공

아동의 신체적 발달권을 고려한 면적 확대

아동의 다양한 놀이권 보장을 위한 공간 제공

5대 아동권리 관점에서 활동실, 상담실, 휴식 및 수면공간, 양호실 등의 공간 추가 제공 고려

ISSUE 06

공간별 공간 기준 개선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배식공간, 식사공간, 실내놀이공간, 실내체육공간, 도서관, 창고

» 공간 협소 문제 개선

화장실

» 공간위치 등 공간구성 개선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옥외놀이공간, 도서관, 양호실, 대피공간, 세탁공간

» 공간 종류 확대 개선

제3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분석결과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8개소 센터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표 4-85〉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참여자 현황 (1차, 2차)

번호	구분	대상	지역	직급	총 경력	총 전용면적	겸용여부
1	1차 (현장 실무자)	현장 실무자 A	서울	센터장	16년 8개월	70.56㎡	단독
2		현장 실무자 B	서울	센터장	10년	243.67㎡	단독
3		현장 실무자 C	서울	센터장	11년 5개월	112㎡	겸용
4		현장 실무자 D	서울	센터장	16년 5개월	165㎡	겸용
5	2차 (현장 실무자)	현장 실무자 E	경기	센터장	21년	181.5㎡	겸용
6		현장 실무자 F	경기	센터장	15년 6개월	150.35㎡	단독
7		현장 실무자 G	부산	센터장	7년 10개월	106.62㎡	단독
8		현장 실무자 H	경북	센터장	27년	118.8㎡	겸용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공간관련 현황 및 문제점, 요구도에 대한 센터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주로 결과를 도출함.

〈표 4-86〉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구분		세부 의견
1. 공간특성 현황	① 활동공간 현황	· 최소 전용면적 상회
	② 활동공간 외 공간현황	· 아동 및 종사자 휴식공간 부족 · 사무 및 수납공간 부족 · 배식 및 식사공간 부족 · 화장실 환경 개선 필요(외부 화장실, 남녀 미구분, 센터 내 세면시설 미구비 등)
	③ 지자체별 권고 설치기준	· 서울시 권고 전용면적(아동 1인당 4㎡)
	④ 입지 및 설비기준	· 유해환경 노출 우려(흡연, 유해업소 등) · 안전문제 발생 우려(교통, 설비 등)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다양한 특성(입지, 학년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② 프로그램 공간 개선 요구	· 프로그램 특성(정적, 동적)에 따른 공간 구분 필요
3. 정책요구		· 설비보수 지원요구 · 돌봄인력 충원

구분	세부 의견
4. 지역사회 네트워크	· 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구 · 거점형 센터의 확대 ·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계 요구 · 지역아동센터와의 활발한 연계

1) 공간특성 현황

① 활동공간 현황

- 현재 설치기준인 전용면적(인당 3.3㎡), 또는 연구진에서 1차적인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돌봄공간 전용면적(인당 3.3㎡)의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기보다는 최소 돌봄공간 전용면적의 기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즉, 방학 중이나 일시돌봄이 물리는 경우, 현재의 최소기준으로는 충분한 활동이나 돌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소 돌봄공간 전용면적의 확장 및 확보에 대한 욕구가 도출됨.

- 현재 활동실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전용면적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활동공간의 확장에 대한 공통의 욕구가 확인됨.

사실 지금 전용면적 기준(아동 1인당 3.3㎡)은 최소 기준이고...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적, 동적 공간 두 개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동 공간은 당연히 최소 66㎡가 확보되는 게 맞죠. 저희가 지자체에 말씀드려서 공간을 나눠보려고도 했거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형태로서는 구분을 하는 게 운영이 더 어려울 거라고 해서... 지금으로는 공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무자 C)

아동 1인당 3.3㎡이라는 기준은 어린이집 전용면적(영유아 1인당 4.29㎡) 보다 작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초등학생에게도 적용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실무자 D)

처음에 저희가 개소할 때는 35인 시설이었는데, 신도시다 보니 주변에 돌봄 시설도 없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대기자가 60여 명이 될 정도로 많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49인 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30명 이상만 되어도 정말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저희 센터에 프로그램 실은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이제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활동실에 있다 보니 좀 많이 부딪히고 잦은 다툼이나 안전

사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예민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3.3㎡의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는 원칙적으로 50명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쾌적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49인 시설로 제한하셨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혀 쾌적하지가 않고 좁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D)

- 학기 중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이 동시에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여유가 있으나 방학기간 중이나 일시돌봄 아동이 몰리는 날에는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진다고 함.

저희가 방학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학기 중에는 시니어 일자리, 공공근로 등 지역구에서도 인력 지원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산문제로 방학(1월, 2월)에는 거의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종일 돌봄과 급식지원이 있는 방학 때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원봉사는 책임감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무자 C)

- 시설에 따라서는 활동실이 매우 넓고 그에 비례하여 정원이 많은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아동 모니터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저희 시설은 굉장히 넓고 좋은 편이라 정원도 30명으로 좀 특별한 경우예요. 공간이 아치형으로 구성되어있고 뚫려있어서 선생님들이 항상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간면적이 넓고 이용아동수가 많다고 해서 추가 인력의 충원은 안 돼요. 같은 인원으로 30명을 관리하는 부분이 쉽지 않죠.

(실무자 B)

② 활동공간 외 공간현황

- 실무자들은 일관되게 아동을 위한 휴식공간의 부족을 활동공간 외 주요 공간문제로 제시함. 그 외에 창고(수납공간), 남녀 구분되는 전용화장실, 배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

전체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전체적인 프로그램 공간이나 사무 공간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확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휴식 공간 등은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식사를 할 때는 두 번에 나눠서 배식을 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구나 비품 같은 경우 임시로 이동·보관하거나, 책상이나 가구들은 공간 제약상 이동이 쉬운 좌식으로 세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비품의 구비가 필요한데, 현재 센터 내 비품을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프로그램 기획할 때 비품이 필요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추진을 하는 편입니다.

(실무자 A)

- 센터 이용아동의 다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에서 방과후에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보다는 휴식을 선호하는 아동이 많고, 피로, 컨디션 난조, 가벼운 감기 증상 등으로 조용히 누워서 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 공간구성으로는 별도의 휴식공간 구성에 어려움을 호소함.

저희는 사무실 한쪽에 침대를 놓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센터들은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 교사 휴게 공간도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휴게공간이 있으면 아이들도 양호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교사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봄교사가 휴게시간에 매번 나갈 수가 없고,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기도 힘들어서요.

(실무자 B)

- 구분된 사무공간도 부족하여 아동이나 학부모에게 업무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사무실 및 수납공간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함. (지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을 추후 FGI에서 확인함)

좁은 공간에 아이들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 하다 보니 사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창고, 상담실, 회의실 등 이런 공간은 전혀 없어요. 침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침대의 반은 창고의 대용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쓰고 있고... 아이들을 분리를 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침대 옆에 서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공간도 부족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상담을 위한 공간이나 창고와 같은 공간도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 C)

저희는 이제 사무공간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칸막이 정도로만 구분되어있어 사실상 오픈된 구조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면서 컴퓨터 화면이 다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비롯해서 교사 회의를 할 때도 아이들에 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싶지만,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으니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인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죠.

(실무자 E)

- 조리공간의 경우, 주방시설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배식공간이 부족함. 학기 중에는 별도의 배식시간 없이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각자 일정에 따라 간식을 먹게 되므로 활동 중에 옆에서 조용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방학 중에는 동시에 식사하게 되어 활동실의 책·결상을 이동하여 식당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과중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함.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인데, 방학 때는 약 28명이 동시에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배달받은 음식을 펼쳐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활동실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이동해서 급식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한 번에 밥을 먹기에는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책상도 부족하다 보니, 이제 매번 조를 나눠서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죠. 별도의 지정된 공간에서 배식을 해야 하는데 매번 책상을 옮겨야 하다 보니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선생님에게도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고,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자 자기 권리인데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배식 공간의 아쉬움이 선생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의 경우, 00구는 가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하나로 핫도그를 데워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오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에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먼지 나는 공간 한편에서 간식 먹는 아이들을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데리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식탁이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D)

센터마다 다 같은 상황이실 것 같은데... 요즘 방학 중에는 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되면서 급식을 하는 아동의 수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같이 급식을 먹지 못하고, 대부분 센터들이 두 번에 나눠서 배식하는 상황이죠. 저희 센터도 좌식 테이블을 치웠다가 또 펼쳤다가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리를 배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미술 테이블을 끌어다가 배식을 하고... 그리고 잔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교사 의자 이런 것까지 당겨다가 통을 놓고서 잔반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배식이나 잔반 처리를 위한 공간까지 고려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무자 C)

저희 센터는 주방이 약 7㎡로 설계되어있고, 주방 내 6~7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과 활동실을 활용하면 별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방학 기간에는 일시돌봄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돌봄아동과 일시돌봄아동을 합치면 약 40명이 급식을 이용할 예정이라서요. 저희처럼 넓은 센터도 정신이 없는데 배식공간이 제약적인 센터는 너무 힘들겠죠.

(실무자 B)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조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소형 인덕션(1구)과 전자레인지(1개)가 있고요. 그런데 정말 작은 크기의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적어도 5번은 나눠서 데워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져 있는 환경입니다.

(실무자 F)

○ 센터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야간돌봄 시 인력 문제 있음.

저희 센터는 복합시설이다 보니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화장실이 낯설고 무섭다고 느끼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이 해당 아동들을 화장실에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돌봄 인력이 없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야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전담 돌봄 선생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조명이 있어서 어둡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밤에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4명을 혼자서 야간 돌봄을 하시다보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불편하죠.

(실무자 E)

- 외부에 화장실이 있다면 외부활동 및 배식 전후로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센터 내에 필요함.

외부 숲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을 다녀오면 한꺼번에 모든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되니까 그럴 때 내부에 작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센터를 가보니까 실내에 손 씻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여건이 안 돼서 만들 수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다 보니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화장실과 별도로 실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작은 세면대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H)

③ 지자체별 권고설치기준

-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 1인당 4㎡의 전용면적 확보를 권고하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은 66㎡(아동 1인당 3.3㎡ 이상)이지만,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은 80㎡(아동 1인당 4㎡ 이상)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이 80㎡ 이상 확보가 필수였는데, 올해는 필수에서 권고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권고가 아니라 필수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용아동의 인원을 떠나서 비품 보관을 위한 창고, 사무실 등등 꼭 필요한 공간들은 꼭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실무자 A)

④ 입지 및 설비기준

- 상가에 입주한 경우, 유해시설은 아니나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흡연 등의 문제가 있음.

최근 센터 인근에서 흡연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해서 (해당 센터) 인근 금연구역 설정을 구청과 주민 센터에 요청했는데, 엄연한 아동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상가지만 다행히 외부인들이 출입을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저희는 아이들이 확인을 한 후 들어올 수 있도록 입·출입 장치를 다 설치를 했어요.

(실무자 C)

- 학교에서 센터로 오는 도로가 넓은 차도이거나 인도와 차도구분이 없는 구간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저희 센터는 학교와 인접한 상가에 있어서 이용아동의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센터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근처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따로 없어요. 차들이 천천히 나오기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자체에 (해당 센터) 인근을 아동 보호 구역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함께돌봄센터는 법률상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무자 C)

저희 센터는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차도와 도로가 있고 가까운 공원도 도보로 약 2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실외활동을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큰 숙제입니다. 한 달의 한 번 있는 행사처럼 인력을 충동원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실무자 F)

- 층이 구분된 경우 공간 이동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센터 입구에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층 다락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해당 공간을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굉장히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CCTV가 있지만 해당 공간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실무자 D)

- 장애아동을 위한 화장실이 별도의 층에 있는 경우가 있음.

저희 건물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밟으면서 시설 내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 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아동이 저희 센터에 입소를 했을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직은 없으나 향후 장애아동이 입소하였을 때 저희가 인력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실무자 F)

- 2층에 위치한 경우 완강기와 같은 대피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다는 의견도 피력함.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5층 건물 중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옥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방위 훈련을 하다 보니, 지하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고... 지하로 대피하려면 아이들이 꽤 긴 계단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데 센터가 3층에 있으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2층 이하로 설치조건을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불이 났을 경우도 대비할 수 있지만 지진이나 다른 경우에도 아이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센터 내 대피를 위한 별도의 장치나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 관련한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 E)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설문조사와 일관되게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모든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활동을 분리하여 진행하기 위해 파티션 등의 임시적 구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은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
- 다문화 가족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학습지도 및 교과지도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가 높아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사실 저희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교과 지도에 대한 부모님들의 요구도가 높아요. 아무래도 다문화 아동의 같은 경우는 한글 지도나 방과 후 학습지도와 같은 부분들에 요구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래보다 학습에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제공을 해보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돌봄인력 문제도 있고, 6학년 교과 지도까지 제공하기에는 어렵죠.

(실무자 F)

- 학년 구성에 따라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고학년과 저학년이 원하고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학년이 다양할수록 프로그램 운영시 공간 분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동의 학년 구성 등 센터 특성에 따라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센터 공간 구성시에 유동적이지만 안전한 공간구분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②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에 대한 요구

-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적 특성, 이용아동의 연령구성, 학부모의 요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공간문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간 활용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접이식 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았음. 활동 전후로 돌봄인력과 아동이 함께 책걸상 및 파티션을 이동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적인 활동이나 음악활동의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지적함.

원예, 요리, 과학, 음악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시간 제약 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용 파티션을 구매해서 활동실 내 분리도 시도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뚫려있다 보니 소리가 들리고... 충분한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실무자 C)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님에게서도 관련한 의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이 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약적이죠.

(실무자 D)

아이들은 돌봄을 받으려고 왔지 제재를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제재를 할 때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이 나뉘어 있으면, 아이들도 안락한 돌봄 환경을 제공받고, 저희도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센터 활동공간은 별도의 분리 없이 모두 오픈되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활발한 아이들은 활동적으로 놀 권리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해서 제재를 하게 되니까요.

(실무자 E)

- 공간이 여유있는 경우 놀이와 휴식을 구분하여 별도의 활동실을 활용하기도 하였음.

저희는 메인 활동실(1곳) 이외에 자유공간(2곳)이 따로 있고, 자유공간에는 매트와 소파가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독서, 숙제, 학습 등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유용해요. 최소한의 활동실이 3개는 있어야 아이들이 분산되어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실무자 B)

- 실내외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보니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활동실 내 의자와 책상을 모두 이동해야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체활동을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아동 및 부모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공간이 전혀 없어요. 외부에서 뛰어놀게 한다거나 텃밭 활동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공간적인 제약으로 할 수 없어요.

(실무자 C)

이용아동의 수가 많은 편이라 체육 프로그램과 같은 동적활동이나, 외부활동이 여의치가 않아요. 저희 센터의 경우 학교 복합시설이라도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모두 대관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학교시설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방학 중에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대관을 해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E)

- 아파트 내 센터인 경우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파트 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 시 주의는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입주민의 민원이 센터 쪽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올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동들이 많을 경우에는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제한적인 편이죠.

(실무자 A)

- 주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도로를 건너야 하거나, 안전 관리를 위해 교사가 동행해야 하므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센터에서 아이들 걸음으로 5-10분 거리에 공원과 놀이터가 있기는 하는데, 전체 이용아동을 데리고 나가려면 교사가 최소 2명은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센터 상황상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은) 어렵죠.

(실무자 C)

가까운 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제약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부 활동에서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서...

(실무자 D)

3) 정책욕구

- 설치 및 공간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돌봄인력의 부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수납공간 마련, 시설관리, 급식업체 선정 등 지자체로부터의 설비보수 지원 욕구가 도출되었음.

센터 내에서 변기, 환풍기 등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 종사자가 모두 여자이다 보니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센터를 방문해서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지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 센터는 다행히도 수납장이 다 따로 짜여있어요. 그래서 남는 물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고... 사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구가 부피도 크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실무자 B)

센터의 급식지원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라 업체 사고들도 많고, 잔반 문제 등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인력적인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안 먹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해주시거나 관련한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센터장들이 발품을 팔아서 업체들을 막 찾아 다니고 있어요.

(실무자 C)

돌봄인력은 이용이동이 20명, 30명 시설이던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리인력이 지원되지도 않고, 현재 돌봄인력으로는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추가) 프로그램 공간, 수납공간 그리고 인력충원... 이런 것들이 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왔을 때 잠깐이라도 누울 수 있는 소파가 있어야 되는데, 소파를 놓거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먼저 사무실에 수납장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정작 아이들이 누워 있을 수 있는 소파를 둘 수 없는 거죠.

(실무자 D)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 5년 차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책상이나 기자재가 부러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지났을 때 기자재 구매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E)

4)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 인근 초등학교(교육부) 및 지역 내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연계의 필요성이 도출됨.
- 거점형 센터 이용의 경우 이동수단의 제한이나 이용 가능한 센터의 권역이 한정되어 있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됨.

저희 지역구에는 융합형 이나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요. 예전에 타 지역구에 있는 거점형 센터를 이용해보고 싶어서 여쭙봤더니 권역이 달라서 이용이 불가하였어요.

(실무자 A)

융합형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어서 저희가 이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센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단체로 데리고 이동을 하려면, 외부 이동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보로 이동을 했을 때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적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무자 C)

- 지역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용아동 연계, 급식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구 내 융합형 다함께돌봄 센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합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어요.

(실무자 B)

인근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저희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초등돌봄기관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녁급식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연계가 가능한 아동(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이 있을 때 연계하면서 (인근 지역아동 센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실무자 D)

- 인근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나 교육청 소관으로 협의가 쉽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센터에 대한 개방성이 상이함.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연계를 하고 싶은데 쉽게 연계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학교 돌봄교실 선생님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일정 등을 공유받고 있어요. 학교와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실무자 A)

마침 센터 바로 앞에 학교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표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간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의 경우는 대관료를 지불하고 방학 중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전달을 받았고, 운동장을 사용할 때 지역주민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

만 단체로 이용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도 받아놓고 지역 연계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학교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무자 F)

학교와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논의할 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기관으로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단순히 돌봄 교실의 한 형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인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기관 방문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센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돌봄 교실 가는데 그런 게 왜 필요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무자 E)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학교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 G)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 입소한 센터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해 고민이 컸으며,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운영위원으로 초빙, 민원 대비 및 연계를 하고 있음.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제 데시벨(소리)이 높잖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민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속하면서 지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을 센터 운영위원으로 선정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실무자 A)

2. 공무원 FGI 분석결과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표 4-87〉 공무원 FGI 참여자 현황 (3차)

번호	구분	대상	지역	직급	총 경력
9	3차 (공무원)	공무원 A	서울	공무원 (7급)	25년 9개월
10		공무원 B	서울	공무원 (6급)	15년 8개월
11		공무원 C	경기	공무원 (7급)	20년 11개월
12		공무원 D	경기	공무원 (7급)	20년 9개월
13		공무원 E	경기	공무원 (6급)	4년 10개월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공간관련 현황 및 문제점, 요구도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주로 결과를 도출함.

〈표 4-88〉 현장 실무자(센터장) FGI 응답내용 범주화

구분		세부 의견
1. 공간특성 현황	① 활동공간 현황	· 최소 전용면적 상회 ·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전용면적 준수
	② 활동공간 외 공간현황	· 휴식공간, 수납공간 부족 · 지자체 예산편성을 통한 대응
	③ 지자체별 권고 설치기준	· 서울시 권고 전용면적(아동 1인당 4㎡) · 돌봄면적 필수, 이외 공간 권고 · 민원 대응책으로서 자체 기준(안) 마련
	④ 입지 및 설비기준	· 접근성 및 안정성을 우선 고려 · 공공임대 지향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다양한 특성(입지, 학년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예산편성을 통한 교구 지원 · 프로그램 관련 민원 대응
	② 프로그램 공간 개선 요구	· 이용아동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공간 구분 필요
3. 정책요구		· 지자체별 설치 및 돌봄수요 · 인력 및 설치예산 추가 배정 · 경증 장애아동 전담 인력충원 필요
4. 지역사회 네트워크		· 돌봄협의체 구성 · 초등학교와 제한적 협의 · 지역아동센터와의 활발한 연계

1) 공간특성 현황

① 활동공간 현황

- 지자체 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설치기준인 전용면적(인당 3.3㎡), 또는 연구진에서 1차적인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돌봄공간 전용면적(인당 3.3㎡)의 기준은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최소 정원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지자체 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모든 지자체는 전용면적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활동공간의 확장에 대한 공통적인 욕구가 도출됨.

현재 저희 관할 내 센터는 모두 전용면적(66㎡, 아동 1인당 3.3㎡)을 넘게 설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휴식 공간이라든지 하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사실 더 커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100㎡는 되어야 사무실 공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공간을 찾기가 00시 00구 내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A)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저학년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다고 나가지 않아요. 그럼 5~6학년들도 이용을 하는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은 거의 성인이랑 비슷한데... 3.3㎡로 전용면적(66㎡)을 계산하면 최소 정원이 20명 나오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죠.

(공무원 B)

저희는 센터 도입 초반인 2018년도에 처음 설치한 개소만 이 기준(66㎡)에 못 미쳐요. 사실 00시는 일시돌봄 아동이 많지 않고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3.3㎡가 적다고 느껴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센터장님들한테 실제로 물어봐도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공무원 C)

저희 지역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교실까지 총 28개가 있어요.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보니 활동공간이 좁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실 어린이집도 전용면적이 3.3㎡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너무 제한적이죠. 저희는 또 어린이 식당 면적까지도 제외해야 하다 보니까... 물론 정원이 한번에 차지는 않지만,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전용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공무원 D)

-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아동 1인당 4㎡)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정 설치공간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함.

저희는 최소 80㎡의 활동면적을 준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이사항은 좁은 공간이라도 센터 내에 놀이시설(암벽등반, 철봉 등)을 꼭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아지트 공간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석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지트 공간을 꼭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책도 읽고, 둘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공무원 B)

② 활동공간 외 공간현황

- 공무원은 종사자로부터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공간제한, 인력별 상이한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대안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고용노동부 기준의 돌봄인력의 정의를 확인하고, 돌봄 인력을 위한 종사자휴식공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센터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휴식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사실은 공간 자체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간을 발굴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있죠. 어린이집도 아예 교사 휴게 공간이 나오는 곳도 있고, 창고는 이제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러한 사전 협의나 데이터가 건설사 쪽에서도 전혀 없기 때문에 활동실(동적)과 프로그램 실(정적)로 설계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A)

(종사자가) 휴식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센터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장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불시에 방문을 몇 번 해봤어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실제로는 1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은 10시부터 1시까지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해서 보니 서로 모여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물론 업무를 하다가 마시겠지만요. 아이들이 1시에 와도 4~5시가 되면 또 다 빠져요. 실제 7시까지도 안 해요. 진짜 부득이한 아이 1명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볼멘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공무원 B)

종사자 휴게 공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센터 내에 탕비실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데가 많아요. 공간이 나오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공간 자체가 66㎡이다 보니까 공간을 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죠.

(공무원 C)

센터장님들은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어린이 식당이라든지 어쨌든 전용면적을 정말 딱딱하게 사용하고 있는거죠.

(공무원 D)

저희는 현재 (센터 설치 시) 아동 수 대비 면적을 계산했을 때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종사자들은 휴게시간을 이제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은 공간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 휴식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E)

- 실무자 FGI에서 요구도가 높았던 수납공간 및 수납가구 구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 편성 등의 방안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음을 확인함.

수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붙박이로 설계를 하는데요. 아이들 교구는 붙박이로 거의 해결이 되지만, 저희는 교구 문제보다는 서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감사나 운영 점검 때 보다 보니까 문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는 자체 운영비가 너무 적고 자산 취득 항목이 없어서 아예 구매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별도 편성, 처리를 해서 필요하시면 바로 사드리고 있어요.

(공무원 B)

수납공간은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는 물품을 구매하실 수 없어서, 저희도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공간을 갖춰달라고 하는 센터에는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공무원 C)

③ 지자체별 권고설치기준

- 수도 광역시는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아동 1인당 4㎡) 또는 보건복지부(아동 1인당 3.3㎡)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었음.

저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아동 1인당 4㎡)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요. 최소 활동면적도 80㎡로 규정되어있어서, 저희도 해당 면적을 준수하고 있어요.

(공무원 A)

- 이에 추후 기존 전용면적(66㎡)을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으로 한정하여 필수 규정안으로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활동실 이외 공간에 대한 필수설치 조항의 경우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저희는 이미 화장실, 사무공간 등을 다 제외하고, 돌봄공간의 면적으로 최소 66㎡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행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배수 시설이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휴게공간이나 사무공간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는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활동실 이외 공간의 경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가 아닌 권고조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A)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으로 3.3㎡는 절대적으로 작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기준) 80㎡에 아이들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다목적 공간을 초등학생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공무원 D)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내 종사자의 휴식공간의 구비가 가장 침해한 이슈거든요. 돌봄인력을 위한 휴식공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구축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불가하고….

(공무원 E)

- 다함께돌봄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 대응책으로서 내부 공간설치 심의위원회, 지자체 자체 기준(안)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음.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00시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 00구 안에서 먼저 확정심의를 하거나, 지역돌봄협의체, 마을 건축가 등을 활용해서 센터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용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기준(안)을 마련하려는 중에 있어요. 저학년을 넣기 위해서요. 맞벌이(30점), 다자녀(30점), 초등학교 저학년(30점), 고학년(20점) 이런 식으로 자체 점수표를 만들어서….

(공무원 A)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돌봄센터에 대한 설치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돼있다 보니…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내부적인 설치기준(안)이 있어야겠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충 계획(안)과 설치기준(안)을 내부적으로 만든 상태예요. 각 동별로 인구 수, 아동 6세부터 12세까지 공급률, 이용률, 충족률 등을 모두 조사를 한 다음 기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민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와도 기준(안)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C)

④ 입지 및 설비기준

- 아동의 접근성과 유해업소 제한, 안전성, 편의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센터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지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임대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센터는 아동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음. 주거지, 학교 간 동선이 주요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음.

일차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접근성이죠. 아이들의 주거지, 학교와 거리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해시설이죠. 청소년 보호구역 안에 노래방이나 호프집 같이 애매한 곳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량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센터 주변에 학교, 아파트, 도서관, 유흥공간, 공원 등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차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을 계약하고 있어요.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유해시설이 없었는데, 5년간 지나면서 유해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식당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20시까지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잖아요. 저녁 시간대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공무원 A)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도보로 이동했을 때 안전성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공간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설치할 때 주변에 공공시설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를 못한다면 공공시설에 아이들이 도보로 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 활동을 꼭 해야 하거든요. 00구는 초등학교 특히 남자아이들의 입소 비율은 보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해요.

(공무원 B)

- 임대유형의 경우 지자체별 설치공간 현황에 따라 임대유형(공공, 민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공공임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저희가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요. 공공시설이 유지관리가 좋고 영구·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공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 지자체는 임차시설(8개소)이 공공시설(4개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A)

저희는 민간 임대를 지향하고 있는 바는 아니고요. 왜냐면 민간 임대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유해 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프집이라든지 현재는 없어도 나중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무원 B)

저희 00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민 공공시설과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임차는 저희가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11개소), 주민 공공시설(10개소), 학교돌봄터(4개소), 임대(2개소)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단기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보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내 설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공무원 D)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설문조사와 일관되게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 활동 및 학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음. 다만,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가 일부 상이하여 지자체에서도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을 논의하고 있음.

센터 내부에서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수업이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일부 아동이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분을 조금씩 봐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어머니들은 오셔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는데 센터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서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A)

근데 사실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공간 제약상 이런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좁기 때문이에요.

(공무원 D)

공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은 가르치기를 바라시잖아요. 만족도 조사하면은 부모님들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단순히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잠깐 들렀다 간식만 먹고 가는 그런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 법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원 E)

- 지역에 따라 코딩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프로그램과 관련한 고가의 교구는 저희가 일괄로 구매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이들 코딩 수업 하셔서 센터에 패드를 다 사드렸어요.

(공무원 B)

- 지자체는 아동 및 학부모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과 관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요구가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D)

지금 저희 지자체 내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돌봄교실과 프로그램 등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맞춰서 가야 해요. 학부모들이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같은가는 방향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공무원 E)

②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에 대한 요구

- 일시돌봄 또는 사교육 비율, 아동의 학년 구성 등 지역 특성 및 이용아동 특성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수요가 도출됨.
- 이는 실무자 FGI에서도 도출되었던 결과로서, 사교육 이용이 많은 지역의 경우 센터 일과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으로 진행되어, 소규모의 프로그램 진행이 주를 이루었고, 저학년이 오래 머무는 센터의 경우 신체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았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해서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많고, 저희 00시는 일시돌봄 아동의 비율이 높다 보니, 프로그램도 1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활동실과 별도의 소그룹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프로그램은 활동실 안에 모여서 하는데, 참여하기 싫은 애들도 또 많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받고 학원 갔다 센터를 왔는데,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걸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보니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센터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많은 곳은 대부분이 저학년이에요. 우선, 고학년은 (센터이용) 순위에서 밀리거나 제한되니 들오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고 학년별로 다 있는 센터의 경우도 결국 고학년이 소수이다 보니 저학년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명 미만 고학년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는 해요.

(공무원 D)

센터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현장에서 신체(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는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복지관 안에 들어간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의 강당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제약적이니 인근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시간에는 학교가 이미 끝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 운영할 시간에는 학교시설을 대여하거나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공간을 내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에 소규모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사실 그런 곳에서 활동이 어렵다 보니 결국 아이들은 센터 안에서 머무를 수 밖에는 없는 거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체육 활동을 전혀 못 하고...

(공무원 E)

3) 정책육구

- 지자체의 특성(아동 수, 다문화·맞벌이 가구, 재건축 여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저희는 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미 설치한 센터는 미어터지고 있어요. 정원 25명인데 지금 상시로 40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아동을 뺄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었다고 해당 아동을 퇴소시킬 수 없어요. 학교돌봄교실은 철저하게 3학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는 아파트 단지가 없고, 주택 단지로만 돼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유효 공간을 제공하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고를 냈더니 그 공고문을 보고 항의 민원을 접수하신 거예요. 주택 단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왜 아파트에만 설치하냐고... 주택 단지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종료하기는 했는데, 이제 지역별로 주택가나 빌라촌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공공시설이 없거든요. 저희가 빌라도 몇 군데 가서 월세든, 전세로 해보려고 했지만 다 방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 허물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런 지역에서 센터 수요가 많이 있어요. 00구에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아동이 넘쳐나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학교 방과 후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해당 아동은 학교로 연계했어요. 이런 상황적 제약으로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설치공간을 찾는 게 항상 힘들어요.

(공무원 B)

센터자체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나 민원은 많은데, 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오히려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들도 있어요.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할 만한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용률이 확 떨어진 센터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C)

저희는 신축 아파트가 많기도 하고, 500세대 이상 분양계획이 계속해서 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아파트에 센터를 개소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어린 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건축회사 쪽에서도 어린이집 공간은 사전협의도 이미 잘 되어있어서 필요한 장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해서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 D)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00구는 거의 본 도심처럼 주민 공공 시설이 없는 곳인데, 아이들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구시가지가 큰 규모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권역별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니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요구는 많지만,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를 두 군데 하고 있고, 시 비용으로 2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적절한 공간은 아니어도 여건상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 E)

- 지자체는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인력 및 설치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자체 설치기준(안)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음.

반일제 돌봄인력이나 시설설치 예산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 D)

00시는 모든 센터에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설치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2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30인 이상 시설이면 추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센터장님들은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20명 정원으로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돌봄수요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20명 정원 센터의 설치의 지양하고, 최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이용아동 40명 이상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했을 때, 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E)

- 경계성 장애아동의 증가로 인해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음.

최근 지속해서 장애아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증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장애 즉,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ADHD 아동들이 센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센터마다 ADHD 아동은 반드시 있어요. 현실적으로 두 명의 종사자가 20명 이용아동(전용면적 66㎡ 기준)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ADHD 아동이 꼭 2~3명씩 있다 보니, 아이들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돌봄이 어려워요. 현재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1명의 장애아만 들어와도 다른 아이들의 돌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의 TO가 보장되어있거나, 장애아동 입소 시 종사자 추가 채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아동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최소 종사자(2인)의 기준의 확대가 필요해 보여요.

(공무원 B)

00도에는 장애아동 추가인력 지원사업이 있긴 있어요. 2명의 장애아가 들어오면, 추가 돌봄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도 실제로 장애아동이 입소해서 전담 인력을 채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아동이 결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해당 인력을 한 달 만에 퇴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난감했죠.

(공무원 D)

4)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돌봄협의체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수요 충족 및 공공시설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저희는 00구 돌봄협의체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유관기관 전문가와 교육청 등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협의체 활동이 미미하였기에 올해부터는 유관기관 종사자, 저희 센터, 그리고 권역별 학교돌봄교사로 구성해서 나름의 00형 방과후돌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62명이 포함되어있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A)

지역 돌봄협의체가 있기는 한데, 명목상 회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별도의 거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 연합행사를 기획하려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C)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운영,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운영이 많다 보니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거점을 맡아서 협의체를 주도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포괄하는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작년을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전환설치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사실 기존의 협의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 및 설치하는 방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아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법인과 원만히 협의가 완료되어서 올해 추가로 5개소의 전환이 예정되어있어요.

(공무원 D)

저희는 교육청 담당자와 인근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지역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감 선생님은 실무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라 보수적이지만, 교육청 담당자는 그래도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싶으시고... 협의체 내에서도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공무원 E)

- 하지만 초등학교가 교육청 소속으로 센터와의 원활한 대외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저희는 학교에 학교돌봄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학교랑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 관리에 있어서 학교와 마찰이 잦아 운영하기 어려워요.

(공무원 C)

올해 늘봄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부터가 이제 교육청과 보이지 않는 마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과의 여러 가지 협의 문제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D)

교육청 담당자에게 학교돌봄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난색을 보이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학교돌봄터에서 사용하던 전기세 등을 학교에서 지원해주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소한 문제로도 소통이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공무원 E)

- 지역아동센터와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초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교류하다보니 점차 연계를 활발히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A)

제5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제5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제1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검토

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

1) 현행 기준 검토

-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 관련 현행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별표1의2에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표 5-1〉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면적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현행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① 현행 면적 기준의 문제

- 현행 설치 면적 기준은 돌봄공간(활동실 또는 놀이공간)과 사무공간 및 부수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용면적이 66㎡ 이상으로 최소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즉, 최소 정원 20명으로 1인당 3.3㎡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법령에는 정원 기준과 1인당 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기존 선행연구는 돌봄공간과 부수공간의 구분 없이 최소 면적 기준만 제시하여 돌봄공간 협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②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결과

-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 760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전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전용면적은 130.0㎡로 최소 66.0㎡에서 최대 1,926㎡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5.1㎡로 현행 3.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현장 실무자 의견 조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2023년 5월) 결과, 87개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127.9㎡로 최소 66㎡에서 최대 283㎡였음. 1인당 평균 면적은 5.2㎡로 760개 다함께돌봄센터 전수 데이터(2022년)와 유사한 결과임.
- 현재 돌봄공간(활동실)에 대한 문제로 종사자들은 공간의 협소(47.1%), 공간 종류의 부족(36.8%) 등의 순으로 언급하였음. 연구진에서 제안한 면적 개선(안)인 「돌봄공간의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일 것」에 대한 동의점수는 평균 3.29점(4점 만점)으로, 동의 86.8%(76명 동의), 비동의 12.6%(11명 비동의)로 나타남. 비동의한 11명 모두 비동의 이유로 개선(안)의 면적이 최소 66㎡ 이상이거나 개선(안)보다 더 큰 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종사자들은 ‘최소 66㎡ 이상’이라는 개선(안)이 20명 정원 기준 대비 좁다고 인식하고 있음.

④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1) 현장 실무자(센터장)

- 센터 실무자 대상 FGI 조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이 어린이집 면적 기준인 1인당 3.3㎡와 동일한 것은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신체활동이 큰 만큼 면적 기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2) 지자체 공무원

- 공무원 대상 FGI 결과, 현재도 현행 면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공간 전용면적을 최소 66㎡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그러나 센터 전용면적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공간 발굴과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에 센터 면적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질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정원 기준(20명)을 축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⑤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관련 주요 문제점

- 전체 공간의 전용면적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아동 돌봄공간 협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됨. 이에 추후 돌봄공간 면적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도출됨.
- 돌봄 종사자들은 돌봄공간 협소 문제로 현행 면적기준 확대 요구가 높으며,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신체적 활동을 고려한 면적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센터 공간발굴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설치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음.

3)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 개선 방향 및 개선(안)

개선방향 ①	현행 '전체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일 것'이라는 면적 기준에 대해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으로 면적확대 개선(안)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개선방향 ②	센터 종사자들은 아동의 활동과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안보다 더 큰 돌봄공간의 면적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센터 공간을 발굴,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면적 기준이 더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 →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을 마련하여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
개선방향 ③	- 서울시의 경우, 융합형은 1인당 7㎡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라인 기준 상 확장형은 1인당 4.7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실내공간 1인당 최소 3.25㎡ 이상, 실외공간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1인당 실내공간 최소 3.25㎡ 이상, 실외 전체 111.48㎡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외는 이처럼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는 가운데, 실외공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아동의 놀이공간과 신체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공간의 면적 기준은 작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센터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실외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외의 실내공간 설치기준 보다 상회하여 유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융합형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형, 해외 실내외 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 이상을 유도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개선안 01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아동 1인당 3.3㎡ 이상으로 최소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산정) 필수기준으로 강행 규정임
개선안 02	돌봄공간의 유도면적기준은 아동 1인당 5.0㎡ 이상을 확보할 것 유도기준으로 권고 규정임
개선안 03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 마련

〈그림 5-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기준 개선(안)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1) 현행 기준 검토

-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관련 현행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별표1의2에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표 5-2〉 다함께돌봄센터 현행 공간 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현행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1. 설치기준
나.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 것

2)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① 현행 공간 설치기준의 문제

- 현행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체 센터 전용면적을 최소 66㎡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전체 센터는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도록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현행 공간 설치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들 공간은 센터 내 전용이 아닌 다른 시설 및 센터와의 겸용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돌봄공간 이외 공간 부족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양방향 대피로 등 대피공간 확보의 필요성 역시 선행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돌봄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서도 종사자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 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의무 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향후 종사자의 권리보장과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무공간은 90.8%, 화장실 81.6%, 조리공간 63.2%가 설치되어 있음(겸용사용까지 포함한 결과임).
- 사무공간은 면적협소, 화장실은 공간구성 문제, 조리 및 식사공간도 면적협소 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들 공간에 대한 추가 설치 요구도는 낮은 편임(사무공간 추가설치 요구 비율 26.4%, 화장실 23.0%, 조리공간 17.2%).
- 일부 개방형 답변으로 사무공간과 화장실의 경우 겸용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언급되었으며, 조리 및 식사 공간 내 적절한 설비와 면적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센터 내 대피 공간의 설치 비율은 42.5%였으나, 현 센터의 대피 공간에 대한 평가는 1.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안전을 위한 대피 공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③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1) 현장 실무자(센터장)

- 센터 실무자 대상 FGI 조사에서도 센터 내 사무공간에 서류 등을 보관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사무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아동과 학부모에게 업무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함.
- 또한 화장실이 센터 외부에 있는 경우 교사가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2) 공무원

- 공무원 대상 FGI 결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을 현재처럼 겸용사용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사자휴게공간을 센터 내 필수공간으로 별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사자휴게공간도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관련 주요 문제점

- 현행 공간 설치기준인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이외에 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아동 돌봄 및 안전 공간으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사자휴게공간, 비상재해대피시설, 급배수시설 등 신규 설치 공간과 설비 개선이 필요함.
- 센터 실무자들은 돌봄공간 기능 개선을 위해 사무공간 면적협소, 화장실 공간구성(남녀 분리, 전용 사용 등), 조리 및 식사 공간 면적협소 등의 공간 문제와 안전한 환경 마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지자체 실무자들은 공간 문제와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신규 도입 공간에 대해 설치 현실성을 고려한 겸용사용 허용이 요구됨.

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개선 방향 설정 및 개선(안)

개선방향 ①	· 센터 내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의 설치 비율은 높지만, 종사자휴게공간이 확보된 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개선(안)에서는 현행기준처럼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종사자휴게공간은 포함하여 설치 하되, 이들 시설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설치의 용이성을 부여
개선방향 ②	· 조리공간과 화장실 설치 및 이들 공간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급배수시설설치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화장실 사용에 있어 화장실의 위치와 남녀 공간 부분, 변기 및 세면대 설치시 아동의 신체적 발달 고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센터의 경우 급배수시설설치의 불가로 인해 공간 리모델링시 조리공간과 화장실 공간의 마련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조리공간과 화장실의 설치 및 적정 사용을 위한 급배수시설과 공간구성 및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개선방향 ③	·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사고 및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가 요구 →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을 위해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선안
04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강행규정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 및 시설, 설비를 확충해야 하나, 공간의 경우 겸용 사용을 허용

〈그림 5-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설치기준 개선(안)

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1) 현행 기준 검토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중 돌봄공간 구성 관련 기준은 없음.

2)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① 현행 공간 설치기준의 문제

- 현행 기준에는 돌봄공간의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돌봄공간 내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이 혼재되어 설치 및 사용하고 있어 각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됨.

② 현장 실무자 의견 조사

-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7개 센터 중 72.4%가 정적활동 공간과 동

적활동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공간구성 방법으로는 각 공간은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를 이용하여 분리한 경우가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개선에 대한 개방형 답변을 살펴본 결과, 정적 및 동적 활동실 구분 설치로 공간협소의 문제가 제시되어, 적절한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공간구성 방법이 필요함.

③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1) 현장 실무자(센터장)

- 정적활동 공간과 동적활동 공간이 별도의 출입구와 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으며, 각 공간의 아동을 돌봄인력 2인이 관리하기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2)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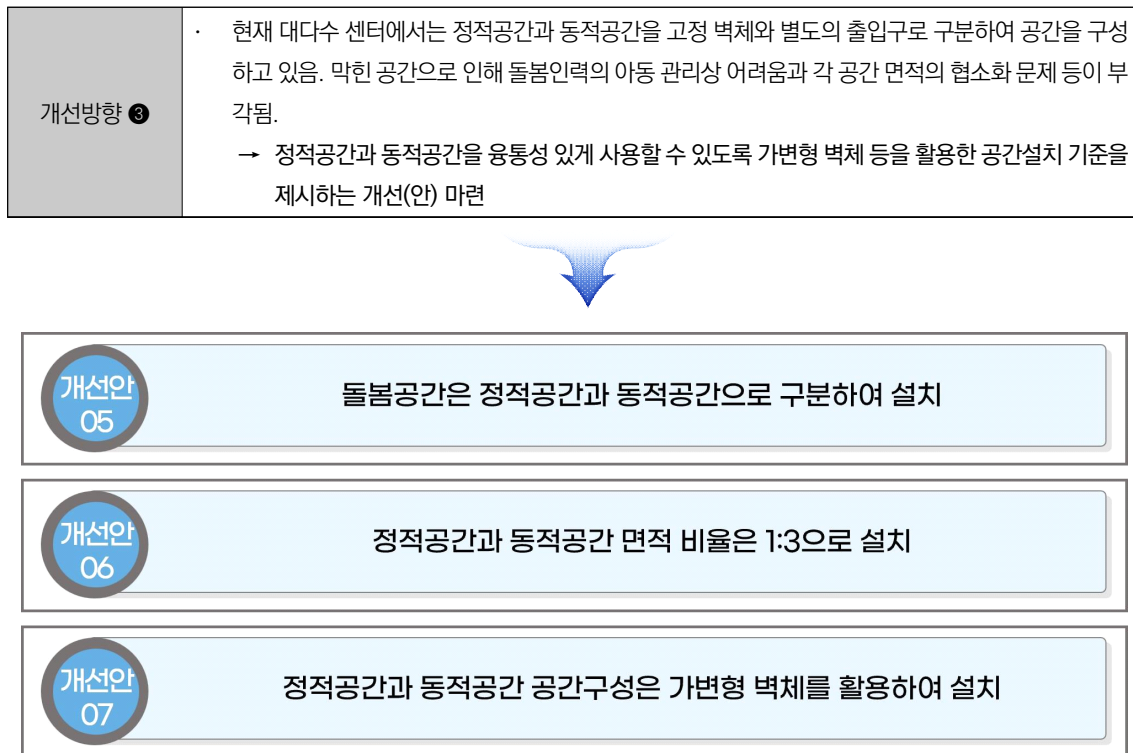
- 정적활동 공간과 동적활동 공간 구분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활동에 필요한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아동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 시 이를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④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관련 주요 문제점

- 현행 기준 중 돌봄공간 구성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아동의 활동 특성을 반영한 돌봄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정적활동과 동적활동 특성을 고려한 돌봄공간 구성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구분 구성시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의 고려 필요성이 도출됨.

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개선 방향 설정 및 개선(안)

개선방향 ①	·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구성 관련 기준은 없지만,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구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구분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개선방향 ②	· 아동의 활동 특성, 신체 발달 등을 고려할 때 동적공간은 정적공간 보다 넓은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함께돌봄센터,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공간가이드라인 기준을 참고하여, 정적공간 보다 동적공간의 면적을 넓게 확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라인에서는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적정면적 비율로 1:3을 제시하고 있음)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을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1:3 비율로 설정



〈그림 5-3〉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구성 기준 개선(안)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기준

1) 현행 기준 검토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에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별도 설치기준이 부재함.

2)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① 현행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의 문제

- 현행 기준에는 아동의 기본권리인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놀이권 등을 고려한 세부 내용이 부재하며, 향후 포괄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이 밖에 장애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고려하는 설치기준 마련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② 현장 실무자 의견 조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동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71.3%가 아동의 휴식 및 수면 공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으

로 활동실 54.0%, 상담실 51.7%, 양호실 41.4%, 실내체육공간 36.8% 순으로 나타남. 아동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별도의 휴식 및 수면 공간, 양호실(격리실)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그밖에 상담실 등이 없어 아동 및 학부모 상담 시 어려운 점이 있음.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에 대해 54.0%의 종사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여(현재 센터의 개선 의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현재 센터시설이 장애아동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③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1) 현장 실무자(센터장)

- 센터 실무자 대상 FGI 조사에서도 아동의 휴식 및 수면공간과 격리실(상담실 겸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도출됨.
- 종사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활동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동적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2) 공무원

- 아동의 돌봄에 있어 휴게 공간 및 수면 공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센터 내 아동 휴게 공간 및 수면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해당 공간들에 관한 설치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지금보다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고 규정 또는 겸용사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아동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공간이 아동 권리 중 발달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아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활동반경을 반영한 공간의 크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고려한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임.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경우 정원 수 산정 시 1.5배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향후 장애아동의 입소를 고려한 정원 기준 산정방식 또는 설치기준에 변화가 필요함.

④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설치기준 관련 주요 문제점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설치기준이 없으며, 향후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 권리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시설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는 휴식 및 수면과 양호실(보건 및 격리실)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 중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는 활동실과 동적활동 공간으로 실내체육공간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해당 공간의 추가 설치에 센터의 면적 확대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설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강행규정보다 권고규정으로, 기존 개선과 겸용사용 허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양한 아동이 함께하는 포용적 돌봄공간이 될 수 있는 기준도 고려해야 함. 장애아동을 위한 설치기준과 정원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3)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 개선 방향 설정 및 개선(안)

개선방향 ①	·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설치 기준 개선(안)이 필요
개선방향 ②	· 아동의 발달권, 놀이권을 고려하여 활동실 및 실내체육공간(동적공간)의 확대 설치기준 제시 → 아동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활동실과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개선방향 ③	· 장애아동의 활동반경을 고려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돌봄공간 면적 기준의 상회로 인해 공간의 추가 확대가 요구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간 발굴에 많은 제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후 면적 기준 산정 시 정원수 기준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장애아동, 일반아동 정원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 마련



개선안 08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개선안 09	아동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
개선안 10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그림 5-4〉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 개선(안)

5. 아동의 활동 및 학습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1) 현행 기준 검토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에 대한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표 5-3〉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입지조건의 권고사항
1.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호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3.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4.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5.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2)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① 현행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의 문제

- 현행 기준에는 입지조건에 대한 부분이 권고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고기준이므로 세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센터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② 현장 실무자 의견 조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입지에 대한 개방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가 시설 및 (반)지하 공간에 센터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열 수 없는 문제, (반)지하라는 위치상 채광 및 환기의 문제가 지속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센터 근처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센터가 상업 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변의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과 학습에 방해가 받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③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1) 현장 실무자(센터장)

- 센터 실무자 대상 FGI 조사에서도 센터 주변 도로의 안전 문제, 공원,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이용을 위해 이동 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됨.

(2) 공무원

- 공무원 대상 FGI 결과, 센터 주변의 소음, 간접흡연과 함께 상가 시설에 소재한 센터의 경우 유동 인구의 증대가 아동의 활동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시됨.

④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관련 주요 문제점

- 현행 입지와 관련된 설치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아동을 시설로의 입지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활동, 학습, 안전, 건강 등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조건 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3)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개선 방향 설정 및 개선(안)

개선방향 ①	·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의 활동과 학습,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입지조건은 권고기준으로 제시 → 아동의 활동, 학습,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소음, 간접흡연, 안전 등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안)이 필요이 필요한 시점.
--------	---



개선안 11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개선안 12	기존 입지기준에 대한 권장 사항 중 필수 도입 기준 마련

〈그림 5-5〉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개선(안)

〈표 5-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구분	내용
면적 기준	· 돌봄공간의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아동1인당 3.3㎡ 이상으로 최소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산정)
	·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것
	·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 마련
공간설치 기준	·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공간구성 기준	·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 비율은 1:3으로 설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 기준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 아동 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 및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입지조건	·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 기존 입지 기준에 대한 권고기준 중 필수 도입 기준 마련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1. 조사목적 및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한 설치 기준(안)을 최종 수정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면적기준(3개), 공간설치 기준(1개), 공간구성 기준(3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 기준(3개), 입지조건 기준(2개) 등 총 12개 개선(안)에 대해 아동돌봄 분야 3인, 공간설치 분야 3인 등 학계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총 6명을 대상으로 자문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개선(안)을 도출함.

2. 전문가 자문 결과

1) 공간설치 기준 개선(안)

① 면적기준 개선(안)

개선(안) ①	·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은 최소 66㎡ 이상일 것(아동 1인당 3.3㎡ 이상)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1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음.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 20명 정원 기준인 66㎡ 기준은 부수공간을 제외한 돌봄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족한 공간으로 더 큰 면적 기준 필요함. 하지만 센터 공간발굴 및 센터 설치 현실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기준은 유지하되, 유도기준을 마련함.	
▼	
최종 개선(안) ①	· (필수)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 이상일 것) ※ 필수기준(강행규정)

개선(안) ②

-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것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2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을 아동 1인당 5.0㎡ 이상 확보할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음.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유도기준보다 필수기준의 면적을 상회하여 제시하는 것이 센터 면적 증대에 기여함.
- 필수면적 기준을 개선(안) 기준보다 상회하게 제시하는 것은 센터 공간 발굴 및 설치에 제약이 될 수 있음. 또한 공간의 확대는 돌봄 교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면적의 확대는 공간 발굴 및 설치, 돌봄인력 총원 등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정원기준을 조정하여 면적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함께 제시함.
- 유도기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제언으로 제시함.



최종 개선(안) ②

- **(권고)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은 최소 아동 1인당 5㎡ 이상 확보할 것** (단, 돌봄교사의 배치를 고려하고 설치 현실성 등을 고려 하여 센터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예시: 15명 정원 75㎡(제공미터) 이상 활동실 설치))

※ 권고규정

개선(안) ③

-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을 마련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3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동의 의견이 반반이었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수정
- 필수와 유도기준을 동시에 실행하기보다 필수기준 도입을 통한 공간 면적의 확대 후 유도기준을 도입하여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유도기준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필수기준 도입 후 점진적 확대 의견을 반영함.
- 유도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필수기준만 준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유도기준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반영함.



최종 개선(안) ③

-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필수기준 효율성 확인 후 점진적으로 유도기준 도입을 통한 면적 확대

② 설치기준 개선(안)

개선(안) ④	· 사무공간, 화장실(남/녀 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4 “사무공간, 화장실(남/녀 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에 대해 모두 동의.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조리시설의 안전 문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센터, 식사 제공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반조리,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조리시설 필수에서 제외 의견이 제시됨.
- 하지만 조리시설의 경우 센터의 공간 특성 및 급식 운영 특성을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의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급배수설비의 경우에는 설비가 필요한 시설인 화장실과 조리시설에 한정하여 표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급배수시설은 두 공간뿐만 아니라 현관 및 센터 내부에 설치되는 세면대 등을 고려한다면 두 공간에만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표기함.
- 사무공간, 화장실에 대한 전용 사용의견이 높았으나, 센터 설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용 사용을 권고하고, 종사자휴게공간 겸용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최종 개선(안) ④	· (필수)사무공간, 화장실(남/녀 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 사용하도록 하고,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사용이 가능하며, 화장실의 경우 센터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외부 화장실을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 필수기준(강행규정)
------------	---

③ 공간구성 기준 개선(안)

개선(안) ⑤	·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5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었음.
- 일부 전문가는 반드시 동적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의 필요성을 언급함.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구분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적공간이 향후 정적공간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규정 필요성을 제시함.
- 공간사용의 문제, 안전사고, 아동의 활동 지원 측면에서 필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하지만 소형센터의 경우 필수로 하게 되면 활동실 면적이 작아져 공간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지역사회 공간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권고사항으로 제시함.



최종 개선(안) ⑤	· (권고)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동적공간은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설치 ※ 권고규정
------------	---

개선(안) ⑥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 비율은 1:3으로 설치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6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 비율을 1:3으로 설치”에 대해 동의 비율이 높아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에 대한 의견은 권고기준에 대해 비율이 높음.
- 지역사회 공간자원과 연계를 통한 동적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정적공간의 공간구성을 융통성 있게 구성(이동 가능한 가구 등 설치)하여 정적, 동적공간을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따라서, 지역 공간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구성하고, 소형센터의 경우 융통성 있는 가구 및 설비를 통한 공간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함.
- 지역적 특성과 센터의 인근 지역자원 특성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권고기준이 적절함.



최종 개선(안) ⑥

·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비율은 1:3으로 설치** (단, 지역사회 공간자원과 연계가능한 경우에는 면적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소형센터의 경우에는 가변형 설비 및 가구를 설치 경우 면적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권고규정

개선(안) ⑦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7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에 대해 동의 비율이 높아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에 대한 의견은 권고기준에 대해 비율이 높음.
- 주어진 공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변형 벽체만으로는 소음 문제를 차단할 수 없어 슬라이딩 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 필요
- 센터의 공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 도어, 폴딩 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함.
- 센터의 공간 규모 특성에 따라 벽체 사용이 달라질 것임. 대형센터의 경우 고정형 벽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소규모 센터의 경우에는 가변형 벽체 사용이 효율적인 만큼 권고 규정으로 하여 센터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권고기준으로 하여 공간 특성과 센터 면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함.



최종 개선(안) ⑦

·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 (단, 센터의 공간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

※ 권고규정

④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기준 개선(안)

개선(안) ⑧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8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의견은 반반이었음. · 추가 의견 없이 모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 공간, 상담실의 우선적 추가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 방과후 돌봄에 있어 휴식 또는 아픈 아동을 고려하여 필수규정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설치예산 및 공간 발굴 등을 고려하면 권고 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모두 제시됨. · 소형센터의 경우 공간을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권고 규정으로 반영함.	
---	--



최종 개선(안) ⑧	· (권고)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 권고규정
------------	---

개선(안) ⑨	· 아동 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시설 확대 설치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09 “아동 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에 대해 동의와 비동의 비율이 같음. · 실내체육공간은 향후 유지관리 및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 자원(대여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과 협조 필요 ·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실내체육공간의 확대 설치 어려움. · 활동실은 면적이 확대되고 정적, 동적공간을 구성하는 만큼 추가 설치되는 만큼 활동실을 다른 기준으로 확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실내체육공간은 확대 설치하는 것이 공간 발굴과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여 수정함.	
---	--



최종 개선(안) ⑨	· 삭제
------------	------

개선(안) ⑩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 및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10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 기준 마련.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에 대해 동의 비율이 높아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에 대한 의견은 필수기준에 대해 비율이 높음.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과 공간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장애 아동수 기준보다 돌봄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상이한 정원 기준 마련 필요함.
-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필요한 공간 면적이 크고 돌봄 지원 강도가 높은 만큼 상이한 정원 기준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함.
-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적용에 대한 필수 의견이 높으나, 센터 설치와 돌봄 인력에 대한 우선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규정으로 적용함.
- 향후 장애아동 권리보장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양한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 돌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고려한 돌봄 인력 확충과 면적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적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 진행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함.

최종 개선(안) ⑩

· (권고)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 기준 마련 및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 권고규정

개선(안) ⑪

·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개선안 11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개안(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적용에 대한 의견은 필수기준에 대해 비율이 높음.
- 특히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센터의 위치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필수적 사항으로 고려해야 함.
-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관점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안전은 필수항목이지만, 소음 및 간접흡연은 권고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등을 고려하면 소음, 간접흡연, 안전 등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필수규정으로 제시함.

최종 개선(안) ⑪

· (필수)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 필수기준(강행규정)

2) 입지조건 기준 개선(안)

권고기준 ❶	· (권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 조건 중 권고기준 01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에 대해 모두 필수 적용 필요 ·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필수기준으로 변경 제시	
---	--



최종 권고기준(안) ❶	· (필수)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필수기준(강행규정)
--------------	--

권고기준 ❷	· (권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조건 중 권고기준 0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에 대해 필수 적용에 대한 의견이 높음. ·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준임. · 하지만 센터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반)지하, 5층 이상인 곳이라도 비상대피시설 및 설비를 갖춘다면 권고기준으로 가능할 것 · 필수기준으로 변경 제시하고 비상대피시설 및 설비 확보의 경우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제시함.	
--	--



최종 권고기준(안) ❷	· (필수)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단,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필수기준(강행규정)
--------------	--

권고기준 ❸	· (권고)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조건 중 권고기준 03 “이용 대상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이 편리한 곳”에 대해 필수 적용에 대한 의견이 높음. ·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접근성은 센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필수 적용 필요 · 필수규정으로 변경 제시하고 접근성 지원과 안전성 확보한 경우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제시함.	
--	--



최종 권고기준(안) ❸	· (필수)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단, 차량제공 및 도보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시에는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필수기준(강행규정)
--------------	---

권고기준 ④	· (권고)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조건 중 권고기준 04 “일조,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에 대해 필수 적용에 대한 의견이 높음. ·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나, 조망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선택한 장소에 창의 개폐가 불가능 곳들이 있기 때문에 공조설비를 갖춘 경우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음. · 필수기준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단서 조항을 통해 권고사항 가능성 제시	



최종 권고기준(안) ④	· (필수) 일조 및 채광, 통풍에 장애가 없는 곳 (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 시에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음)
※ 필수기준(강행규정)	

권고기준 ⑤	· (권고)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	--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조건 중 권고기준 05 “바깥 활동(놀이터 등)이 가능하거나 시설을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에 대해 권고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이 높음. · 신체활동은 중요하나 입지적 조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센터 내 동적공간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권고기준으로 유지	



최종 권고기준(안) ⑤	· (권고)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 권고규정	

권고기준 ⑥	· (권고)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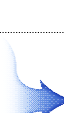


○ 전문가 주요 의견	
· 전문가들은 기존 입지조건 중 권고기준 06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에 대해 권고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이 높음. · 권고기준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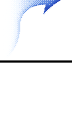
최종 권고기준(안) ⑥	· (권고)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 권고규정	

〈표 5-5〉 공간설치 기준 개선(안)

개선 (안)		최종 개선(안)
(필수)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아동1인당 3.3㎡ 이상)		(필수)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 이상일 것)
(권고)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것		(권고)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것 (단, 돌봄교사의 배치를 고려하고 설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예시: 15명 정원 75㎡(제곱미터) 이상 활동실 설치))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 마련		돌봄공간의 면적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필수기준 효율성 확인 후 점진적으로 유도기준 도입을 통한 면적 확대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강행 규정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 및 시설 설비 확충해야 하나, 공간의 경우에는 겸용사용을 허용)		(필수)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 사용하도록 하고,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사용이 가능하며, 화장실의 경우 센터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외부 화장실을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		(권고)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동적공간은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설치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 비율은 1:3으로 설치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비율은 1:3으로 설치 (단, 지역사회 공간자원과 연계가능한 경우에는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소형센터의 경우에는 가변형 설비 및 가구를 설치 경우 면적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 (단, 센터의 공간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권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개선 (안)		최종 개선(안)
아동 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		삭제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 기준 마련 및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권고)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 기준 마련 및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필수)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표 5-6〉 입지 기준 개선(안)

개선 (안)		최종 개선(안)
(권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필수)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권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필수)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단,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음)
(권고)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필수)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 (단, 차량제공 및 도보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시에는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음)
(권고)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필수) 일조 및 채광, 통풍에 장애가 없는 곳 (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 시에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음)
(권고)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권고)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권고)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권고)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3. 현장방문 결과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조사(동작 2호)를 통하여 거점형 센터의 역할 및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형 센터의 돌봄수요를 비롯하여 타 돌봄기관(일반형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보육원) 등)과 활발한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인근 돌봄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거점형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7㎡를 기준으로 설계됨에 따라 다양한 활동실 및 상담실이 구비되어있어, 아동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였음.
 - 비교적 일반형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실 및 구비된 기기, 설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 및 학부모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거점형 센터의 경우 미래기술(코딩, 로봇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 설비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필요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활동실 (1)



활동실 (2)



활동실 (3)-1



활동실 (3)-2



활동실 (4)-1



활동실 (4)-2



상담실 (1)



상담실 (2)

4. 공간설치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 의견

- 향후 고려해야 하는 추가 설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선택시 복수의 입지 후보지를 우선 선정하고 전문가 심의 혹은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센터 설치 프로세스 개선
- 둘째,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고려하여 친환경 마감재 사용 권고
- 셋째, 지역단위 거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및 지원 기반 마련
- 넷째, 다함께돌봄센터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위험을 고려하여 상가건물에 센터 설치 지양

5. 설치기준 개정(안)

- 총 15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으로 구성하였음(10건 신설, 2건 필수 개정, 1건 필수 신설, 2건 권고 유지).

〈표 5-7〉 최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

구분	필수/권고 여부	내용
면적 기준	필수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 이상일 것)
	권고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0㎡ 이상 확보할 것 (단, 돌봄교사의 배치를 고려하고 설치 현실성 등을 고려 하여 센터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예시: 15명 정원 75㎡(제곱미터) 이상 활동실 설치))
		돌봄공간의 면적 기준을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필수기준 효율성 확인 후 점진적으로 유도기준 도입을 통한 면적 확대
공간설치 기준	필수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 사용하도록 하고,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사용이 가능하며, 화장실의 경우 센터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외부 화장실을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공간구성 기준	권고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동적공간은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설치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비율은 1:3으로 설치 (단, 지역사회 공간자원과 연계가능한 경우에는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소형센터의 경우에는 가변형 설비 및 가구를 설치 경우 면적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권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 (단, 센터의 공간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

구분	필수/권고 여부	내용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설치 기준	권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권고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 기준 마련 및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입지조건	필수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권고 ▶ 필수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권고 ▶ 필수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단,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음)
	권고 ▶ 필수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 할 것 (단, 차량 제공 및 도보 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시에는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음)
	권고 ▶ 필수	일조 및 채광, 통풍에 장애가 없는 곳 (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 시에는 권고기준으로 할 수 있음)
	권고 유지	옥외 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 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권고 유지	건축 및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입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

제3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 주요 개정 내용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방과 후에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받고, 즐겁게 학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돌봄공간(놀이공간 및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일 것(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최소면적기준에 더하여 유도기준으로 아동 1인당 5㎡(제곱미터), 정원 15명 기준으로 전용면적 75㎡(제곱미터)를 제시함.

※ 현재 정원 기준인 20명을 15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규모는 작지만 환경이 쾌적한 센터를 더 많이 설치하는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전제로 함.

- 사무공간, 종사자휴게공간, 화장실 (남/여구분), 조리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각각 갖추 것.

☞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 사용 가능

- **(권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설치 할 수 있음.
- **(권고)**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고 면적비율을 1:3으로 설치하되 공간구분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입지 조건에 관한 개선(안)도 제시함.
- 소음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과 휴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함.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이어야 함.

☞ 단,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주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 일조 및 채광, 통풍, 환기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주

-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시설물 사용(도서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이어야 함.

2.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 이상의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21조의 2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표 5-8〉 「아동복지법」 21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
-	가. (신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한 휴식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 구성을 할 것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개정)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고 아동 1인당 면적은 3.3㎡ 이상으로 할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다. (개정)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남/여구분), 조리공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각각 갖출 것
-	라. (신설)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과 휴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 시행규칙의 개정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및 설비기준 개선의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의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5-9〉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개정(안)

현행 사업안내 (2023)	개정(안)
가.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하되,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가. 입지조건 ○ 변동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부와 건축 및 기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안(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용 빅데이터 분석모델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내 돌봄수요를 분석하여, 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변동없음

현행 사업안내 (2023)	개정(안)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청소년보호법 제31조) · 지역 내 아동의 학교, 주거지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아동의 도보 이용이 용이한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도보 이동이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경우, 차량배치 등 이용아동의 등·하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소 시부터 적용하여야 함	○ 변동없음
-	○ (신설)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과 휴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설)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함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다함께돌봄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신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에 설치하여야 함 (단, 화재 및 재난대피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주) ○ (신설) 일조 및 채광, 통풍, 환기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 한 경우 동일하게 간주)
권고사항 1.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 다함께돌봄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권고사항 1. 변동없음
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2. 변동없음
3.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3. 변동없음

현행 사업안내 (2023)	개정(안)
4.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4. 변동없음
5.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5. 변동없음
-	6. (신설) 시설물 사용(도서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마. 공간구성 ○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전용면적: 다함께돌봄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의미	마. 공간구성 ○ (개정)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 중 돌봄공간(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전용면적: 다함께돌봄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의미
-	○ (신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충분한 휴식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함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휴게공간, 상담실, 놀이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개정)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남/여구분), 조리공간, 종사자휴게 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각각 갖추 것 시설의 규모에 따라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 놀이터 등 필요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과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과 사무실, 종사자 휴게공간, 실외 놀이터, 조리공간, 기타 프로그램공간 등은 공동 사용 가능(다만, 공동 사용 면적은 센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화장실의 경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전용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 (개정)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과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과 실외 놀이터, 종사자휴게공간, 기타 프로그램공간 등은 공동 사용 가능(다만, 공동 사용 면적은 센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화장실의 경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전용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남/여로 구분한 전용화장실 설치 가능
○ 질 높은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에 반영	○ 변동없음
권고사항 1. 전용면적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기준이므로, 아동의 돌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각종 부속 공간(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면적은 별도 확보	권고사항 1. (개정) 전용면적 중 돌봄공간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는 최소 면적기준이며, 돌봄공간의 유도 면적 기준은 최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을 5㎡ 이상 확보할 것
2.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와 화장실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2. (개정)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는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3. 센터는 진입공간과 활동공간, 사무공간, 급/간식공간, 위생공간으로 구분 (진입공간) 아동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으로	3. 변동없음

현행 사업안내 (2023)	개정(안)
로 설치 · 아동 수에 맞게 신발장, 우산꽂이, 외투걸이 등을 둘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현관 설치 · 출입문 내/외부에 흙이나 먼지 털이가 가능한 매트 등 설치 · 우천 시에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차양 장치를 설치	
(활동공간)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과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2개실 이상 권고)하여 설치	(개정) (활동공간)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과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2개실 이상 권고)하여 <u>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비율은 1:3으로 설치</u> . 정적공간과 동적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 도어, 폴딩도어 등을 사용하여 융통성 있게 구분
(사무공간) 관리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은 종사자 휴게공간 및 학부모 상담공간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행정업무, 돌봄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	(개정) (사무공간) 관리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은 학부모 상담공간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행정업무, 돌봄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
(급 · 간식공간) 급 · 간식의 제공 여부 및 형태에 따라 주방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간식 준비 등을 위한 조리대 및 아동위생을 위한 싱크대 등을 설치	변동없음
(위생공간) 화장실은 남/여로 구분하고, 세면대는 아동의 신장을 고려한 높이로 설치	(개정) (위생공간) 화장실은 남/여로 구분하고, 세면대와 변기는 <u>아동발달을 고려한 높이와 크기로 설치</u>

제6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제언

제6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 국내·외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공간기준 현황

1) 국내 현황

- 초등돌봄서비스별 설치 및 설비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내 설치(초등돌봄교실), 수련시설 및 공공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조건을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관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제 1, 2종), 노유자 시설 등 비교적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법령 및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을 동일한 기준인 3.3㎡(제곱미터)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1명당 전용면적(3.3㎡) 및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의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소 전용면적을 66㎡로 권고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해외 현황

-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와 달리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관된 규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다만, 사례로 제시한 국가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아동수 등에 따라 아동 1명당 필요한 최소한의 실내 공간 크기를 규정하고 있음.
- 실내 공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로, 화장실, 수납/창고 공간, 직원/업무 공간, 주방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아동의 활동을 위한 순수 공간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아동 1명당 최소 2.3㎡(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최대 5㎡(미국, 총무청)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한편, 미국의 '아동보육 및 조기교육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자원센터'에서는 집단 크기와 교사/아동비율, 공간사용의 효율성과 교사 지도감독의 용이성, 프로그램 실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 1명당 최소 3.9㎡, 적정 4.5㎡의 실내 공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실외 공간의 경우 특별히 공간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보다는 실외 놀이 공간의 필요성을 권고한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이를 규정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아동 1인당 약 7.0㎡ 실외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11.48㎡ 이상의 놀이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2.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자료 분석

1) 설치 현황

- 2022년 6월 기준 전국 760개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울시(222개소), 경기도(188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고, 두 지역이 전체 센터 중 53.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 서울시는 노원구가 2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로구 18개소, 송파구 17개소, 동작과 영등포구가 각각 14개소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는 성남시가 2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산시 20개소, 시흥시 15개소, 수원시와 용인시가 각각 11개소 순으로 나타남.

2) 공간 특성

① 면적 특성

- 전체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130.0㎡이며, 1인당 평균 전용면적(정원 기준)은 5.1㎡로 현행 기준 1인당 3.3㎡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② 공간사용 방법

- 센터의 공간사용 방법은 겸용사용이 93.0%이며, 겸용사용의 경우 복합된 시설로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29.6%로 가장 많음.

③ 공간 위치(층수)

- 센터의 사용 층수 유형은 다층형이 90.8%로 단층형에 비해 많음. 다층형의 평균 전용면적이 203.6㎡로 단층형 122.6㎡에 비해 넓으며, 1인당 평균 전용면적도 다층형이 6.0㎡로 단층형 5.0㎡보다 큼. 다층형의 경우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20.8%로 단층형 9.2%에 비해 높음.
- 지하층을 사용하는 센터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152.8㎡로 지상층만 사용하는 센터 128.5㎡보다 크나, 1인당 전용면적은 지상층 사용센터가 5.1㎡로 지하층 사용센터 4.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유형별 공간 위치(층수) 특성은 단층형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공행정의료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층형은 마을 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 단위주호, 근린생활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많음. 겸용사용시 지하층 사용은 아파트주민공동시설과 아동청소년 돌봄 및 가족시설이 많음.

④ 공간구성 특성

- 전체 활동실 수는 평균 3.1개이며, 전용 활동실은 평균 2.2개소, 공용 활동실 수는 1.5개로 나타남.

3) 운영 특성

① 이용자 특성

- 평균 정원은 25명으로 남아 12.7명, 여아 13.3명임. 학년은 1학년이 평균 8.1명 작년이 평균 7.9명, 3학년이 4.8명, 4학년이 2.8명, 5학년이 1.4명, 6학년이 0.6명 순으로 저학년 비율이 높음.
- 평균 돌봄교사수는 2.1명임.

② 프로그램 특성

- 98.9%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예체능이 96.3%로 가장 많음. 평균 운영 프로그램 수는 2.4개임.

3. 설문조사

1) 일반적 특성

① 공간구성 특성

- 지역은 경기도가 36.8%, 서울 32.2%로 주로 수도권 센터에서 응답됨.
- 조사대상 센터는 겸용사용이 67.8%로 단독사용 32.2%보다 많이 조사됨. 겸용사용시 복합화 시설 종류는 아파트주민공동시설이 32.2%, 근린생활시설이 25.4% 순임.

② 면적 특성

- 평균 전용면적은 127.9㎡로 1인당 평균 전용면적 5.2㎡임.

③ 이용자 특성

- 평균 정원은 25.1명이며, 현원은 23.7명임. 남아가 평균 11.7명으로 여아는 12.0명임.
- 1학년 평균 6.8명, 2학년은 평균 7.5명, 3학년은 5.3명, 4학년 2.2명, 5학년 1.4명, 6학년 0.5명 순으로 전체 센터 현황자료 분석 결과와 같이 저학년 비율이 높음.

2) 공간 특성

① 활동실 현황

- 전체 활동실 수는 평균 2.3개이며, 전용 활동실은 평균 2.1개, 공용 활동실은 평균 0.4개로 조사됨.
- 전체 활동실의 평균 면적은 109.2㎡임.

② 센터 공간구성 특성

- 활동실은 경우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72.4%이며, 이들 센터의 공간구성 특성은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 설치’가 66.7%임.
- 이러한 공간구성 특성으로 인해, 개방형 의견에서는 각 공간의 협소와 막힌 공간으로 인한 공간 협소와 아동 관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제기됨.

③ 활동실 이외 공간 특성

- 활동실 이외 설치된 공간으로는 사무공간이 9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장실 81.6%, 조리공간 63.2% 순임.
- 공간 사용방식은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식사공간, 배식공간,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실내놀이공간, 양호실, 세탁공간, 창고는 전용사용 비율이 높고, 옥외놀이공간 실내체육공간, 도서관, 대피공간 등은 공용사용 비율이 높음.

④ 사용층 수 특성

- 센터 사용층 수는 단층형이 69.0%로 다층형 31.0%보다 많음,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8.0%임. 지하층이 있는 경우 활동실로 사용하는 비율이 4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공간 28.6%, 조리공간과 화장실이 각각 14.3%임. 5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는 3.4%이며, 모두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음.

3) 프로그램 특성

① 프로그램 운영 특성

-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및 학습외 교육을 모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놀이프로그램이 89.6%, 미술프로그램 97.7%, 독서논술프로그램 96.6%, 체육 프로그램 94.3%, 취미체험프로그램 92.0%, 자치활동프로그램 90.8% 순임.

② 운영 프로그램별 공간 사용 방법

- 미술, 교과목 및 학습, 컴퓨터, 독서논술, 교과 및 학습외 교육, 놀이, 자치활동프로그램은 공간을 전용사용 하는 비율이 높으며, 음악, 체육, 취미체험, 문화예술, 심리정서, 연극 및 뮤지컬프로그램은 공용사용 비율이 높음.

③ 프로그램별 공간문제

- 독서, 교과 및 학습, 놀이, 자치, 연극 및 뮤지컬프로그램은 인원대비 공간 협소의 문제를, 심리정서프로그램은 인원대비 공간협소와 운영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제시함. 주로 프로그램실의 공간협소의 문제가 제시됨.

4) 공간평가 및 개선

① 입지 및 설비평가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 디자인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디자인은 개선 의견이 가장 높게 요구되고 있음.

② 설치 공간별 평가 및 개선

- 휴식 및 수면 공간이 2.47점으로 가장 높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휴식 및 수면 공간의 미설치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있음.
-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식사공간, 배식공간, 실내놀이공간, 실태체육공간, 도서관, 창고 등은 공간 협소의 문제를 제시함.
- 화장실은 공간구성의 문제를 제시함.
- 상담실, 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옥외놀이공간, 도서관, 양호식, 옥상, 대피공간, 세탁 공간은 공간종류의 부족 문제를 제시함.
- 개선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휴식 및 수면공간이 6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내 놀이공간, 사무공간, 활동실, 상담실, 회의실 순임.

③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가설치 공간

- 추가설치 요구가 높은 시설로는 휴식 및 수면 공간이 7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실, 상담실, 양호실, 실내체육공간 순임. 아동권리 관점에서도 휴식 및 수면 공간의 요구가 높음.

4.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센터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 결과, 돌봄공간에 대한 면적기준 설정에 동의하였고, 장기적으로 더 확대된 기준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현재 설치기준인 전용면적(1인당 3.3㎡), 또는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돌봄공간(놀이공간 및 활동실)만의 전용면적(1인당 3.3㎡)의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기 보다는 최소 돌봄공간 전용면적의 기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현재 전용면적의 기준은 아동 1인당 3.3㎡(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기준이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놀이 공간 및 활동실을 의미하는 ‘돌봄공간’의 기준으로서 66㎡(제곱미터), 1인당 3.3㎡(제곱미터)의 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20명 정원을 기준을 66㎡(제곱미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임대공간이 커서 정원이 많은 센터의 경우 공간, 프로그램, 아동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4㎡(제곱미터))와 같이 지자체 자체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다 여유있는 공간에 대한 유도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규모가 작더라도 보다 촘촘한 돌봄육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기준을 15명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아동 1인당 5㎡(제곱미터), 센터 돌봄면적 75㎡(제곱미터) 정도의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공간기준의 확대는 물론, 기본적인 휴식을 위한 분리된 공간과 상담실에 대한 욕구가 일관되게 나타남.
- 장애아동을 위한 설비 (계단, 화장실 등) 및 인력배치에 대한 요구도 나타남.
- 센터의 특성상 아동의 이동이 유동적이므로 작더라도 급배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해진 시간에 급간식을 먹기 힘든 아동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센터 이용의 요구 및 프로그램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공간구성이 지역 요구에 맞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저학년이 많은 경우 신체활동 및 실외활동에 대한 욕구, 휴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고학년은 학습 위주의 정적인 활동이 필요함.

☞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등하원이 매우 유동적으로 이루어져 공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 다문화가족 및 소득이 낮은 가족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봄시간 동안 학습지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독립된 정적인 공간이 필요함.

- 센터 주변 유해시설 및 교통안전, 화재시 대피(2층 이상인 경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5년 임대로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상가의 타공간의 업종이 변경되는 부분을 지적함.
☞ 학교에서 도보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센터도 있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구청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방과후에 아동들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이용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높음.

☞ 특히 학교와의 연계를 많이 원하고 있었으나 센터장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장이나 교육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호소함.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단위 내 거점형 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의 틈새돌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내 교육청, 학교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주민, 도서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최종 개정(안)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정(안)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방과 후에 적절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받고, 즐겁게 학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돌봄공간(놀이공간 및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일 것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최소면적기준에 더하여 유도기준으로 아동 1인당 5㎡(제곱미터), 정원 15명 기준으로 전용면적 75㎡(제곱미터)를 제시함.

※ 현재 정원 기준인 20명을 15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규모는 작지만 환경이 쾌적한 센터를 더 많이 설치하는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전제로 함.

- 사무공간, 종사자휴게공간, 화장실 (남/여 구분), 조리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각각 갖추어 것 (사무공간과 화장실은 전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휴게공간은 타 시설과 겸용 사용 가능).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설치 할 수 있음 (권

고사항).

-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고 면적비율을 1:3으로 설치하되 공간구분은 가변형 벽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권고사항).

2)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개선(안)

- 소음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과 휴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50m(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함.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에 설치하여야 함 (단, 화재 및 재난대비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간주).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 일조 및 채광, 통풍, 환기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통풍 및 환기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환기 및 배기시설 확충한 경우 동일하게 간주).
-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권고사항).
- 시설물 사용(도서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권고사항).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1) 아동권리에 근거한 설치 및 공간기준 마련의 필요성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 및 공간구성 기준 고안

-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에서 일관되게 아동의 휴식을 위한 공간과 아동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실무자의 요구가 높았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것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방과후 아동의 휴식과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의 우선적 설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일상에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수록 필요에 따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전용면적의 면적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공간구성의 문제로 기본적인 간식섭취 및 휴식 시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공간 기준과 설비 기준(예: 계단, 아동용 변기)에 있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 및 욕구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장애아동을 고려한 설비 및 공간구성의 필요성 대두

- 경계성 장애 또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센터 내 장애아동을 위한 설치기준(계단, 화장실 등)과 공간구성의 주의가 요구됨.
- 다함께돌봄센터가 장애아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2)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지역 내 틈새돌봄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 요구

-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결과 현재 공간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동적 공간의 확보로 나타남.
- 이러한 동적 공간의 확보는 센터 외부의 놀이터,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센터의 입장에서는 학교와의 소통 및 연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틈새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로서는 모든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지역 내 학교 또는 체육시설을 통한 공간확보가 가능하나, 이는 지역교육청이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함.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협의체 구성과 공간 공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3) 거점형 돌봄센터의 확충

지역단위로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공간,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지원 체계 구축

- ‘다함께 돌봄센터’의 특성상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형, 거점형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내 마을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연계하고, 소규모 마을 돌봄시설에 돌봄공간 및 돌봄 자원(ex, 문화,예술,체육 활동 콘텐츠 및 강사 지원)을 지원하며, 지역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과 같은 거점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단위로 거점형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내 소규모 돌봄시설에 공간,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음.

4) 효과적인 공간구성을 위한 지역 내 돌봄수요 가정의 특성 파악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분석

- 연구결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아파트 밀집도, 다문화가정 비율,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용아동의 연령, 정원충족 정도, 대기인원 등 센터이용 아동의 구성과 수요가 다양하였고, 센터에 기대하는 활동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남.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발굴과정에 해당 지역의 돌봄수요 가정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향후과제 제언

- 향후 과제로 지역 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센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돌봄센터 규모에 대한 고민과 돌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그리고 전문가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공간의 부족과 더불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었음.

-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분리하거나, 2개 이상의 활동실을 갖추도록 공간구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럴 경우 아동의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
- 센터 외부의 놀이터, 도서관, 학교시설 등과의 연계가 추진될 필요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럴 경우 아동을 인솔하여 이동할 추가인력이 필요하므로, 센터의 요구와 현황 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돌봄인력이 공간구분을 위해 가구를 옮기고, 자체적으로 설비를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분히 휴식하거나 편하게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함.
-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나, 급간식 제공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설비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의 부족으로 아동 돌봄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존재함.
- 장기적으로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목표로 정원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의 정원 기준인 20명은 제한된 돌봄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정원에 정비례하여 공간의 기준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공간 관리에 어려움과 함께 인력의 부족으로 아동 안전사고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원기준을 하향조정하여 15명 정도로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적합한 설치 및 공간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틈새돌봄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9).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522 에서 2023년 6월 19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시행계획(안).
- 김미숙, 백선희, 이철선, 배화옥, 서문희, 이주연, 하태정(2012). 친서민적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II: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정, 장미(2020). 경기도 초등돌봄시설 환경의 아동돌봄 적합성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보건복지부.
- 남승연(2021). 경기도 초등 방과후돌봄 수요공급 분석.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2023a).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b).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아동권리보장원(2020).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
- 이혜숙, 이영주(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 조진일, 김홍원, 최형주, 손종렬(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22 개정판).
- 한성민(2019).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연구개발원.
-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Early Childhood Facilities: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Singapore. (2019). Guidelines for Student Care Centres.
- The Scottish Government. (2009). National Care Standards: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Up to the Age of 16.
- The Scottish Government. (2017). Space to Grow: Design Guidance for Early Learning and Childcare and Out of School Care Settings.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03). 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

부 록

1.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설문지
2.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3. 공무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4. 전문가 자문 조사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사용현황 및 개선에 대한 현장실무자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시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통계법 제 33조). 각 문항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사주관 : 보건복지부, 중앙대학교
-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 조사문의 : 이지혜 연구보조원(jihyewish@naver.com)

- ※ 끝까지 응답해주신 분께는 답례품(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 답례품 수신을 위해 아래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사용현황 및 개선에 대한 현장실무자 의견 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 이용의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사용현황 및 개선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설문조사 검증
 - 설문조사 사은품 발송을 위한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연락처
 3. 동의서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목적 종료 시까지 및 종료 후 즉시 파기
- 상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는 본 조사 수행 및 사은품 발송 외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연락처를 기입하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 - () - ()	동의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다음은 센터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I. 센터 공간 현황

I-1. 센터명 (행복e음에 등록된 명칭)			
I-2. 센터주소 (도로명 주소)		I-3. 센터 전체 전용면적 (단위: m ²)	_____ m ²
I-4. 센터건물 타 시설과의 겸용사용 여부 (설명 참조)	☐ 단독 사용 ☐ 겸용 사용	[설명] • 단독 사용: 단독건물(단독주택, 단일빌딩 등)로 구성되어 타 시설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본 다함께돌봄센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전용 화장실, 전용 현관, 전용 활동실 등 모든 시설과 공간이 단독으로 사용) • 겸용 사용: 하나의 건물 및 주택에 타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현관,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공간과 설비를 겸용으로 사용)	
I-5. 겸용 사용 센터의 경우, 겸용 사용하는 시설 종류 선택 (택 1)	☐ 마을커뮤니티공간: 마을카페,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생활SOC 등 커뮤니티공간 내 설치된 유형 ☐ 아파트주민공동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설치된 유형 ☐ 공동주택 단위주택: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설치된 유형(예: 101동 101호) ☐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아파트 상가 및 지역편의시설 내 설치된 유형 ☐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회관,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시설 내 설치된 유형 ☐ 근린생활시설: 상가, 오피스 등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된 유형(1종, 2종 포함) ☐ 종교시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내 설치된 유형 ☐ 공공행정의료시설: 주민자치센터,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 공공행정의료시설 내 설치된 유형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내 설치된 유형 ☐ 문화시설: 문화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내 설치된 유형 ☐ 돌봄 및 가족시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센터,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돌봄 및 가족시설 내 설치된 유형 ☐ 기타: ()		

II. 이용자 현황 (명)

II-1. 정원	_____명	II-4. 현원 현황	☐ 총 _____명 ☐ 정기돌봄 _____명 ☐ 일시돌봄 ²⁰⁾ _____명
II-2. 정원 성별	☐ 남 _____명 ☐ 여 _____명 ☐ 성별 구분 없이 모집	II-5. 현원 성별 현황 (정기돌봄 이용자 기준)	☐ 남 _____명 ☐ 여 _____명
II-3. 학년(별) 정원	☐ 1학년 _____명 ☐ 2학년 _____명 ☐ 3학년 _____명 ☐ 4학년 _____명 ☐ 5학년 _____명 ☐ 6학년 _____명 ☐ 학년 구분 없이 모집	II-6. 현원 학년(별) 현황 (정기돌봄 이용자 기준)	☐ 1학년 _____명 ☐ 2학년 _____명 ☐ 3학년 _____명 ☐ 4학년 _____명 ☐ 5학년 _____명 ☐ 6학년 _____명

III. 종사자 현황 (명)

III-1. 센터장	_____명		
III-2. 돌봄 선생님 수	_____명	III-3. 기타 종사자 수	_____명

A. 다음은 귀 센터의 공간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귀 센터의 아동 돌봄을 위한 활동실은 총 몇 개입니까?

전체 활동실 수 ①	전용사용 활동실 수 ②	공용사용 활동실 수 ③
() 개	() 개	() 개

[설명]

활동실 : 기본적인 돌봄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으로 아동의 휴식과 놀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

전체 활동실 수(①) : 전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활동실의 총합 (②+③)

전용사용 활동실 수(②) : 활동실을 귀 센터만의 활동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용사용 활동실 수(③) : 활동실을 타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A1-1. 귀 센터의 아동 돌봄을 위한 활동실에는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구분하여 갖추고 있습니까?

- ☐ 1) 구분되어 있다 ☐ 2) 구분되어 있지 않다.

[설명]

정적공간 : 정적공간은 학습, 독서 등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소음이 적은 활동을 하는 공간을 의미함

동적공간 : 동적공간은 음악, 댄스 등 비교적 움직임이 크고 소음이 큰 활동을 하는 공간을 의미함

A1-2. (※ A1-1에 ‘구분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그렇다면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1) 별도의 출입구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가 있다.
- 2) 별도의 출입구는 있지만 사용에 따라 벽체를 이용하여(가변형 벽체)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하나의 공간을 커튼, 낮은 책장,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4) 기타()

A2. 귀 센터의 아동 돌봄을 위한 활동실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의 활동과 돌봄을 위한 ‘활동실’ 면적 기입)

[설명]

‘활동실’ 면적을 알고 있는 경우 기입할 것. 단, 활동실이 1개 이상일 경우, 총 합산 면적으로 기재

20) 일시돌봄 현원=최근 한 달 간 일시돌봄 이용 아동 수(명) ÷ 운영일 수(일) (소숫점 이하 올림하여 기재)

예시) 최근 한 달 동안 일시돌봄 이용 아동 수(65명) ÷ 운영일수(20일) = 4명

A3. 귀 센터의 활동실 이외 공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치된 공간별 개수와 사용방법도 함께 체크해주시시오.

운영공간	공간 개수	공간 사용 방법		활동실 활용 여부 (※ 해당 운영공간을 활동실로 겸용활용 여부)	
		전용사용	공용사용	예	아니오
① 사무공간	(개)	☐	☐	☐	☐
② 화장실	(개)	☐	☐	☐	☐
③ 조리공간	(개)	☐	☐	☐	☐
④ 식사공간	(개)	☐	☐	☐	☐
⑤ 배식공간	(개)	☐	☐	☐	☐
⑥ 상담실	(개)	☐	☐	☐	☐
⑦ 회의실	(개)	☐	☐	☐	☐
⑧ 휴식 및 수면공간	(개)	☐	☐	☐	☐
⑨ 옥외놀이공간 (마당, 놀이터 등)	(개)	☐	☐	☐	☐
⑩ 실내놀이공간	(개)	☐	☐	☐	☐
⑪ 실내체육공간	(개)	☐	☐	☐	☐
⑫ 도서관	(개)	☐	☐	☐	☐
⑬ 양호실 (보건실 및 격리실)	(개)	☐	☐	☐	☐
⑭ 옥상 (옥상텃밭 등)	(개)	☐	☐	☐	☐
⑮ 대피공간	(개)	☐	☐	☐	☐
⑯ 세탁공간	(개)	☐	☐	☐	☐
⑰ 창고	(개)	☐	☐	☐	☐
⑱ 기타	(개)	☐	☐	☐	☐

A4. 귀 센터에서 사용층수의 구성은 어떻게습니까?

- ☐ 1) 단층형
 ☐ 2) 다층형

[설명]

단층형 : 현재 센터에서 사용하는 층이 1개로 구성된 경우(예: 센터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층만 이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 층수가 1개 층만 사용하고 있어 단층형에 응답)

다층형 : 현재 센터에서 사용하는 층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예: 센터가 5층, 6층, 7층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 다층형에 응답)

A5. 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층이 (반)지하층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 1) 예(A5-1로 이동)
 ☐ 2) 아니오(A6으로 이동)

A5-1. 귀 센터의 지하 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1) 활동실
 ☐ 2) 사무공간

☐ 3) 상담공간
 ☐ 4) 조리공간

☐ 5) 화장실
 ☐ 6) 창고

☐ 7) 기타(
)

A6. 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층이 5층 이상의 층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 1) 예(A6-1로 이동)
- ☐ 2) 아니오(B1로 이동)

A6-1. 귀 센터가 5층 이상의 층에 위치한 경우, 재난시 대피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 1) 예
- ☐ 2) 아니오

B. 다음은 귀 센터의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 센터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설명]

전용사용 : 센터내 전용공간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용사용 : 센터내 전용공간이 없어 다른 곳의 프로그램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영역	운영 프로그램 여부	공간사용방법 (택 1)		프로그램진행공간 실내외유무 (택 1)		프로그램운영시 공간 문제 (모두 기입해 주세요.)
		전용사용	공용사용	실내공간	실외공간	① 문제없음 ① 프로그램 운영인원 대비 공간의 협소 ② 프로그램 특성 대비 공간의 협소 ③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 및 비품(가구 등) 부족 ④ 프로그램 운영 비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 부족 ⑤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으로 공용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⑥ 프로그램 실의 위치(지하, 고층, 다층 등) ⑦ 프로그램 실의 부족 ⑧ 기타()
음악	☐	☐	☐	☐	☐	()
미술	☐	☐	☐	☐	☐	()
체육 (댄스, 요가, 줄넘기 등)	☐	☐	☐	☐	☐	()
교과목 및 학습 (교과학습, 외국어, 한자 등)	☐	☐	☐	☐	☐	()
컴퓨터 (코딩, 3D펜, 로봇, 컴퓨터프로그램 등)	☐	☐	☐	☐	☐	()
취미체험 (요리, 원예, 만들기 등)	☐	☐	☐	☐	☐	()
문화예술체험 (영화, 공연 관람 등)	☐	☐	☐	☐	☐	()
독서논술 (독서활동 및 논술)	☐	☐	☐	☐	☐	()
교과 및 학습 외 교육 (인권, 안전, 경제, 영양 등)	☐	☐	☐	☐	☐	()

놀이 (보드게임, 전통놀이 등)	☐	☐	☐	☐	☐	()
심리정서활동	☐	☐	☐	☐	☐	()
연극, 뮤지컬 등	☐	☐	☐	☐	☐	()
자치활동	☐	☐	☐	☐	☐	()
기타 ()	☐	☐	☐	☐	☐	()

B2. 귀 센터가 프로그램 운영시 공간 및 시설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 1) 프로그램 실의 면적 ☐ 2) 프로그램 실의 수
☐ 3) 프로그램 실의 위치 ☐ 4) 프로그램 실의 설비 및 비품
☐ 5) 기타()

C. 다음은 귀 센터의 급·간식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 센터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C2. 귀 센터의 급간식 제공 방식은 무엇입니까?

- ☐ 1) 조리 ☐ 2) 매식 ☐ 3) 조식 및 매식 혼합제공
☐ 4) 밥만 제공 ☐ 5) 제공하지 않음

[설명]

매식 : 센터에서 조리하지 않고(밥만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 도시락배달, 외부식당용, 조리음식 배달 후 센터에서 배식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D. 다음은 귀 센터의 공간평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D1. 다음은 귀 센터의 입지 및 설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 주세요. 각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입지 및 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각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센터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다	☐	☐	☐	☐	☐	
(반)지하 또는 5층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아동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	☐	☐	☐	☐	☐	
급배수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수질에 문제가 없다	☐	☐	☐	☐	☐	
센터의 배수에 문제가 없다	☐	☐	☐	☐	☐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및 방화설비가 잘 갖춰 있다	☐	☐	☐	☐	☐	

화재 및 재난시 대비를 위한 비상구를 잘 갖추고 있다	☐	☐	☐	☐	☐	
화재에 잘 대응하기 방염성능 기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	☐	☐	☐	☐	
채광을 위한 창문과 설비가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	☐	☐	☐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창문 및 환기 설비가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	☐	☐	☐	
실내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	☐	☐	☐	☐	
계단의 난간이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	☐	☐	☐	☐	☐	
센터의 복도는 센터 이용 아동수를 고려하여 그 폭이 충분하여 이용 및 대비에 문제가 없다	☐	☐	☐	☐	☐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공간과 시설이 디자인되어 있다(문턱제거, 슬라이딩도어,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	☐	☐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	☐	☐	☐	☐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도어락 사용, 초인종 사용 등으로 센터 출입의 사람을 통제)	☐	☐	☐	☐	☐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가구를 구비하고 있다	☐	☐	☐	☐	☐	

D2. 다음은 귀 센터의 공간구성 및 면적, 사용충수, 설비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해당 공간 없음	다음 각 공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모두 기입해 주세요.)	개선 의견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있다	매우 문제있다	㉠ 문제없음 ㉡ 공간이 너무 협소 ㉢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종류 부족 ㉣ 공간구성의 문제(배치 등) ㉤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충수의 문제 ㉥ 공간 용도에 맞지 않는 가구 및 설비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공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개선이 필요한 곳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활동실(센터 내 아동의 돌봄과 활동 공간)	☐	☐	☐	☐	☐	()	☐	
사무공간	☐	☐	☐	☐	☐	()	☐	
화장실	☐	☐	☐	☐	☐	()	☐	
조리공간	☐	☐	☐	☐	☐	()	☐	
식사공간	☐	☐	☐	☐	☐	()	☐	
배식공간	☐	☐	☐	☐	☐	()	☐	

상담실	☐	☐	☐	☐	☐	()	☐	
회의실	☐	☐	☐	☐	☐	()	☐	
휴식 및 수면공간	☐	☐	☐	☐	☐	()	☐	
옥외놀이공간(마당, 놀이터 등)	☐	☐	☐	☐	☐	()	☐	
실내 놀이공간	☐	☐	☐	☐	☐	()	☐	
실내체육공간	☐	☐	☐	☐	☐	()	☐	
도서관	☐	☐	☐	☐	☐	()	☐	
양호실(보건실 및 격리실 등)	☐	☐	☐	☐	☐	()	☐	
옥상(옥상텃밭 등)	☐	☐	☐	☐	☐	()	☐	
대피공간	☐	☐	☐	☐	☐	()	☐	
세탁공간	☐	☐	☐	☐	☐	()	☐	
창고	☐	☐	☐	☐	☐	()	☐	
기타()	☐	☐	☐	☐	☐	()	☐	

D3. (다음은 귀 센터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아동의 돌봄과 권리보장을 위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공간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공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활동실(센터 내 아동의 돌봄과 활동 공간)	☐
사무공간	☐
화장실	☐
조리공간	☐
식사공간	☐
배식공간	☐
상담실	☐
회의실	☐
휴식 및 수면공간	☐
옥외놀이공간(마당, 놀이터 등)	☐
실내 놀이공간	☐
실내체육공간	☐
도서관	☐
양호실(보건실 및 격리실 등)	☐
옥상(옥상텃밭 등)	☐
대피공간	☐
세탁공간	☐
창고	☐
기타()	☐

D4. 다음은 귀 센터 공간에 대한 아동권리 관점의 평가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주세요. 아동의 권리를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동의 발달권 보장(아동의 연령 및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다양한 공간 제공)	☐	☐	☐	☐
아동의 보호권 보장(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 마련)	☐	☐	☐	☐
아동의 참여권 보장(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프로그램 참여 보장 및 공간사용 보장)	☐	☐	☐	☐
아동의 생존권 보장(아동의 생존을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마련, 건강한 식사제공 등)	☐	☐	☐	☐
아동의 놀이권 보장(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 마련)	☐	☐	☐	☐

E. 다음은 귀 센터의 공간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기준 설정 시 중요한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유해시설 등이 없는 환경 등)	☐	☐	☐	☐
센터의 안전성 확보(센터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화재, 범죄 관련 설치 확보)	☐	☐	☐	☐
센터로의 접근성(이동거리, 등하원 지도 등)	☐	☐	☐	☐
센터의 전체 면적 기준 확대	☐	☐	☐	☐
센터 활동실 면적 기준 확대	☐	☐	☐	☐
아동의 발달 상태고려(연령 및 발달 정도 등)	☐	☐	☐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	☐
청결 및 쾌적한 환경 마련	☐	☐	☐	☐
편리한 환경 구성	☐	☐	☐	☐
종사자를 위한 공간 마련	☐	☐	☐	☐
옥외공간 마련	☐	☐	☐	☐
휴게공간 마련	☐	☐	☐	☐
아동을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구성	☐	☐	☐	☐
아동의 보호권 증대	☐	☐	☐	☐
아동의 참여권 보장	☐	☐	☐	☐
아동의 생존권 보장(건강 지원, 안전지원 등)	☐	☐	☐	☐
아동의 놀이권 보장	☐	☐	☐	☐
아동의 자율권 보장	☐	☐	☐	☐

E2. 귀하는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기준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 | | |
|--|-------------------------------------|
| ☐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 2) 동의하지 않음 |
| ☐ 3) 동의함 | ☐ 4) 매우 동의함 |

E2-1. (E2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3. 귀하는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기준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공간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 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 | | |
|--|-------------------------------------|
| ☐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 2) 동의하지 않음 |
| ☐ 3) 동의함 | ☐ 4) 매우 동의함 |

E3-1. (E3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4. 귀하는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기준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 | | |
|--|-------------------------------------|
| ☐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 2) 동의하지 않음 |
| ☐ 3) 동의함 | ☐ 4) 매우 동의함 |

E4-1. (E4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5. 이외 다른 공간 개선을 위해 제안하기 위한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F. 응답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정보는 설문 참여자의 전체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만 사용되오니 안심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F1. 성별	☐ 1) 남자 ☐ 2) 여자
F2. 연령	만 () 세
F3. 향후 인터뷰 참여 가능 여부	☐ 1) 가능 ☐ 2) 불가능
F4. 센터 도면 공개 가능 유무	☐ 1) 가능 (가능한 경우, 담당자 메일(jihyewish@naver.com)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2) 불가능

-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 연구」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질문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 연구(가칭)’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시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 특성

1) 연령	만 ()세		2) 성별	☐ 남	☐ 여
3-1) 소속			3-2) 지위		
4)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전문대 / 4년제	5) 전공		
	☐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6) 현 기관 근무 경력	()년 ()개월		7) 총 근무 경력	()년 ()개월	
8) 보유 자격증					

■ 다함께돌봄센터 특성

1-1) 센터 전체 전용면적(㎡)			1-2) 활동실 전용면적(㎡)	
2) 타 시설과의 겸용사용 여부	☐ 단독사용	☐ 겸용사용 (겸용하는 타 시설 종류:)		

1.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특성

1) 귀 센터의 **활동실 전용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귀 센터의 **활동실 외 공간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무공간, 조리·배식·식사공간, 화장실, 상담·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대피공간, 창고 등

3)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기준 이외에 **지자체별 권고 전용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기준: 최소 66㎡, 아동 1인당 3.3㎡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개선(안)

1)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 및 설비 기준(공간구성, 면적, 사용충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정성 ((반)지하 또는 5층이상, 센터 50m 반경 내 청소년유해업소 제한)

· 설비 (급배수, 소화시설 및 방화설비, 비상구, 환기설비 구비 등)

· 시설 (채광을 위한 창문, 계단의 난간, 복도, 장애아동 시설, CCTV, 출입문 보완장치, 아동 가구 구비 등)

2) 귀 센터에서 **아동의 돌봄과 휴식**을 위해 귀 센터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3) 귀 센터의 **이용 아동 및 학부모로부터 공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받은 경험**이 있나요?

3.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특성

1) 귀 센터가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2) 귀 센터가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 및 시설의 문제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실 면적, 수, 위치, 설비 및 비품) 무엇이 있나요?

프로그램 유형: 음악, 미술, 체육, 교과목 및 학습, 컴퓨터, 취미체험, 문화예술체험, 심리정서활동 등

4. 정책 욕구

1) 귀 센터가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정책(지원)**(예, 운영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진행, 학습기기 지원 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향후 바람직한 서울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정책 방향**(예, 사업 내용, 연계 형태, 사업 방식이나 초점, 인력 확충 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5.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1) 귀 기관은 **지역사회 내 타 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하고 있나요? 연계하고 있으시다면, 어떠한 측면(예,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공간, 인력 등)에서 **연계**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부록 3. 현장 실무자 표적집단면접(FGI) 질문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 연구」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공무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질문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개선 연구(가칭)’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 특성

1) 연령	만 ()세	2) 성별	☐ 남	☐ 여
3-1) 소속		3-2) 지위		
4)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전문대 / 4년제 ☐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5) 전공		
6) 현 기관 근무 경력	()년 ()개월	7) 총 근무 경력	()년 ()개월	
8) 보유 자격증				

■ 다함께돌봄센터 특성

1-1) 현재 소속 지자체 내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수(개)	()개
---	----------

1.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특성

1)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의 활동실 전용면적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의 활동실 외 공간면적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무공간, 조리·배식·식사공간, 화장실, 상담·회의실, 휴식 및 수면공간, 대피공간, 창고 등
3)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기준 이외에 지자체별 권고 전용면적 기준(전용면적 세부 면적기준 등) 이 있습니까? ※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기준: 최소 66㎡, 아동 1인당 3.3㎡
4) 소속 지자체는 별도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공간 설치 매뉴얼, 가이드라인, 사업안내 지침서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2.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개선(안)

1)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 및 설비 기준(공간구성, 면적, 사용층수 등) 으로 센터 설치 및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안정성 ((반)지하 또는 5층이상, 센터 50m 반경 내 청소년유해업소 제한) · 설비 (급배수, 소화시설 및 방화설비, 비상구, 환기설비 구비 등) · 시설 (채광을 위한 창문, 계단의 난간, 복도, 장애아동 시설, CCTV, 출입문 보완장치, 아동 가구 구비 등)
2)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 및 학부모로부터 공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받은 경험 이 있나요?
3)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및 설비 기준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아래의 면적 및 공간 개선(안)(향후 센터 선정 및 설치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평가해 주세요. 4-1) 면적 기준 개선(안)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4-2) 공간 기준 개선(안) • 돌봄공간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 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3.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특성

1)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 및 학부모로부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받은 경험 이 있나요?

4. 정책 욕구

- 1)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이용자의 돌봄욕구 및 지역적·이용자 특성,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설립계획 등은 어떠한가요?

1-1) 이와 관련하여 소속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등이 수행된 적이 있나요?
- 2) 소속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제공 중인 지원정책(예, 운영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진행, 학습기기 지원 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향후 바람직한 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정책 방향(예, 사업 내용, 연계 형태, 사업 방식이나 초점, 담당 인력 확충 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5. 지역 사회 내 타 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 1) 소속 지자체에서는 지역 돌봄 협의체(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등)를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운영현황(참여 기관, 운영방식 등)은 어떠한가요?
- 2) 귀하는 지역사회 내 타 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타 부서, 타 지자체 등과 개별적으로 협력(소통)하고 있나요?

2-1) 연계(협력)하고 있으시다면, 어떠한 측면(예,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공간, 인력 등)에서 연계(협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부록 4. 전문가 자문 조사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 연구(가칭)’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간 현황 실태 및 종사자, 공무원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공간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초등돌봄 공간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과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방과 후 초등돌봄 기능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이라는 주요 목적 아래, 공간 및 설치기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이중 마지막 단계로 본 연구진에 의해 도출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설치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1.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

[현행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그림]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1)

기준
01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참고 자료

[현행 면적 기준의 문제점]

-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면적 기준은 돌봄공간(활동실 또는 놀이공간)과 사무공간 및 부수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전용면적** 66㎡ 이상으로 최소 면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음(다함께돌봄센터는 최소 정원 20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정원 기준으로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3.3㎡로 산정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도 돌봄공간과 부수공간의 구분 없이 최소 면적 기준만 제시함에 따라 돌봄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 현황]

-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 760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전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전용면적은 130.0㎡로 최소 66.0㎡에서 최대 1,926㎡까지 분포되어 있음.
- 1인당 평균 전용면적은 5.1㎡로 현행 3.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센터 종사자 주요 의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2023년 5월) 결과, 87개 센터의 평균 전용면적은 127.9㎡로 최소 66㎡에서 최대 283㎡였음.
- 1인당 평균면적은 5.2㎡로 760개 다함께돌봄센터 전수 데이터(2022년)와 유사한 결과임.
- 현재 돌봄공간(활동실)에 대한 문제로 종사자들은 공간의 협소(47.1%), 공간 종류의 부족(36.8%) 등의 순으로 언급함.
- 면적 개선(안)인 「돌봄공간의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일 것」에 대한 동의점수는 평균 3.29점(4점 만점)으로, 동의 86.8%(76명 동의), 비동의 12.6%(11명 비동의)로 나타났음. 비동의한 11명 모두 비동의 이유로 개선(안)의 면적이 최소 66㎡ 이상이거나 개선(안) 보다 더 큰 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종사자들은 ‘최소 66㎡ 이상’이라는 개선(안)이 20명 정원 기준 대비 좁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센터 종사자 대상 FGI 조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기준이 어린이집 면적기준인 1인당 3.3㎡와 동일한 것은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신체활동이 큰 만큼 면적 기준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공무원 주요 의견]

- 공무원 대상 FGI 결과, 현재도 현행 면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공간 전용면적을 최소 66㎡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센터 전용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상향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공간 발굴과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센터 면적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질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정원 기준(20명)을 축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개선안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전체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일 것'이라는 면적 기준에 대해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으로 제안하는 개선안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센터 종사자들은 아동의 활동과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안보다 더 큰 돌봄공간의 면적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센터 공간을 발굴,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면적 기준이 더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함.
-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필수기준과 유도기준을 마련하여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서울시의 경우, 융합형은 1인당 7㎡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라인 기준상 확장형은 1인당 4.7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실내공간은 1인당 최소 3.25㎡ 이상, 실외공간은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1인당 실내공간은 최소 3.25㎡ 이상, 실외는 전체 111.48㎡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는 이처럼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는 가운데, 실외공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아동의 놀이공간과 신체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공간의 면적 기준은 작은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센터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실외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외의 실내공간 설치 기준보다 상회하여 유도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융합형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형, 해외 실내외 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 이상을 유도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개선안 1 - 공간면적-필수기준]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아동 1인당 3.3㎡ 이상으로 최소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산정)

필수기준으로 강행 규정임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1 :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수 면적 기준으로 '돌봄공간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1답변)	전혀 동의안함 (1-1답변)

1-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개선안 2 - 공간면적-유도기준]



돌봄공간의 유도면적기준은 아동 1인당 5.0㎡ 이상을 확보할 것

유도기준으로 권고 규정임

[개선안에 대한 의견]

2.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2 : 다함께돌봄센터의 유도 면적 기준으로 「돌봄공간의 유도면적 기준은 아동 1인당 5.0㎡ 이상일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2-1답변)	전혀 동의안함 (2-1답변)

2-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개선안 3 - 다함께돌봄센터 필수기준과 유도기준 마련]

필수기준은 강행 규정이며, 유도기준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여
초등아동 방과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의 적정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개선안에 대한 의견]

3.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3 : 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 기준을 「필수면적기준과 유도면적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3-1답변)	전혀 동의안함 (3-1답변)

3-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현행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그림]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1)

개선안 01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 일 것
개선안 02	사무공간, 화장실,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출 것

참고 자료

[현행 설치기준의 문제점]

- 현행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체 센터 전용면적을 최소 66㎡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전체 센터는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도록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기준 02의 설치기준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들 공간은 센터 내 전용이 아닌 다른 시설 및 센터와의 겸용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돌봄공간 이외 공간 부족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 또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양방향 대피로 등 대피공간 확보의 필요성 역시 선행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돌봄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2023년 기준에서부터 ‘종사자휴게시설’ 설치가 추가 도입되었음(**현재 의무 설치시설은 아니지만 향후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음**).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센터 종사자 주요 의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무공간은 90.8%, 화장실 81.6%, 조리공간 63.2%가 설치되어 있음(겸용 사용까지 포함한 결과임).
- 사무공간은 면적협소, 화장실은 공간구성 문제, 조리 및 식사공간도 면적협소 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들 공간에 대한 추가 설치 요구도는 낮은 편임(사무공간 추가설치 요구 비율 26.4%, 화장실 23.0%, 조리공간 17.2%). 일부 개방형 답변으로 사무공간과 화장실의 경우 겸용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언급되었으며, 조리 및 식사 공간내 적절한 설비와 면적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센터 내 대피공간의 설치 비율은 42.5%였으나, 현 센터의 대피공간에 대한 평가는 1.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줌.
- 종사자 FGI 조사 결과 센터 내 사무공간에 서류 등을 보관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사무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아동과 학부모에게 업무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도 지적함. 또한 화장실이 센터 외부에 있는 경우 교사가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공무원 주요 의견]

- 공무원 대상 FGI 조사 결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을 현재처럼 겸용사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사자휴게공간을 센터 내 필수공간으로 별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사자휴게공간도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개선안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센터내 돌봄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이외,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의 설치 비율은 높지만, 종사자휴게공간이 확보된 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선(안)에서는 현행 기준처럼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 종사자휴게공간은 포함하여 설치하되, 이들 시설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설치의 용이성을 부여하고자 함.
- 조리공간과 화장실 설치 및 이들 공간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급배수시설 설치도 함께 고려해야 함. 화장실 사용에 있어 화장실 위치와 남녀 공간부분, 변기 및 세대대 설치시 아동의 신체적 발달 등이 필요함. 일부 센터의 경우 급배수시설 설치의 불가로 인해 공간 리모델링시 조리공간과 화장실 공간의 마련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반영하고자 함.
-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사고 및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재해대피시설도 함께 포함하여 설치 개선안을 마련함.

[개선안 - 돌봄공간 이외 추가 필수 설치 시설]



사무공간, 화장실(남/녀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각각 갖추는 것

강행규정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 및 시설, 설비를 확충해야 하나, 공간의 경우 겸용 사용을 허용

[개선안에 대한 의견]

4.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4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 이외 추가 필수 설치 시설로 「**사무공간, 화장실(남/녀 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4-1답변)	전혀 동의안함 (4-1답변)

4-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개선안에 대한 의견]

5.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4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 이외 추가 필수 설치 시설인 「**사무공간, 화장실(남/녀 구분,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설비), 종사자휴게공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 조리시설**」을 다른 공간과 겸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 (v)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5-1답변)	전혀 동의안함 (5-1답변)

5-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3.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공간 공간구성 기준

[현행 - 돌봄공간 공간구성 기준]

-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에는 돌봄공간의 공간구성 관련 기준이 없음.

참고 자료

[현행 기준의 문제점]

- 현행 기준에는 돌봄공간의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음.
- 이에 돌봄공간 내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각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센터 종사자 주요 의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7개 센터 중 72.4%가 정적활동공간과 동적활동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었으며, 각 공간은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를 이용하여 분리한 경우가 66.7%임.

- 하지만 공간개선에 대한 개방형 답변을 살펴보면, 정적 및 동적 활동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적절한 면적으로 공간을 구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종사자 FGI 조사에서도 정적활동공간과 동적활동공간이 별도의 출입구와 벽체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각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으며, 각 공간의 아동을 돌봄교사 2인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공무원 주요 의견]

- 공무원 FGI 조사 결과에서도 정적활동공간과 동적활동공간 구분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활동에 필요한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자체 공무원들도 아동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 시 이를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개선안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구성 관련 기준은 없지만,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구분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아동의 활동 특성, 신체발달 등을 고려할 때 동적공간은 정적공간보다 넓은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서울시키움센터 등의 공간가이드라인 기준을 참고하여, 정적공간보다 동적공간의 면적을 넓게 확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함.(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라인에서는 정적공간:동적공간의 적정 면적비로 1:3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대다수의 센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고정 벽체와 별도의 출입구로 구분하는 경우, 돌봄교사의 아동 관리상 어려움과 각 공간면적의 협소화 문제 등이 부각 되는 바,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 등을 활용한 공간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개선(안)을 마련함.

[개선안 - 돌봄공간 공간구성 방법]



돌봄공간은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

[개선안에 대한 의견]

6.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5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을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7-1답변)	전혀 동의안함 (7-1답변)

6-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7.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5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을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2 답변)

7-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안 - 돌봄공간 공간구성 방법]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면적 비율은 1:3으로 설치

[개선안에 대한 의견]

8.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6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에서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을 1:3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8-1답변)	전혀 동의안함 (8-1답변)

8-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9.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6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공간에서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면적 비율을 1:3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2 답변)

9-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안 - 돌봄공간 공간구성 방법]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

[개선안에 대한 의견]

10.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7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공간의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0-1답변)	전혀 동의안함 (10-1답변)

10-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1.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7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공간의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공간구성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2 답변)

11-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기준

[현행 기준]

-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에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음.

참고 자료

[현행 기준의 문제점]

- 현행 기준에는 아동의 기본권리인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놀이권 등을 고려한 세부 내용은 없는 대신, 포괄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요구 정도가 제시되어 있음.
- 이 밖에 장애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고려하는 기준 제시도 필요함.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센터 종사자 주요 의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동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필요한 시설로 71.3%가 아동의 휴식 및 수면공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활동실 54.0%, 상담실 51.7%, 양호실 41.4%, 실내체육공간 36.8% 순으로 나타남.
-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별도의 휴식 및 수면공간, 양호실(격리실)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그밖에 상담실 등이 없어 아동 및 학부모 상담 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함.
-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에 대해 54.0%의 종사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여(현재 센터의 개선 의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현재 센터시설이 장애아동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FGI 조사에서도 아동의 휴식 및 수면공간과 격리실(상담실 겸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 종사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활동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동적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공무원 주요 의견]

- 공무원 FGI 조사에서도 아동의 돌봄에 있어 휴게공간 및 수면공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센터 내 아동휴게공간 및 수면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음. 하지만 이 공간들에 관한 설치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지금보다 면적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고 규정 또는 겸용사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무원들 역시 아동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공간이 아동 권리 중 발달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함.
- 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아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활동반경을 반영한 공간의 크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고려한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임.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경우 정원 수 산정 시 1.5배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향후 장애아동의 입소를 고려한 정원 기준 산정방식에 변화가 필요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개선안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설치 기준 개선(안)이 필요함.
- 이에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의 휴식 및 수면공간과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의 발달권, 놀이권을 고려하여 활동실 및 실내체육 공간(동적공간)의 확대를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장애아동의 활동반경을 고려한 공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돌봄공간 면적기준의 상회로 인해 공간의 추가 확대가 요구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간 발굴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적 기준 산정에 있어 정원수 조정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아동:일반아동 정원 기준을 1.5명:1명의 비율로 적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개선안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우선 설치 시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개선안에 대한 의견]

12.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8 :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2-1답변)	전혀 동의안함 (12-1답변)

12-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3.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8 :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휴식 및 수면공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2 답변)

13-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안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추가 및 확대 설치 시설]



아동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

[개선안에 대한 의견]

14.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9 :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발달권과 보장을 위해 활동실과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4-1답변)	전혀 동의안함 (14-1답변)

14-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5.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9 :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발달권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실, 실내체육공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2 답변)

15-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5-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안 - 장애아동을 고려한 기준]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과 다른 정원 기준 적용

[개선안에 대한 의견]

16.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10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6-1답변)	전혀 동의안함 (16-1답변)

16-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6-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7.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10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애아동을 고려한 공간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정원기준 적용」하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2 답변)

17-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7-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아동의 활동 및 학습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입지조건 기준

[현행 기준]

- 입지 조건에 대한 권장기준이 있음.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조건에 대한 권장사항>

- ①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②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 ③ 이용 대상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이 편리한 곳
- ④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⑤ 바깥 활동(놀이터 등)이 가능하거나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 ⑥ 건축 및 유관 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참고 자료

[현행 기준의 문제점]

- 현행 기준에는 입지조건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장기준이므로 세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센터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센터 종사자 주요 의견]

- 8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입지에 대한 개방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가시설 및 (반)지하 공간에 센터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열 수 없는 문제, (반)지하라는 위치상 채광 및 환기의 문제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센터 근처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센터가 상업 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변의 소음 등으로 아동의 활동과 학습이 방해 받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 종사자 FGI 조사에서는 센터 주변 도로의 안전문제, 공원,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이용을 위해 이동 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됨.

[현행 면적 기준에 대한 공무원 주요 의견]

- 공무원 FGI 조사에서도 센터 주변의 소음, 간접흡연과 함께 상가시설에 소재한 센터의 경우 유동 인구의 증대가 아동의 활동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개선안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활동과 학습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을 고려한 입지 조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 입지조건]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개선안에 대한 의견]

18.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11 : 다함께돌봄센터가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18-1답변)	전혀 동의안함 (18-1답변)

- 18-1.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9. 귀하께서는 위의 개선안 11 : 다함께돌봄센터가 「소음 및 간접흡연, 안전 등 아동의 활동과 학습, 안전한 생활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규정 중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1 답변)
- ② 권고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2 답변)

19-1. 필수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2. 권고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안에 대한 의견]

20. 귀하께서는 아래 제시된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조건의 권장 사항 중 필수조건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필수기준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입지조건 권장사항	필수 기준 도입 사항	필수기준 도입 필요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활동실에 한정)		
• 이용 대상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이 편리한 곳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 바깥 활동(놀이터 등)이 가능하거나 시설물 사용(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등의 협조가 원활한 곳		
• 건축 및 유관 부서와 논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		

21. 귀하께서는 위에 제시한 개선(안) 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의 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외 사례 및 기준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특성

1) 연령	만 ()세		2) 성별	☐ 남	☐ 여
3-1) 소속			3-2) 지위		
4)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전문대 / 4년제	5) 전공		
	☐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6) 경력	()년 ()개월				

- 귀하의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